

2021년 개정판

인도 투자실무 가이드

India Investment Guide

ESG 경영 사례 수록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India Investment Guide

» 목차

I. 국가 개요 및 투자환경 / 7

1. 인도 일반 개황 / 8
2. 외국기업 인도 투자 동향 / 9
3. 한국의 인도 투자 / 11
4. 투자 인센티브 / 13

II. 진출검토 / 37

1.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방식 / 38
2. 비용 리스크 관리 / 44

III. 회사설립 / 49

1. 외국인 투자 절차 / 50
2. 회사 유형별 이해 / 54
3. 회사 설립 이후 필수적 절차 / 63
4. 회사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 66

IV. 회사운영 / 67

1. 세무 / 68
2. 회계 / 106
3. 노무 / 111
4. 인도 내 CSR 및 ESG 관련 가이드 / 130

V. 부록 / 143

1. 인도 주재 주요 한국기관 / 144
2. 정부 기관 / 146
3. 인도 주요 협회 / 147
4. 현지 법률·회계 서비스 제공 회사 / 156



» 발간사

인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주요 국가 중 하나로, 2015년 이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아세안과 함께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인도는 1990년대 추진된 경제개혁(신산업정책) 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6%를 상회하는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5위 경제 규모의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움직임을 계기로 중국을 대신하는 생산기지 및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인도 정부 또한 ‘Make in India’ 2.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조세, 관세 및 물류 인프라 현대화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호주와 함께 ‘삼자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를 출범시키는 등 주변 국가들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중간재 수급 차질 위험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도 매력적인 투자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UN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인도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2027년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현재 약 13억 명) 인도 경제 및 인구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에 기인한 인구보너스 효과로, 주요 기관들은 향후 10년 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인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중간재,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KOTRA는 인도 투자·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019년도에 발간된 '인도 투자실무 가이드'를 전면 수정·보완한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기존 500페이지의 내용을 핵심만을 추려 150페이지로 요약하여 인도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료 접근성·실용성을 높였으며, 현지 경영·노무관리·ESG 사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최신의 정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거나 새로이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KOTRA 뉴델리무역관과 투자 MnA팀,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에 도움을 주신 현지 분야별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KOTRA Invest KOREA 대표 장상현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I. 국가 개요 및 투자환경

1. 인도 일반 개황
2. 외국기업 인도 투자 동향
3. 한국의 인도 투자
4. 투자 인센티브

1. 인도 일반 개황

1.1 국가개요

국명	인도 (Republic of India)
위치	남아시아 (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적	3,287,263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 등
수도	뉴델리 (New Delhi)
인구	13억 9,000만 명 (*21, IMF)
주요 도시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벵갈루루, 아메다바드, 푸네, 찬디가르, 하이데라바드, 파나지
민족	인도-아리안계(72%), 드라비다계(25%), 몽골계 및 기타(3%)
언어	힌두어, 영어, 주요언어 21개 등
종교	힌두(80%), 이슬람(13%), 기독교(2.3%), 시크교(1.9%), 기타(2.8%)
건국(독립)일	1947. 8. 15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및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원수(대통령) : 람 나트 코빈드 (Ram Nath Kovind) ○ 취임일 '17. 7. 25 (5년 임기) ○ 총 리 :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 취임일 : '14. 5. 26 (*'19. 5. 19 연임) ○ 소속 정당 : 인도인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자료 : Census of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인도통계청, CIA, World Bank

1.2 주요 경제 지표

GDP	US\$ 2조 7,088억 (*20년, IMF)
경제성장률	-7.3% (2020/21 회계연도, 인도통계청)
1인당 GDP	US\$ 1,964(*20년, IMF)
실업률	7.97% (*21년 4월, CMIE)
소비자 물가상승률	10.49% (*21년 4월, 인도 상공부)

화폐 단위	Rupee		
환율	US\$ 1= RS. 72.87 ('21년 5월 25일)		
외채	US\$ 5,635억 ('21년 3월, 인도 재정부)		
외환 보유고	US\$ 5,900억 ('21년 5월 14일, RBI)		
한-인도 교역 규모	구분	2020년	2021년 1~4월
	수출액(증감)	11,937(-20.9)	5,242(20.0)
	수입액(증감)	4,901(-11.9)	2,387(18.1)
자료: 무역협회 / 단위: 백만 달러 \$			
한 → 인도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품: 철강판,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 주요 수입품: 석유제품, 알루미늄, 농약및의약품, 정밀화학원료, 철광 등 자료: 무역협회(MTI 3단위)		
인도 → 세계 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품: 석유제품, 금, 다이아몬드, 전자기기, 핵원자로, 유기화학제품 등 ○ 주요 수출품: 석유, 금, 석탄, 석유가스, 의약품, 유기화학제품, 전자기기 등 		

*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해당연도 3월

* 자료 : 인도중앙은행(RBI), 인도통계실행부(MOSPI),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CMIE, GTA, IMF

2. 외국기업 인도 투자 동향

인도는 세계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다수 유치하고 있다. 회계연도 20/21 대인도 FDI 유입액은 전년 499.8억 달러 대비 19% 성장한 59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총 FDI(재투자 잉여금 및 기타자본 포함)는 역대 최고치인 817.2억 달러로 전년 회계연도 대비 10% 증가하였다.

| 최근 對인도 투자현황(회계연도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

2018.4-2019.3		2019.4-2020.3		2020.4-2021.3		2021.4-6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44,366	-1.1	49,977	12.6	59,636	19.3	17,567	167.7

자료 : 인도 DPIIT('21.05.27)

20/21회계연도 기준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29%, 미국 23%, 모리셔스 9% 순이며 전년 대비 투자 상승률 1위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전년도 8,700만 달러에서 약 3,136% 증가한 28억 1,6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누적 투자금액 기준 한국은 13위이다.

| 국가별 대인도 투자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기준)	국가	2019/20 회계연도	2020/21 회계연도	2021년 (4~6월)	2000.4월~2021.6월	
					누적액	비중
1	모리셔스	8,241	5,639	3,298	151,648	27.7
2	싱가포르	14,671	17,419	3,305	118,394	21.6
3	미국	4,223	13,823	1,951	45,553	8.3
4	네덜란드	6,500	2,789	1,093	37,734	6.9
5	일본	3,226	1,950	539	35,988	6.6
6	영국	1,422	2,043	345	30,600	5.6
7	독일	488	667	333	13,196	2.4
8	케이맨제도	3,702	2,799	1,319	11,654	2.1
9	UAE	339	4,203	190	11,383	2.1
10	키프로스	879	386	69	11,203	2.1
13	한국	787	405	88	4,971	0.9

자료 : 인도 DPIIT

산업의 경우, 서비스 분야의 FDI 투자 누적 금액이 약 890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16.44%를 차지하여 2020년까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였다. 2020/21년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산업분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 26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누적금액 약 741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 산업별 대인도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누적 기준)	산업분야	2019/20 회계연도	2020/21 회계연도	2021년 (4~6월)	2000.4월~2021.6월	
					누적액	비중
1	서비스	7,854	5,060	1,893	88,956	16.3
2	컴퓨터SW/HW	7,673	26,145	3,061	74,117	13.5
3	통신	4,445	392	314	37,977	6.9

순위 (누적 기준)	산업분야	2019/20 회계연도	2020/21 회계연도	2021년 (4~6월)	2000.4월~2021.6월	
					누적액	비중
4	무역	4,574	2,608	601	30,804	5.6
5	자동차	2,824	1,637	4,665	30,514	5.6
6	건설(주거)	617	422	59	26,144	4.8
7	건설(인프라)	2,042	7,875	660	25,382	4.6
8	화학	1,058	847	213	18,700	3.4
9	제약	518	1,490	130	18,121	3.3
10	야금	2,101	1,340	1,268	16,010	2.9

자료 : 인도 DPIIT

3. 한국의 인도 투자

한국은 인도에 198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71.46억 달러 투자하였다. 이러한 투자는 1996~1997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진출로 시작되었으며, 2010년 전후 인도의 경제 성장과 CEPA발효 이후 진출이 확대되었다. 2020년 인도가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아자동차, 삼성전자가 인도 내 공장 증설을 완료했으며 모디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인 Make in India 아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수출지원제도(RoDTEP)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현지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 연도별 한국의 대인도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3월	누적 (1980년~)
투자금액	337	516	1,072	453	625	92	7,146
신규건수	270	311	410	452	308	51	4,27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1.08.31)

2020년부터 2021년 1분기 기준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는 제조업 중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투자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이 제조업의 형태로 진출했다.

| 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

(단위 : 건, 백만 달러, 건)

업종	2020년		2021년 1-3월		누적액(1980년~)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제조업	380	169	64	27	5,858	2,414
도소매업	7	35	1	7	347	492
운수·창고업	1	8	0	0	113	122
정보통신업	27	28	3	7	112	238
기타	210	68	24	10	716	1,012
총계	625	308	92	51	7,146	4,27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1.08.31)

정부가 대인도 투자 유치를 위해 생산연계인센티브(PLI) 등 Make in India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인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삼성전자도 지난 8월 인도의 PLI 활용을 위해 향후 5년간 400억 달러의 스마트폰 생산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노이다 지역 디스플레이 공장을 증설하는 등 인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대기업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 대기업의 대인도 투자액은 약 3.3억 달러로 53.2% 달한다. 인도 투자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동반 진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며 '21년 3월까지 대기업의 투자 누적액은 54억 5천만 달러로 투자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누적 투자액이 약 18억에 달하며 전체 투자액 비중은 21.9%를 차지한다.

| 투자자 규모별 대인도 투자금액현황 |

(단위 : 개사, 건, 백만 달러)

기간	1980년 - 2021년 3월				
구분	신규법인	투자액	신고건수	신고액	비중 (투자액 기준)
대기업	363	5,452	1,380	7,067	76.3%
중소기업	564	1,565	1,861	1,870	21.9%
기타	388	129	1,037	155	1.8%
총계	1,315	7,146	4,278	9,091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누적액은 1980년 이래

4. 투자 인센티브

4.1 업종별 인센티브

▶ 화학 공업 (Chemical Sector)

화학제품 생산 관련 인프라 집적을 위하여 석유·화학·유화 전용 투자지역(Petroleum, Chemical &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s)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PCPIR 지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시 사업이행 자금의 최대 2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오페수 무배출 공동 폐수처리장이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비상대응 시스템 등 스마트 환경 시스템에 대해 추가적으로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¹⁾(최대 2천만 루피). 현재 구자라트(Dahej, Bharuch), 오딧샤(Paradeep), 타밀나두(Cudalore-Nagapattinam), 안드라프라데시(Visakhapatnam-Kakinada) 등 4개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36개소의 중앙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소(Central Institute of Petrochemicals Engineering & Technology)를 설립하여 폴리머 및 플라스틱 분야의 첨단 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²⁾

또한 6개소의 플라스틱 파크(전용단지)의 설립이 승인되어 최첨단 플라스틱 제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³⁾, 석유화학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센터를 5개의 인도 최고 교육기관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부 위험 화학물질 제외하고는 자동승인 절차를 통해 100%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어 별도의 복잡한 승인절차가 필요없으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생산 개시하는 기업에 대해 인화된 법인세율(15%)이 적용된다.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 투자촉진을 위해 신규 생산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화학 및 농화학 업종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1) 인도 화학부 PCPIR 정책 (<http://chemicals.nic.in/sites/default/files/PCPIRPolicy.pdf>)
The Economic Times 언론보도 (2020.12.7 / New PCPIR policy moots central funding for infrastructure)

2) <https://www.cipet.gov.in/centres/cipet-haldia/facilities.php>

3) <https://www.aipma.net/page/plastic-parks>

▶ 자동차 부품 산업 (Auto Components Sector)

자동승인 제도를 통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인도 정부의 승인을 거쳐 향후 5년간 총 5,704억 루피(약 78억 달러)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⁴

이외에도 차세대 화학셀(Advanced Chemical Cell) 배터리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도 지원하여 인도 및 해외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ACC 배터리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규모는 총 1,810억 루피(약 25억 달러)가 배정되었다.⁵

EV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도입된다. 대중교통(버스) 및 상업용 차량(2W, 3W, 4W)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1킬로와트시(kwh)당 USD 14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버스는 USD 290).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전기 이륜차 100만대, 전기 삼륜차 50만대, 전기 사륜차 5만 5천대, 전기 버스 7천대를 보급하고 2,700군데의 전기 충전소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원예산은 약 14억 달러가 배정되었다.⁶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인도 전역에 69,000여개의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⁷

▶ 전기전자/IT 산업 (Electronics/IT Sector)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계획(SPECS)에 따라 전자제품의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대상 리스트에 따라, 품목 제조를 위한 자본지출의 25%를 재정 인센티브로서 지원한다. (총 USD 4억4천만 규모 예산 배정)⁸

또한 공용 인프라 및 편의 시설이 구비된 최첨단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및 공용 인프라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0%을 지원하며(최대 USD 950만) 대규모 클러스터에 투자시에는 최대 USD 4,700만까지 지원한다.⁹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발전과 최신화를 위해 Software Technology Park가 운영되고 있다.

4) <https://auto.economicstimes.indiatimes.com/news/industry/india-to-spend-27-billion-over-5-years-to-boost-manufacturing/79171904>

5) <https://geplcapital.com/blog-view/144/The-production-linked-incentive-scheme-pli-explained>

6) <https://www.autocarpro.in/news-national/fame-india-phase-ii-outlay-of-rs-10-000-crore-gets-government-approval-42247>

7) <https://inc42.com/buzz/govt-plans-to-set-up-69000-ev-charging-stations-across-india/>

8) <https://www.meity.gov.in/esdm/SPECS>

9) https://www.meity.gov.in/writereaddata/files/modified_electronics_manufacturing_clusters_scheme.pdf

100% 외국인투자가 인정되며 소프트웨어 기업이 인도 투자시 필요한 장비(중고 포함)의 수입관세를 100% 면제해주고 임대/리스 방식의 수입도 허용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출 규범을 단순화하였다.¹⁰

전자제품 업종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전자제품 PLI를 위해 약 USD 55억이 배정되었고 선정된 기업은 5년간 4~6%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2019~20년 이후)¹¹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제도가 2020년 4월 개정(EMC 2.0)되어,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투자시 50%까지 지원하고(100에이커 당 7억 루피), 공용 인프라 시설(Common Facility Centers) 건립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75%를 지원한다.(최대 7.5억 루피)¹²

▶ 제약업 (Pharmaceuticals Sector)

자동승인 제도를 통해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FDI 지분 100% 투자 가능하다. 브라운필드의 경우는 정부 승인을 통해 100% 투자 가능하며 74% 이하는 자동 승인된다.

신속한 승인 처리를 위하여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이 도입되어, 일부 선진국에서 승인된 신약에 대해 인도인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경우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인도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다.

제약업에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53개 지정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기준년도(2019~2020) 이후 6년간의 매출 증가분 중 일정비율에 대해 재정 지원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유효하고 총 예산규모는 694억 루피로 배정되었다.

| 제약업 생산 연계 인센티브 |

발효 기반 약품	화학 합성기반 약품
매출 증가분의 20%	매출 증가분의 10%

자료: 인도 정보국(<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07483>)

10) <https://www.stpi.in/stp-scheme>

11) <https://www.meity.gov.in/esdm/pli>

12) <https://www.meity.gov.in/esdm/emc2.0>



또한 하기 분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향후 5년간 1,500억 루피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인센티브 지급 가능 분야 |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바이오 의약품, 복합 제네릭 의약품, 특허약품 또는 특허만료가 임박한 약품, 세포 기반 또는 유전자 치료 제품, 희귀의약품, 특수 공 캡슐	원료의약품(API), 핵심기초물질(KSM), 제약원료(DI)	용도 변경된 약물, 자가면역제, 항암제, 항당뇨제, 항감염제, 심혈관계, 항정신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체외진단장치(IVD), 식물약학, 인도에서 제조되지 않는 기타 약물, 승인된 기타 약물

자료 : 언론 정보국(<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1912>)

제약 클러스터(원료의약품, 의료장비, Ayurveda, Unani 등 전통의학) 내 공용 인프라(R&D센터, 폐수처리설비, 공동 물류센터) 설립 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 예산규모는 3억 루피가 배정되었다.

▶ 섬유 산업 (Textile Sector)

섬유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기술개발 펀드가 도입되었다. 기술개발을 위해 섬유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1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최대 USD 410만). 기술개발 펀드를 통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으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섬유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¹³

통합 섬유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섬유 관련 교육훈련, 창고, 공장 기계 등 시설투자 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으로 6.9억 달러 규모 예산이 정부에서 승인되었으며 6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 전망이다.¹⁴

섬유업계 근로자를 위한 연금 비용을 지원하여, 월 임금 15,000 루피 미만의 신규고용 의류 산업 종사자의 국민연금을 정부가 3년간 납부해준다.

섬유업계 고용 및 수출을 위한 특별 패키지가 마련되어 USD 8.2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다. 수출업자에 대해 주정부 세금을 100% 면제해주고 생산 연계 인센티브의 10%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13) <http://texmin.nic.in/schemes/technology-upgradation-fund-scheme>

14) Guidelines of the scheme for integrated textile parks

섬유업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 중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USD 1.7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고 백만 명 이상의 섬유업 숙련공을 양성할 예정이다.¹⁵

3년 이내에 7개의 메가섬유투자단지(Mega Investment Textiles Parks)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USD 1.5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고, 1천 에이커 이상 규모의 부지에 첨단 인프라, 필요 시설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¹⁶

◆ 식품 가공 산업 (Food Processing Sector)

농촌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낭비 최소화, 농민소득 증대 및 고용 기회 창출 보장을 위해 메가푸드 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일반 지역의 경우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 혹은 고산지역에 메가푸드 파크를 조성할 시 75%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최대 5억 루피). 관리, 역량 강화, 조정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홍보 활동, 사무비용, 여비 등에 대해 전체 보조금 규모의 최대 5%까지 지원한다.¹⁷

메가푸드 파크, 농산물 가공 클러스터, 지정 농업단지 내에 식품 가공/저장 설비를 신설/확장/첨단화하는 비용의 35%를 지원한다.(최대 5천만 루피)¹⁸

농산물 가공 클러스터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비용(최소투자액 2.5억 루피)의 35%(최대 1억 루피)를 지원한다. 기초 인프라는 도로, 용수, 전력 공급, 하수, 폐수처리 등이 해당되며 핵심 인프라/공용시설은 창고, 냉동창고, 개별급송냉동, 테트라팩, 분류 등이 포함한다.¹⁹

콜드 체인 및 부가가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포장 설비, 사전냉각 장치, 숙성 챔버, 운송설비 등 저장 인프라 조성 비용의 35%를 지원하고, 냉동 보관/초저온 냉동고, 필수 가공설비 등 부가가치 인프라 설립은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방사선 식품조사(照射) 시설 건립시에는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한다.²⁰

식품 안전 및 품질 보증 인프라(QC/식품검사 연구소 설립 및 확장)에 대해서도 실험장비 비용의

15) Special package for employment generation and promotion of exports in Textile and Apparel sector

16) <https://blog.nextias.com/mega-investment-textiles-parks-mitra-scheme>

17)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696560>

18)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ities/chandigarh/food-parks-the-for-crop-diversification-7139248/>

19) https://mofpi.nic.in/sites/default/files/revised_operational_guideline_of_apc_scheme_02032020_1.pdf

20) Revise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scheme for integrated cold chain and value addition infrastructure (dated 17.12.2019)

50%를 지원하고 구축 및 확장 관련 기술도목 작업 비용의 25%를 지원한다.²¹ 식품안전/품질관리(HACCP/ISO표준/식품안전/품질관리시스템) 관련 구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최대 1.7억 루피)²²

식품가공부의 Operation Greens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수확 후 발생하는 운송비의 50%, 보관 시설 임차비용의 50%를 지원한다.(최대 4~6개월) 또한 수확 후 부가가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1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²³

▶ 철강업 (Steel Sector)

철강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해 국내생산 기업에 대해 무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최대 USD 414억 규모 예산 배정)

2019년 10월 이후 설립된 기업에 대해 23년 3월까지 생산 개시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10월 이전 설립 기업은 법인소득세율 22% 적용)²⁴

철강제품의 국내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35년까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개선, 산업화 및 해안 커뮤니티 개발에 8,1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²⁵ 인도내 지역 공간간 연결 강화를 위한 UDAN 프로젝트도 발표되었다. 항공편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100여 개의 신공항을 설립할 예정이고, 이미 UDAN 프로젝트에 따라 13개 주에 지역별로 각 4개 이상의 신공항이 설립되었다.²⁶

▶ 여행업 (Tourism Sector)

인도의 관광업 촉진 및 개발을 목표로 테마형 관광개발 지원책(Swadesh Darshan Scheme)이 도입되었다. 어플 개발, 도로변 편의시설, 응급 처치 시설, 관광 안내소 설립 비용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에 개발/투자하는 경우나, 관광 명소와 연계되는 도로환경 개선, 야외극장 설립, 자연산책로 조성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²⁷ 또한 주정부로부터 토지 보조금, 인지세 감면, 전기세 면제, 낙후지역 개발 보조금, 초대형 프로젝트 인센티

21) Revised Guidelines for the scheme of Food Testing Laboratories (27.05.2019)

22) <https://mofpi.nic.in/node/972>

23) <https://mofpi.nic.in/Schemes/operation-greens>

24) <https://taxguru.in/income-tax/reduced-corporate-tax-rate-new-section-115baa-115bab.html>

25) <http://sagarmala.gov.in/>

26) <https://www.aai.aero/en/rcs-udan>

27) <http://swadeshdarshan.gov.in/>

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4.2 지역별 인센티브

▶ 하리아나주

하리아나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별, 기업규모별, 구역별, 타겟 업종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²⁸⁾

| 인센티브 대상 유형별 구분 |

대상	기준
초대형 프로젝트 (Ultra-Mega Project)	고정자본 투자액이 지역별로 각각 최소 600억 루피(A블록), 450억 루피(B블록), 300억 루피(C블록), 150억 루피(D블록) 이상인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Mega Project)	고정자본 투자액이 지역별로 각각 20억 루피(B블록), 10억 루피(C블록), 7.5억 루피(D블록) 이상인 대형 투자 프로젝트
대기업 (Large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5억 루피 이상 투자시 (매출액 25억 루피 이상)
중기업 (Medium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5억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25억 루피 미만)
소기업 (Small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1억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5억 루피 미만)
영세기업 (Micro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1천만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5천만 루피 미만)
스타트업	하리아나 주정부에서 규정한 스타트업 해당 업종으로서 Start-up Haryana 등록 기업
낙후지역 개발 프로젝트	B, C, D 블록의 미개발 지역에 최소 10개의 기업이 클러스터를 기획한 후 경제 활동 및 지역 고용률 발전에 기여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생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화, 고용 창출 서비스, 사업 연계 및 부품 제조업, 계절성이 있는 재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필수 재화
서비스 기업	건물 및 장비에 1억 루피 이상 투자한 의료업, 관광업, 교육업, IT업, 대량 택배 서비스업, R&D센터, 시험 연구소,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서비스, 건설 및 공업 관련 장비 대여/리스업,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 환경 서비스 및 영상문화단지 (영화관 제외)

28) HARYANA ENTERPRISES AND EMPLOYMENT POLICY, 2020

대상	기준
데이터 센터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정보 저장 관리 시스템 (예: 화재 진압 시스템, 공조기 시스템 등).
공유 사무 시설	IT 및 네트워크 장비 운용 관련 복수의 기업에 의해 공유되는 사무공간 (건물, 냉방, 전력, 네트워크 대역폭 및 보안 시스템 등 제공. 사용자는 서버 및 데이터 관리, 저장장비 등 제공)

|哈里야나주 구역별 블록 구분 |

블록	지역
A	파리다바드, 구르가온, 파니파트, 소니파트, 로탁, 자자르, 레와리, 팔왈
B	암발라, 비와니, 히사르, 카르날, 메왓, 판츠쿨라, 파니파트, 팔왈, 레와리, 로탁, 소니파트, 야무나 나가르
C	암발라, 비와니, 파테하바드, 히사르, 자자르, 진드, 카이탈, 카르날, 쿠루크스테라, 메왓, 마힌더가르, 팔왈, 파니파트, 레와리, 로탁, 시르사, 소니파트, 야무나 나가르
D	비와니, 파티바드, 히사르, 자자르, 진드, 카이탈, 메왓, 마헨델가르, 판츠쿨라, 레와리, 시르사, 소니파트, 야무나 나가르

자료 : <http://www.haryanaindustries.com/4-BLOCK-WISE-CATEGORIZATION.html>

초대형 프로젝트(Ultra-Mega Project)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합간접세 감면) 투자 규모에 따라 통합간접세(SGST)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며, 투자하는 구역 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 통합간접세 감면 내역 |

블록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중소/영세기업	중점산업 분야
D	5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10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50% 한도)	10년간 100% 감면 (FCI의 150% 한도)
C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의 125% 한도)	8년간 75% 감면 (FCI의 125% 한도)
B	5년간 30%, 이후 3년간 1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30%, 이후 3년간 15% 감면 (FCI의 100% 한도)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의 100% 한도)	7년간 50% 감면 (FCI의 100% 한도)

블록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중소/영세기업	중점산업 분야
비교	-	-	B, C, D블록에 투자하는 영세 여성/SC/ST기업은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 데이터 저장장치 농업/식품 가공업

자료원 : Haryana enterprises promotion policy, 2020

* ESDM(전자시스템 개발 및 생산) 분야는 B, C, D블록 투자시 10년간 100% 감면, A블록 투자시 5년간 100% 감면한다.(고정자본 투자액(FCI)의 100% 상한)

* 스타트업은 지역구분 없이 7년간 100% 면제해준다(고정자본 투자액의 150% 상한).

(고용창출 보조금) B, C, D블록에서 고용창출시 7년간 1인당 연간 3만 루피(여성/SC기업의 경우 36,000 루피) 보조금 지급한다.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저장장치, ESDM)의 경우 7년간 1인당 연간 36,000루피(여성/SC기업은 48,000루피) 지급하며, 농업/식품 가공업에 대해서는 경우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지세 환급) D블록 투자시 100%, C블록 투자시 75%, B블록 투자시 60%를 환급한다.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생산 개시 조건)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스토리지, 농업/식품가공업)의 경우 C, D블록 투자시 100%, B블록 투자시 80% 환급하며 ESDM 업종의 경우 B, C, D 블록 모두 100% 환급한다.

(전기세 감면) D블록 10년간, C블록 7년간, B블록은 5년간 100% 감면한다.

* 중소기업은 D블록 12년, C블록 10년, B블록 7년간 면제된다.

* 중점산업 분야는 D블록 20년, C블록 15년, B블록 10년간 면제되며, ESDM 업종은 지역구분 없이 조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외부개발부담금 감면) D블록 100%, C블록 75%, B블록 60% 감면한다.

* ESDM 업종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면제한다.

(이자비용 보조) 중소기업/영세기업에 대해 C, D블록은 5년간, B블록은 3년간 5%(연간 최대 2백만 루피)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 여성/SC/ST기업에 대해서는 B, C, D블록 투자시 6%(연간 최대 2백만 루피) 지원한다.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저장장치, ESDM) 업종은 C, D블록 7년간, B블록 5년간 6%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농업/식품가공분야의 경우 C, D블록 7년간, B블록 5년간 7%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기타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출전비의 75%, 항공임 등) 일부 보조, 시험장비 비용의 50% 지원(또는 연간 최대 2백만 루피), 기술취득 비용의 75%(최대 5백만 루피) 지원, 국내외 특허등록 비용의 100% 지원(최대 250만 루피), ISO/HACCP/BSI 등 국제 QC 취득비용의 75%(건당 1백만 루피 한도) 지원, 에너지 감사 비용의 75%(최대 20만 루피), 수질감사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안전감사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고효율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공기정화 장치 도입 비용의 50% 지원(최대 5백만 루피),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대출이자 5%(3년간, 연간 최대 50만 루피) 지원, 기술고도화 관련 이자 비용을 3년간 6%(C, D블록) 또는 5%(B블록) 연간 100만루피 한도 내 지원, 5백만 루피 한도 내 산학연계 R&D 지원 비용, 영세기업 전기세 40kw당 2루피(D블록) / 30kw당 2루피(C블록) 지원, 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금융비용의 최대 75% 지급(최대 20만 루피), 영세기업 담보/보증 수수료 5년간 100% 환급, 주식시장 상장 비용의 25% 지원(최대 50만 루피), ERP 시스템 사용료의 최대 75% 지원 (최대 50만 루피), 린(lean) 생산방식(생산라인 최적화) 도입 컨설팅 비용의 80% 지원, 우수기업가상 수상 시 50만 루피 지급, 창업가 육성 지원 기관들에 매년 50만 루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5년간 이자비용의 8%(연간 최대 2백만 루피) 지원, 1년간 리스/렌탈 비용의 30%(여성기업의 경우 45%) 최대 50만 루피 지원, 기업당 최대 1백만 루피 시드머니 지원(A블록 100대 스타트업, B블록 200대 스타트업, C블록 300대 스타트업, D블록 400대 스타트업), 국내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비용 지원, 멘토링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스토리지 비용 3년간 100% 지원(최대 10만 루피) 등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농업/식품가공업 지원) 사탕수수 구입세를 100% 면제하고, B, C, D블록 내 식품 가공(과일야채 등의 세척, 등급분류, 왁싱, 건조, 패키징, 콜드체인 등) 시설/장비 설립시 50%(최대 1,750만 루피)를 지원한다.

▶ 우타르프라데시주

제조업 고용투자 촉진책 2017²⁹

(인지세 환급)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와 관련하여 지불한 인지세에 대해 Bundelkand 및 Poorvanchal 지역 투자시 100% 환급, Madhyancha 및 Paschimanchal 지역(GBNagar 및 Ghaziabad 구역 제외) 투자시 75% 환급, GBNagar 및 Ghaziabad 구역 투자시 50% 환급해준다.

(통합간접세 감면) 소기업은 통합간접세(SGST)를 5년간 90% 감면, 대기업 및 중기업은 5년간 60% 감면,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0년간 70% 감면해준다.

(자본 이자비용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인프라 조성 관련 이자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품질개선 관련 비용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전기세 감면) UP주 내 설립하는 신설 제조기업 대상 10년간 100% 면제해준다.

(농산물 구입세(Mandi Fee)) 식품가공기업 대상 농산물 원료에 대해 5년간 100% 면제해준다.

(고용창출 인센티브) 미숙련공 100명 이상 고용시 고용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 50%를 환급해주고, 숙련/미숙련공 직접고용 200명 이상시 추가적으로 10% 환급해준다.

전자기기/부품 제조업 촉진책 2017³⁰

(자본 보조금)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본 비용의 15%를 지원한다. (최대 5천만 루피)

(이자비용 지원) 7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1천만 루피)

(인지세 환급) 토지 매입/임대시 인지세 100% 면제해준다.

(특허 출원료 지원)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100% 환급해준다. (국내 50만, 해외 1백만 루피 한도)

(통합간접세 감면) 10년간 100% 환급해준다. (토지 제외 고정자본 투자액의 100% 상한) (토지 리베이트) 전기전자 생산지역(EMZ) 내에 전기전자 생산 클러스터/전기전자 시스템 개발/생산 (ESDM) 단지 조성 또는 개별 ESDM 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 구입시 25% 할인해준다.

29) <http://invest.up.gov.in/industrial-investment-and-employment-promotion-policy-2017/>

30)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electronics-manufacturing-policy-2017/>

IT/스타트업 지원책 2017³¹

(이자비용 지원) 7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인지세 환급) 사업개시 3년 내에 토지/사무실/건물 매입 또는 임차시 인지세를 100% 면제해준다.

(전기세 감면) 사업개시일 이후 10년간 100% 면제해준다.

(고용보험료 보조) 사업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종업원에 대해 100% 환급해준다.

(인증비용 지원) 최대 3가지 인증 취득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250만 루피)

(고용 지원) 티어2 / 티어 3 도시에서 UP주 소재 대학 IT전공 졸업자를 연간 50명 이상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종업원 1인당 2만 루피 지원한다.

(특허 출원 보조금) 출원 비용의 최대 100% 지원한다.

(입지지원) 토지구입 비용의 최대 25%까지 환급해준다.

중소기업 촉진책 2017³²

(자본 이자비용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인프라 조성 관련 이자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토지용도 전환 비용 지원)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시 관련 비용을 100% 면제해준다.

(인지세 환급) 제조업 투자고용 촉진책 2017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환급)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환급해준다.

(품질개선 관련 비용 지원) 5년간 5%를 지원한다.

(전기세 감면) UP주 내에 설립하는 신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0년간 100% 면제해준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 촉진책 2017³³

(이자비용 지원) 7년간 토지구입 관련 이자비용의 50%, 인프라 건설 관련 이자비용의 60%, 종업원 기숙사 및 숙박시설 설립 관련 이자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인지세 환급) 토지개발업자는 100% 면제, 개별 취득기업의 경우 50% 환급해준다. (최초 1회)

31)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information-technology-policy-2017/>

32)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msme-policy-2017/>

33) <http://invest.up.gov.in/private-industrial-park-scheme-2017/>

스타트업 지원책 2020³⁴

(자본금 지원) 인큐베이터 시설에 대해 현존 자본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최대 1천만 루피)

(운영비용 지원) 인큐베이터에 대해 5년간 또는 자체유지 가능시까지 연간 최대 3백만 루피를 지원한다.

(상금 지급) PMIC 선정 UP주 상위 3개 인큐베이터에 각각 30만, 20만, 10만 루피 지급한다.

(자본 및 운영경비) 전문가 조직(CoE)에게 최대 1억 루피까지 지원한다. (설립 후 5년 이내)

(스타트업 유지경비)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인큐베이터 당 연간 최대 10개사)에 대해 1년간 월 15,000루피 지원한다.

(시드머니) 최소기능 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최대 50만 루피를 지원한다. (인큐베이터 당 연간 최대 10개사)

(특허출원료 지원) 국내특허 출원시 20만 루피, 해외특허 출원시 1백만 루피까지 비용을 환급해준다.

바이오/에너지기업 촉진책 2018³⁵

(자본금 지원) 1억 루피 미만 투자기업은 25%, 1억~10억 루피 투자기업은 20% 지원한다.

(인지세 비용) 100% 면제해준다.

(주 통합간접세 감면) 10년간 100% 환급해준다.

(기타) 10억 루피 이상 투자시 투자액의 15%를 지원한다. (최대 15억루피)

민간항공산업 촉진책 2017³⁶

(부가세 면세) 지역간 연계 공항(RCS)으로부터 유통되는 주류, 담배, 총기에 대해 10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RCS 공항이 아닌 경우는 1년간 면세 조치한다. (UP주내 또는 UP-타지역 간)

(전기세 지원) 유닛당 4루피를 지원한다. (최대 3만 유닛)

(통합간접세 환급) 항공 티켓에 부과되는 통합간접세를 100% 환급해준다. (RCS간 항공편의 경우 3년간, UP주 내 비RCS항공에 대해서는 1년간 감면) UP주 소재 비RCS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1년간 100% 환급해준다.

34)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startup-policy-2020/>

35)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biofuel-policy-2020/>

36)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civil-aviation-promotion-policy-2017/>

(주차비 감면) RCS 공항 내 3년간 무료 주차를 지원한다. (주정부 공항)

(사무공간 지원) RCS 공항 내 사무실(최대 100평방미터)을 3년간 무상 임대해준다.

의약산업 촉진책 2018³⁷

(특허출원 지원) 국내 특허출원 비용의 100%, 해외 특허출원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QC 인증취득 지원) ISO인증 비용 75%, BIS인증 비용 50%를 지원한다.

(R&D 연구소 설립 지원) 연구소 설립 관련 대출 이자의 60%를 지원한다.

(임상시험 지원) 총 지출 비용의 75%를 환급해준다.

(계약/후원연구 지원) UP주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통합간접세 환급, 인지세 면제, 자본이자 지원, 인프라 이자비용 지원, 산업조사 지원, 전기세 및 농산물 구입세(Mandi Fee) 등 지원) 제조업/고용투자 촉진책 2017에 준해 지원한다.

COVID19 이후 투자촉진책 2020³⁸

(통합간접세 지원) Madhyanchal에 투자시 12년간 통합간접세 70%를 환급해주고 (투자자본의 200% 한도), Purvanchal, Bundelkhand에 투자시 15년간 70% 환급해준다. (투자자본의 최대 300% 한도)

(자본이자 비용 지원) 5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최대 1천만 루피)

(전기세 감면) 10년간 전기세 50%를 감면하고, 자체 사용을 위한 전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 편자보조³⁹

(앵커기업⁴⁰) 통합간접세를 15년간 100% 감면(투자액의 200% 상한)하고, 토지용도 변경 비용 (CLU)/외부개발부담금(EDC) 100% 면제, 고용창출시 5년간 1인당 연간 36,000루피(여성/SC/BC/OBC 기업은 48,000루피) 보조금 지급, 15년간 전기세 100% 감면, 식품가공기업의 경우 농산물 최저지원가격(MSP)의 2% 추가지불 의무 면제 등을 지원책으로 운영중이다.

37) <http://invest.up.gov.in/up-pharma-industry-policy-2018/>

38) <http://invest.up.gov.in/post-covid19-accelerated-investment-promotion-policy-2020/>

39) Punjab Bureau of Investment Promotion (Invest Punjab)

40) 의류, 전기전자, 식품가공, 신발/약세사리, IT업종 중 5억 루피 이상 투자 또는 500명 이상 고용, 이외 업종은 20억 루피 이상 투자 또는 1천명 이상 고용

(중소기업) 7년간 통합간접세를 100% 감면하고(투자액 100% 상한), 7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10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간 이자비용 5% 지원(접경지역 또는 Kandi 지역에 투자하거나 SC/여성기업에 한해, 연간 1억루피 상한), 불량을 제로화(ZED) 실현을 위한 비용의 50% 환급(5천만 루피 상한), 재무/기술/인프라/마케팅/수출 관련 지원 등을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한다.

(대기업) 7년간 통합간접세를 75% 감면하고(투자액 100% 상한), 10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10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중점산업 분야⁴¹) 10년간 통합간접세를 100% 감면하고(투자액의 125% 상한), 10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토지용도 변경 비용(CLU)/외부개발 부담금(EDC) 100% 면제, 10년간 재산세 100% 면제해주며, 이외의 모든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스타트업) 5년간 연 8% 이자비용을 지원하고(연간 5천만 루피 상한), 1년간 리스/렌탈 비용의 25% 환급(3천만 루피 상한), 최대 3천만 루피 시드머니 지원, 10억루피 규모 자본펀드(Corpus Fund)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인큐베이터) 최대 1천만 루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5년간 연간 최대 3천만 루피까지 반복비용을 지원하며, 멘토링 비용(5년간 연 3천만 루피 상한), 스타트업 대회 참가비(행사당 최대 5천만 루피) 등도 지원한다.

(접경지역) 토지용도변경 비용 및 외부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해주고, 최초 투자시 주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 비용, 수수료를 75% 감면해주며, 통합간접세 감면 상한의 40%를 추가로 환급해준다.

(엘리버드) 신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을 개시한 최초 10개 기업(중소기업 5개사, 대기업 5개사)에 대해 12년간 통합간접세 100% 환급해준다. (투자액의 125% 한도)



41) 전가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의료장비, 4차산업혁명 기반 제조업, 섬유/어패럴 및 기술섬유, 신발/액세서리, 전기전자, 항공방위, 농업/식품가공업, 바이오/의약, 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자전거 및 부품, 합금강, IT, 생명공학, 기술개발센터/인큐베이션센터/엑셀러레이터, 헬스케어, 관광/숙박, 미디어/오락, 항공방위MRO, 물류

▶ 마하라슈트라주

대기업의 경우 마하라슈트라 내에서 청구된 통합간접세(GST)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7년간 100% 전기세 면제 및 인지세 100%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단지엔 입주한 대기업은 인지세를 100% 면제해주며 민간공단에 입주시 75%를 감면해준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 지역별 대기업 투자 인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 상한 |

지역	최소 설비투자액 (1천만 루피)	최소 직접고용(명)	지원 상한 (FCI 대비)	지원 기간(년)
A(뭄바이, 푸네 등) 및 B지역(다누, 나식 등)	750	1,000	25%	7
C (비만디, 마라마티 등)	500	750	40%	7
D (아우랑바드, 나그푸르 등)	250	500	60%	7
D+ (바르시, 카갈 등)	150	400	70%	7

자료원 : Government of Maharashtra,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 2019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간접세를 100%까지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이자비용을 5%까지 지원하고 있다. C, D, D+ 지역에 설립하는 중소기업은 7년간 전기세를 면제받는다. 기술고도화 관련 비용도 최대 5%(최대 250만 루피)까지 지원하며, QC 취득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비용의 25%(최대 50만 루피), 특허 출원비용의 75%(국내 특허 최대 100만 루피, 해외특허 최대 200만 루피), 수질감사 비용의 75%(최대 10만 루피), 에너지감사 비용의 75%(최대 20만 루피), 에너지절약 장비 도입 비용의 50%(최대 50만 루피)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⁴²

인도 정부의 중소/영세기업발전법에 중소/영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설비투자 규모 500억 루피 미만인 기업을 중소/영세기업으로 분류하며, 인센티브 지원액은 고정자본 투자액(FCI)에 따라 총 인센티브 지원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 내에서 매년 균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https://maitri.mahaonline.gov.in/PDF/Package%20Scheme%20of%20Incentives%20-%202019.pdf>

| 지역별 중소/영세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상한 |

지역	지원 상한 (FCI 대비)	지원 기간(년)
A (뭄바이, 푸네 등)	-	
B (다누, 나식 등)	30%	7
C (비만디, 마라마티 등)	40%	7
D (아우랑바드, 나그푸르 등)	50%	10
D+ (바르시, 카갈 등)	60%	10

자료원 : Government of Maharashtra,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 2019

▶ 타밀나두주43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유망 분야, 산업단지, R&D프로젝트, 물류 인프라, FDI, 중소기업 프로젝트 규모 및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투자규모별 구분 |

프로젝트 분류	투자 규모		투자기간
	최소	최대	
중소규모(Sub-Large)	5억 루피	30억 루피	4년
대규모(Large)	30억 루피	50억 루피	4년
메가(Mega)	50 억 루피	500억 루피	4년
울트라 메가(Ultra-Mega)	500억 루피	-	7년

*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는 최소 50명 이상 고용 창출시 인센티브 대상으로 인정한다.



43) Tamil Nadu Industrial Policy 2021

| 투자대상 지역 구분 |

구분	지역
A	Chengalpattu, Chennai, Kancheepuram and Tiruvallur
B	Coimbatore, Erode, Karur, Krishnagiri, Namakkal, The Nilgiris , Ranipet, Salem, Tiruchirappalli, Tirupattur, Tiruppur, and Vellore
C	Ariyalur, Cuddalore, Dharmapuri, Dindigul, Kallakurichi, Kanniyakumari, Madurai, Mayiladuthurai, Nagapattinam, Perambalur, Pudukkottai, Ramanathapuram, Sivagangai, Tenkasi, Thanjavur, Theni, Thiruvavur, Thoothukudi, Tirunelveli, Tiruvannamalai, Villupuram and Virudhunagar

| ① 대규모(Large)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

구분	내 용
대상	(울트라메가) A, B, C 지역 (대규모, 메가) B, C 지역
투자 보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간접세 15년간 100% 감면 2. (고정형 자본보조금) 투자액의 최대 25% (최대 15년 내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 B지역 10%, C지역 12% (10년 이내) - 메가 : A지역 10%, B지역 12%, C지역 15% (12년 이내) - 울트라메가 : A지역 20%, B지역 22%, C지역 25% (15년 내) 3. (유연한 자본보조금) 최대 35%(A) / 37%(B) / 40% (C지역) 4. (매출액기반 보조금) 대규모고용시 매출액의 최대 2%를 지급 (메가/울트라메가 프로젝트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4천명 고용시 : 1.5%(A지역), 1.75%(B지역), 1.8%(C지역) - 4천명 초과 고용시 : 1.75%(A지역), 1.8%(B지역), 2%(C지역) <p>* 2, 3, 4번 인센티브 중 택일</p>
고용훈련 보조금	6개월간 종업원 1인당 월 4천 루피 고용훈련비용 지급 * 여성(트랜스젠더 포함), 장애인, SC/ST 출신은 월 6천 루피
부지 분양비용 지원	SIPCOT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비용의 10% 보조(A, B지역), C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이자비용 보조	-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 6년간 5% 지원 (연간 4천만루피 한도)
기본 인센티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세 : 5년간 면제 2. 인지세 감면 : A, B지역 50%, C지역 100% 감면 3.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 비용의 25% 지원 (1천만루피 상한) 4. QC(ISO, ISI, BIS, FPO, BEE, AGMARK, ECOMARK) 취득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250만 루피) 5. 지재권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3백만 루피)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 ② 유망산업 분야(Sunrise sectors)⁴⁴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

구분	내 용
대상	(A지역) 메가 및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B, C지역) 대규모, 메가 및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투자 보조금	유연한 자본보조금에 추가적으로 자본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부지 분양비용 지원	SIPCOT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 비용의 10% 보조(A, B지역), C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최대 2천만 루피)
인지세 감면	SIPCOT으로부터 취득한 부지에 대해 100% 면제
QC 취득 지원	취득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지재권비용 지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재권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이자비용 지원	6년간 5% 이자비용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 : 최대 2백만 루피 - 메가 프로젝트 : 최대 1천만 루피 -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 최대 4천만 루피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 5년간 면제 2. 환경친화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1천만루피 상한)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 ③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

구분	내 용
대상	B, C지역에 메가/울트라메가 규모 산업단지 조성 투자프로젝트 (50억 루피 이상 투자시)
자본 보조금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투자액의 12%(B지역) 또는 15%(C지역)
산업용 주거시설 조성 지원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기간동안 주거시설을 설립하는 비용의 10% 지원 (최대 1억 루피)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지원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최대 5천만 루피)

44) 항공방위산업, 농업/식품가공업(식용유 제외), 신재생에너지 부품 제조, 전기전자 개발/제조, 의료 전자장비/장치 및 설비, 전기자동차/전기차용 셀배터리 및 친환경차(수소차 등), 바이오, 의약/복제약/약효식품, 석유화학/특수화학, 신발/가족제품/플리우레탄섬유, 기술섬유(의료섬유포함), 기타 정부지정 유망산업 분야

| ④ R&D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

구분	내 용
대상	인도 과학연구산업청에 등록된 5억 루피 이상 투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R&D 프로젝트
자본 보조금	토지 취득/임차 비용의 50% (최대 20에이커 / 에이커당 5백만 루피 상한)
R&D 교육훈련 보조금	핵심R&D 분야 종사 종업원 1인당 12개월간 월 1만 루피 지원 - (학사) IT/과학 전공자로서 7년 이상 경력자 - (석사) IT/과학 전공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 (박사) IT/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QC 취득 지원	취득 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지재권비용 지원	R&D 연구에 필요한 지재권비용의 50%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 지리적표시 등록시에는 최대 5천만 루피
기본 인센티브	전기세 5년간 면제 환경친화 인프라 관련 인지세 5년간 면제 (최대 1천만 루피) 자본채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 ⑤ 물류인프라 관련 특별 인센티브 |

구분	내 용
대상	1. 최소 5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10에이커 부지에 멀티모달 물류단지 조성 (내륙 컨테이너창고 포함) 2. 최소 1.5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2만 평방피트 규모의 콜드체인 시설 3. 최소 2.5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10만 평방피트 규모의 창고 시설
종합물류단지 대상 인센티브	B, C지역 내 종합물류단지 개발자는 산업단지 내 창고/물류시설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가공구역(창고 포함) 면적 상한을 50%까지 완화
기술훈련 지원	C지역 내 물류창고 시설에 고용한 종업원 기술훈련 비용의 50%를 지원 (최대 1인당 1만 루피, 사업개시일 1년 이내) * 타밀나두 기술개발공사 및 물류창고협회에서 공동지원
Apex 기술개발 센터	물류 운송능력 향상을 위해 Apex 기술개발 센터를 설립중임

| ⑥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

구분	내 용
대상	메가 프로젝트 규모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촉진 보조금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40% 지원 타국가로부터 이전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 가능
수입장비	해외로부터 공장 이전시 도입하는 신규 및 중고 장비에 대해서도 고정자산 투자에 포함
운송비 지원	해외로부터 이전시 발생하는 자본재의 운송 및 물류 비용을 75% 감면 (최대 1억 루피)
부지 분양비용 보조	부지 분양비용의 10% 보조(A, B지역), C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최대 1천만 루피, 부지의 70%를 공장용도로 사용 조건)
R&D 교육훈련 보조금	핵심R&D 분야 종사 종업원 1인당 12개월간 월 1만 루피 지원 - (학사) IT/과학 전공자로서 7년 이상 경력자 - (석사) IT/과학 전공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 (박사) IT/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 5년간 면제 2. 인지세 감면 : A, B지역 50%, C지역 100% 감면 3.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 비용의 25% 지원 (1천만루피 상한) 4. QC(ISO, ISI, BIS, FPO, BEE, AGMARK, ECOMARK) 취득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250만 루피) 5. 지적권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3백만 루피)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 ⑦ 중소기업(Sub-Large)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구분	내 용
대상	50명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투자 프로젝트 (고정자산 투자액 5억~30억 루피)
자본 보조금	4년 이내에 투자이행 완료시 1천만 루피 보조금 지급 C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고정자산 투자액의 5%를 투자이행 완료시 지원(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
전기세 감면	신규/중액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전기세 면제
인지세 면제	토지/건물 구입/임차 관련 인지세의 50% 감면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지원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최대 1천만 루피)

▶ 안드라프라데시주⁴⁵

(대기업) 토지 매입/임대/담보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양도세를 100% 환급한다.(최초 1회만 환급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후속거래는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50%를 환급해주고 의류, 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적용해줄 수 있다. 특정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시 비용의 10%(최대 350만 루피)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친환경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 취수 시설 등 도입 관련 설비 투자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5억 루피)

(중소/영세기업) 토지 매입/임대/담보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양도세를 100% 환급한다.(최초 1회만 환급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후속거래는 환급 불가) 영세/소기업은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5년 간 100% 환급해주고, 중견기업은 7년간 75% 환급해준다.(의류, 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은 더 높은 환급률 적용 가능) 특정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시 비용의 10%(최대 350만 루피)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친환경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 취수시설 등 도입 관련 설비 투자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5억 루피)

여성기업/SC/ST/BC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케랄라주⁴⁶

케랄라주(일부지역 제외) 내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정자산 투자액의 15%(최대 2백만 루피)를 지원(여성/SC/ST/청년기업가인 경우 20%(최대 3백만 루피))하고, 중점산업⁴⁷ 투자시 추가적으로 투자액의 10%(최대 1백만 루피)를 지원한다. 특정지역(Idukki, Wayanad, Kasaragode, Pathanamthitta)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0%(최대 1백만 루피)의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도 10%(최대 1백만 루피)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45) https://www.apindustries.gov.in/VCIC/Data/PolicyDocuments/Andhra_Pradesh_Industrial_Development_Policy_2015_20.pdf

46) <https://kerala.gov.in/documents/10180/9aef66b2-78c9-416b-bf11-6615329aab80>

47) 고무산업, 농업/식품가공업, 기성복, 신재생에너지 장비/장치 제조, 바이오, 100% 수출전용기업, 바이오분해 플라스틱 제조,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업, 바이오비료 제조업

▶ **텔랑가나주⁴⁸**

(소기업/영세기업) 산업용 부지 취득시 인지세/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건물 등 임차 및 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된 인지세도 100% 면제해준다. 산업단지 입주시 입지비용을 25% 할인해주고(최대 1백만 루피), 토지이용도변경 비용의 25%를 환급해준다.(최대 1백만 루피) 사업개시일 이후 5년 동안 전기세를 유닛 당 1루피 감면해주고, 고정자산 투자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최대 2백만 루피)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5년간 자본이자 비용의 연 이율 3%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9% 감면해주며, 신설 영세법인의 경우 기계장비 도입 비용의 10%를 지원한다.(총 투자보조금에서 지원분만큼 공제) 현지인력 채용시 기술향상/교육훈련 비용을 50%(1명당 최대 2천 루피) 지원하고, QC/특허권 등록 비용의 50%(최대 20만 루피), 특정 정화시설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한다(최대 50만 루피) 등.

(중기업/대기업) 산업용 부지 취득시 인지세/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건물 등 임차 및 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된 인지세도 100% 면제해준다. 산업단지 입주시 입지비용을 25% 할인해주고(최대 1백만 루피), 토지이용도변경 비용의 25%를 환급해준다.(최대 1백만 루피, 중기업만 해당) 사업개시일 이후 5년 동안 전기세를 유닛 당 1루피 감면해주고,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7년간 75% 감면해준다.(중기업만 해당, 최대 고정자산투자액의 100%) 현지인력 채용시 기술향상/교육훈련 비용을 50%(1명당 최대 2천 루피) 지원하고, QC/특허권 등록 비용의 50%(최대 20만 루피, 중기업만 해당), 특정 정화시설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하며(최대 50만 루피), 산업단지로부터 10km 거리 이내에 설립되는 단독 제조시설에 대한 도로/전선/용수 등 인프라구축 비용을 50% 지원한다(최대 1천만 루피, 고정자산 투자액의 최대 15%).

(여성기업) 고정자산 투자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고(최대 1백만 루피, 소기업/영세기업만 해당), 기타 소기업/영세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도 모두 지원한다.

(메가프로젝트) 20억 루피 이상 투자 및 1천명 이상 고용하는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기설립 중소/영세기업) QC 취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최대 20만 루피).

(섬유산업) 방직 사업(조면업 제외)에 대해 5년간 연 4%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직조/뜨개질/염색/의류 생산 등 섬유사업(조면업 제외)에 대해 5년간 연 6%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BC/소외계층) BC 계급에 대해 27%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12%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48) Government of Telangana Industries & Commerce Department – Incentive Scheme 2014

▶ 웨스트벵갈주

대기업을 위해 투자 보조금, 이자 보조금, 산업 진흥 보조금, 고용 창출 보조금, 석탄 가스 보조금, 토지 전환 수수료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도 다르다.

Zone C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자본 투자금액의 15%를 투자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D에 위치한 기업은 30% 그리고 E에 위치한 기업은 40%를 받을 수 있다. B, C, D, E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이자 부채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최대 매년 175%). 또한 B, C, D, E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인지세를 75%까지 면제한다. B, C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전기세를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 D, E에 위치한 기업은 5년간 100% 이후 5년간 75% 면제받을 수 있다.

Zone A,B에 위치한 영세기업은 5년 간 이자 부채의 55%를 지원하고 C, D, E에 위치한 기업은 이자 부채의 70%를 지원한다. 인지세는 Zone A는 25% 면제, B는 50% 면제, C는 75% 면제 그리고 D는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전기세는 Zone A, B는 5년간 50%를 면제받고 C, D, E에 위치한 기업은 75%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SGST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Zone B, C에 위치한 기업은 30%을 환급 받을 수 있고 D, E에 위치한 기업은 50% 환급 받을 수 있다 (누적 환급액이 고정 자본의 75%를 넘을 수 없음). 또한 표준 품질 인증에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USD 6,800) 특허 등록 비용의 50%를 환급한다(최대 USD 6,800).⁴⁹

| 웨스트벵갈주 지역 구분 |

지역	도시
A	- 콜카타, 북 파르나가스, 남 파르나가스, 하우라
B	- 후글리, 북 파르나가스 & 남 파르나가스 (자치도시지역 제외), 하우라 (자치도시지역 제외) - 실리구리, 파스침, 푸르바, 부르드완, 나이다의 자치도시지역
C	- 부르드완, 푸르바, 나이다, 다르질링 (자치도시지역 제외) - 마이다, 잘파이구리, 푸르시다바드
D	- 피르부, 푸룰리아, 방쿠라, 우타르 디나즈푸르, 닥신 디나즈푸르 - 파스침 (자치도시지역 제외)

자료 : Government of West Bengal Depart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xtiles

49) Government of West Bengal depart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xtiles

II. 진출검토

1.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방식
2. 비용 리스크 관리

1.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방식

1.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FDI Policy)

인도진출 검토 단계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사업 목적 등이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시장 가능성이 커도 외국인에게 직접투자로 개방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의 기본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인도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인도 내 직접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통상산업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내 산업진흥국(DPIIT)에서 정책 규정(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으로 발표하고 매년 2월경 또는 수시로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DPII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 FDI 정책은 2020년 발표된 버전(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 of 2020)이 최근 것으로 이 또한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니 참고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규정이 예전 것인지 현재 통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인도의 대부분 공문서는 영어와 힌디어로 작성된다.

이 정책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자격, 진출 회사의 형태, 각 산업별 허용범위 등이다. 예를 들면 인도 민간항공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FDI Policy 2020의 'Sector Specific Conditions on FDI' 중 서비스 영역에서 'Civil Aviation'을 찾으면 기본 내용을 알 수 있다.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사업영역은 무엇인지,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는지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지분 상한선이 있는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승인도 자동승인인지 사전 투자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국방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제조업의 경우는 100% 지분 취득이 가능하고 또한 별도의 투자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규모 투자인 경우 투자법인 설립 이후 산업 허가 등의 별도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여부를 투자결정 이전에 검토 받기 위해서 자동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자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⁵⁰⁾

유의하여야 할 점은 FDI 규정에서 사업분야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개별 영업허가 등에서는 정책적 그리고 관습적 제약이나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고 지리적 입지 내에서도 업종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50) 최근에는 FIFP(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에서 신청과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회사법(Company Act 2013)

인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영 하는 중에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규칙에 대해서 직접 이해하지 않은 채 주변 조언에 의지하여 결정된 회사의 주요 내용이 사후에 걸림돌이 되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된 사례가 주변에 없지 않다.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 회사 설립 절차, 이사 임명, 이사회 운영 등 기업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라 평가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도 이 법이 정하고 있다. 식민지 점령국이었던 영국의 영향으로 법조문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에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적인 공권력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다루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 의한 적용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것이다. 회사법 역시 전문 288페이지에 달한다.

인도엔 회사법이 독립된 법안으로 있다는 특징과 함께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라는 연방정부 부처가 있다.⁵¹⁾ 기업부 웹사이트에서 인도 내 설립된 모든 회사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자본금, 임원, 회계감사보고일, 피소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다.

FDI 규정에 외국인이 인도에서 영위할 수 있는 회사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인도 회사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부 설명은 본 가이드의 회사 유형별 설립절차에서 다루기로 한다.

1.3 한인도 상호조약

한국과 인도 양국 사이에 통상 관련한 주요 조약으로는 우선 자유무역협정인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⁵²⁾ 들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상품과 서비스의 양국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면제 혹은 인하 협정이다.

다음으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이라고도 불리는 조세협정이 있다.⁵³⁾ 인도 내에서 발생되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이후 한국에서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양국 정부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도 협정을 맺고 있다. 이 조약에는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내용도

51) 기업부 : www.mca.gov.in

52)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53) 개정된 법안으로 2016년 9월12일 발효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진출이 아니라 한국 본사에 종속된 관계로 인도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출 형태와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본사에 종속된 업무 외 타 기업과의 업무 확대를 계획한 진출목적이라면 진출 기업의 이름을 굳이 본사 이름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책정하거나 주주와 이사진 구성에 본사와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식의 결정으로 이전가격 과세 이슈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⁵⁴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에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했다.

1.4 수출입제도와 관련 인증제도

인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법인을 설립한 직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IEC(Importer Exporter Code)이다. 한국은 무역업 허가제가 1993년에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해졌으나 인도에서는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선 IEC를 취득하여야 한다. 취득 요건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취득이 일주일 이내로 가능하다. 이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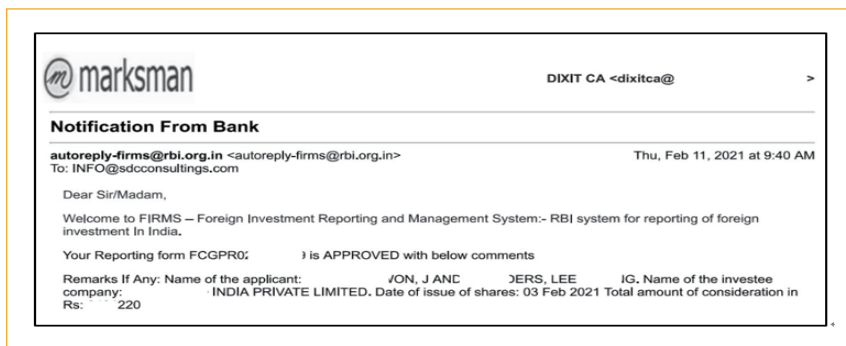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수출입 라이선스(IEC)를 취득한 이후에도 모든 물품을 임의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 수입에는 FSSAI 라이선스가 요구되고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은 CDSCO(인도 중앙정부 약품 표준국)에 수입하려는 제품과 수입업체가 지정 등록되어야 가능하다. 철강을 비롯한 상당수 수입하는 경우엔 각 제품이 인도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표준청)에 등록되어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수입에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인도 정부는 수입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수입 원자재 등에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인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제도 파악과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54)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전문은 외교부 양자 조약 관련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55) <https://www.dgft.gov.in/CP/>: 직접 이 정부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대행회사를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투자신고 승인에 따라 자본금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 사후조치로는 송금한 외국환은행 지점을 통하여 인도 법인 계좌로 송금된 자본금이 인도 중앙은행에 접수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인도 중앙은행에 자본금 신고를 증빙하는 문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래의 그림은 자본금의 신고가 중앙은행 자동시스템에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RBI이메일 최신 내용이 담긴 문건이다.

| 인도중앙은행 자본금 도착 신고 자동 회신 |



1.6 투자 방식

직접 투자진출에는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이른바 그린필드(Green Field) 전략과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의 브라운 필드(Brown Field) 전략이 있다. 투자 방식은 선택의 문제이지 진출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잣대가 아니다. 다만 지분 인수나 합작 투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은 경영 리스크이다. 진출 기업의 투자 목적이 한국에서의 앞선 경험을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율적 경영을 펼치고 싶은 것이라면 의사 결정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⁵⁶ 반대로 25% 지분을 가지면서도 경영 주체 파트너에게 의사결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경영참여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최근 인도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협업 시너지 효과를 피하고자 한국에서와 인도에서의 지분 참여가 늘고 있다. 증자 또는 기존 주식 인수를 통한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 양수도나 주주의 소재지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⁵⁷ 혹은 한국인과 인도인(기업) 사이에서 이루어

56) 주주총회 의결권은 한국에서는 다수결 절대원칙이지만 인도에서는 76%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이다. 25%지분을 가진 파트너에게는 증자 등 중요 경영 안전에 대해 거부권이 있다.

57) 비거주자(Non-Resident: NR)와 인도 거주자(Indian Resident: IR)로 나누는데 NR은 NRI와 OCB(overseas

지는 경우 모든 것이 인도의 외환거래규정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관계로 관련 신고와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해당 전문가의 도움으로 절차와 문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1.7 선택 가능한 기업의 유형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외국기업’ 신분을 지닌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 등이 있고 ‘인도기업’인 공개회사(Public Company),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이 있다. 이외에도 1인 기업(One Person Company)과 소기업(Small Company)이 있지만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해서 취득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아니기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 설립 가능한 회사의 유형 |

외국 회사 (Foreign Company)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인도 회사 (domestic Company)	주식회사(Company)	공개회사(Public Company)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외국 회사(Foreign Company)’와 ‘인도 회사(Domestic Company)’의 차이는 인도 내에서 ‘독립 법인의 형태’로 등록하느냐 아니냐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외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냐 아니면 인도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인도 회사’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⁵⁸⁾ 제외하고는 인도인에 의해서, 혹은 인도인과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법인세(Income Tax)에서 ‘외국 회사’와 ‘인도 회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법인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구체적인 세율은 수시로 변하겠지만 ‘외국 회사’와 ‘인도 회사’ 사이에 법인세(법인 소득세) 세율 차이는 거의 10%에 달한다.

프로젝트 오피스의 선택은 비교적 분명하다. 인프라 건설이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I) 등 단일

Corporate Bodies)로 나누어진다.

58) 외국인의 지분이 51%가 넘는 경우에는 복합 브랜드 소매업(retail)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투자조건을 갖추고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FDI Policy에서 알 수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회계 정산한 후 해당 오피스 업무를 종료하는 내용의 진출 이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프로젝트 수행 이외 기타 목적에 따라 연락사무소나 혹은 지사인가를 두고서도 선택의 기준이 객관적으로는 매우 명료하다. 영업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운영은 위험하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포괄적 목적으로 연락사무소와 지사 중 택일하여야 한다면 지사(Branch)를 택해야 한다. 단, 지사 설립이 모든 회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청 당시 진출 모기업이 적자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어렵다. 최근 인도 정부(RBI: 인도 중앙은행)의 방침으로 적자 기업의 지사 설립 인가가 나오지 않는다.⁵⁹ 각 유형별 성격과 설립 방법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2장1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비용 리스크 관리

많은 이들이 해외 투자 진출에서 저임금은 물론 토지 등에서도 저비용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도 그렇다. 더구나 인도의 일반적인 이미지로 '가난'하다는 선입견이 있어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모든 투자 비용은 저렴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런데 실재는 이와 다르다. 인도 진출이 산간벽지 오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시장의 입지로서 적합한 곳을 우선시하니 모두가 원하는 이런 지역에서의 토지 비용은 물론 인건비도 생각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진출 검토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 리스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세금 제도에서 오는 비용증가 측면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CEPA) 하에서 특정 품목에서 관세가 0%라는 사실을 단순히 모든 관세가 없다는 전제에서 비용 계산을 하였다면 이견 오류이다. CEPA에서의 관세 0%는 기본관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외 추가되는 교육세, 상계관세 등 기타 관세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쩌면 기본 관세보다 이 부분이 더 크다.

59) RBI에 접수되기 이전에 주거래 은행에서 적자 기업의 지사 설립 신청 자체를 거부한다.



2.1 법인세 등 조세 리스크

인도의 법인세는 매출 구간 별로 다르기는 하나 평균 25.16%로 한국보다 수치로도 높지만 체감으로는 훨씬 높다고 여길 수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인도의 법인세(법인소득세)가 과거 35%였던 시절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세(VAT)와 부가세 환급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부가세 개념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GST이다.⁶⁰ 동 세금 관련하여서는 본 가이드 3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나 분명히 인식할 것은 세율이 0%에서 28%로 복잡하다는 것과 환급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분기마다 매입과 매출 부가세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현금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도에서는 매월 GST filing을 하여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경우 당연히 현금 납부를 하지만 반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도 현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으로 Credit으로 남아서 다음 Filing에서 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TDS)도 주의하여야 한다.⁶¹ 근로소득, 계약 소득, 임대료, 수수료와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등 적지 않은 거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오래 전 거래를 근거로 하여 세액 납부 증명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세 리스크 관리는 관세에서도 있을 수 있다. 세번 분류에서⁶² 한국에서의 세번 분류와 인도의 분류가 달라서 CEPA적용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엔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 원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당 품목의 양국 세관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자재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 인도 BIS인증이 의무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⁶³ 이 사항이 미비하면 생각하지 못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즉 진출 목적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수입과 조달에서 생산활동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열거하면서 각각마다 적용되는 세금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원가 관리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진출 효과 유무와 정도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60) GST: Goods & Service Tax. 물품서비스세로 불리는데 일종의 부가가치세(부가세)로 간접세이다.

61) TDS: Tax Deduction at Source: 원천 징수 제도: 구매자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서비스 공급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공제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62) 세번: 세번 부호(HSK), HS Code분류 체계

63) BIS인증이 의무화된 제품은 현재 약 170여 개가 넘는데 철강과 전자제품 등 다양한 범위이다.

2.2 인적자원과 인건비 리스크

14억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나 인도는 아직 충분한 저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인력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문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예상외 고임금 사태를 불러온다.

현대화된 유통업이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인도 내부에서나 해외에서 이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유통업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도 유통 모 대기업 화장품 구매 책임자의 경우 연봉이 한화로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 동종업계 동일 경력과 비교하여 보면 믿기 어려운 일이나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쓸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또 구하여도 능력과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인력을 기초로 하는 분야에의 진출 시에는 HR지원에 관계 구축과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공장 자동화에 많은 투자가 있는 것은 제품의 고품질 생산추구에도 관계되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엄연하다.

인력 수급과 인건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인건비 조사는 일반적인 조사 통계를 인용하기보다는 진출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행하여야 한다. 산업 T1지역과 T2지역에서의 인건비 편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대도시에서 활동해야 할 업종이 아니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의 진출도 고려할 만하다.

이 까닭에 노동집약적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으로 인도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인적 요소가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일수록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고용 유지에 대한 전략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인도 인건비 수준은 한국과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다. 다만 인구가 1억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 등과 비교하여서 14억 인도의 인건비가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 임차료 등 간접 비용 리스크

인도에서 공장용 부지의 구매비용이나 임차 비용은 표면적인 단가로만 비교할 수 없다. 배경과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가격 비교가 된다. 토지 구입도 공단 분양은 물론 사유지의 경우라 하여도 영구 소유권(Free Hold) 이전 매매인지 또는 99년 장기 사용권(Lease Hold) 매입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⁶⁴ 특히 산업공단에서의 사유지 매입도 원 소유주가 산업단지개발공사로부터 장기 임차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의 매입이나 임차에서 해당 공단의 분양(장기사용

64) 토지에 대한 독점 사용권은 30년, 99년 등으로 사전에 정하여 분양하고 있다. 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 권리를 갖는다.

분양) 조건이⁶⁵ 제3자 양도(매매)가 가능한 지 또는 임대 행위가 가능한 지를 살펴야 가격의 높낮이가 파악된다.

해당 부지가 지니고 있는 인프라 조건도 비용계산에서 빠져서는 안된다. 한국의 경우 공단 개발기관이 전력과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등 제반 인프라를 모두 제공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지만 인도의 경우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조건에 대한 구비 여부와 비용 부담 등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다양한 인도라고 하면 인종과 언어 그리고 생활문화가 다양한 줄은 알았지만 이처럼 토지 거래 방식 하나만 두고 보아도 경우의 수가 양 손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다양하니 단순히 제곱 미터 당 얼마냐고 묻는 것으로 비용 리스크를 관리할 순 없다.

단순히 공장용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비용 산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Bare Shell’ 방식 임대와 ‘Warm Shell’ 방식의 임대가 있기 때문이다.⁶⁶ 임대료가 싸다고 입주하려고 하면 아무런 마감 공사가 안 되어서 이 비용을 두고 분쟁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사기가 아니라 임차인의 사전정보 부족이다.

공공 전력 비용은 싸다고 여길 수 있으나 품질이 문제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공급이 24시간 7일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잠시의 전력 단전이 치명적인 공장 운영이나 서비스 기능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선 발전기 등 별도의 공급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는 비용이 든다. 따라서 임차료 외에 주변 인프라 사정이 가격결정 요소에 감안되어야 한다. 간접 비용에서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출 대비 전체 비용 중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한국인 임직원의 주재 비용이 있다.⁶⁷ 진출과 동시에 사업 이윤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 실현 이전의 진출기업의 인적 구성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⁶⁸

65) 인도 전체에 통용되는 하나의 조건이 없어 주(state)별로 다르고 같은 주 안에서도 사업 기관별로 다르니 하나의 예를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경우마다 매번 공시된 조건을 살펴야 한다.

66) Bare Shell: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 있지만 내부 바닥이나 천정에 도장 공사와 필요한 전등을 설치하는 전기 공사 등의 마감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 후 임차인이 스스로 하여야 하는 방식.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Warm Shell이다. Warm Shell보다 충분한 내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임대하는 방식을 Furnished 또는 Plug & Play라고 말한다.

67) 급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부담, 주거 및 차량 운행 비용, 동반 자녀 학비, 왕복 항공료 등

68)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에는 한국인 해외교포라는 의미의 거주자는 없다. 인도 국적 취득이거나 인도인과의 배우자로서 거주가 아닌 경우 사업주 비자나 고용 비자도 영주권이란 의미의 거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매우 길어도 5년 혹은 대부분 2~3년 내외 비자 유효기간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일 뿐이다.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Ⅲ. 회사설립

1. 외국인 투자 절차
2. 회사 유형별 이해
3. 회사 설립 이후 필수적 절차
4. 회사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1. 외국인 투자 절차

진출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이전 신속한 실무 진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장 1절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시간 순서에 입각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1 입지 선정

인도는 28개주 8개 연방직할지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주는 지향하는 산업과 경제활동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고 한 도시에서 다른 중심지까지의 떨어진 거리 역시 매우 멀다. 그러기에 인도 진출은 더 정확히 인도 어디로 진출하는 것으로 정해져야 한다. 입지선정에는 진출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가운데 검토할 사항으로 통관과 물류에서 비용 부담이 큰 관계로 원부자재 수입 여부, 시장과의 거리, 협력 대상 주변 산업 유무, 진출 업종에 대한 주정부 정책 그리고 진출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등이 있다. 일단 손쉬운 곳에서 설립하고 이후 판단에 따라 다른 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 법인 본점 주소를 주에서 주로 이동하는 것은 간단한 일도 아니다. 무려 10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과정의 승인 여부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대기업 동반진출이 많은 관계로 사실상 입지 선정은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진출이라면 타밀나두(Tamil Nadu)주 내에서 정해질 것이며 노이다(Noida)에 있는 삼성과 LG에 관계된 진출이라면 공장으로는 노이다이거나 그레이터노이다(Greater Noida) 혹은 더 멀리 떨어진다고 하여도 인근 위성도시 파리다바드(Faridabad)와 가자아바드(Ghaziabad)가 고려될 것이다. 이들 도시 모두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속한 도시이니 본점 주소 이동이 용이하다.

입지가 정해져도 공장부지 혹은 사무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을 하는데 필수적인 계약 당사자 법적 신분이 없어 곤란을 겪는다. 이에 가계약 상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명의 전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설립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본사 비용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입지가 정해지면 신속히 회사설립 절차를 마치는 것이 여러 행정 절차에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선 2장 4절(회사 설립 관련 사전 체크 리스트)에서 언급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내용에 대해 숙고를 통하여 사전 결정을 해주어야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⁶⁹⁾

69) 이따금 인도에서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일에 대해서 30일 내외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1.2 회사 유형 결정

프로젝트 오피스의 선택 여부는 매우 단순하다. 해당 사업으로만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른 회사 형태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프로젝트 수행이라도 이를 계기로 인도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할 전망이라면 프로젝트 수행과 청산이라는 절차보다는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와 지사(支社)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연락 사무소엔 법인세가 없다는 점에 미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출 목적이 말 그대로 연락 업무만 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업 행위가 뒤따르기에 이는 합법적 선택이 아니다.

다른 고민은 지사로 할지 아니면 투자법인을 설립할지에 대한 선택이다. 지사에서 법인설립이란 단계적 선택도 바람직하다. 다만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를 살피고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에 낭비가 없다. 또한 지사 설립과 동시에 사업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세 10% 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진출 초기에 법인 설립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어느 형태로든 제조나 소매 판매를 해야 한다면 지사를 택해선 안된다. 지사 설립이 이후 법인 설립에 법적 인센티브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를 택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만 이 경우는 반드시 파트너 중 1인은 인도 거주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자금 조달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업이나 큰 규모의 서비스를 하기엔 부족한 형태이다. 진출 기업이 무역업이나 소규모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택할 수 있는 선택이다.

진출하고자 하는 유형이 결정되어야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지니 유형 결정엔 신중하여야 한다. 경험으로 보면 이사로 등재된 인원이 많고 이사회 의결 과정이 복잡한 규모의 회사의 경우, 지사 설립에 대한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단계별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정된 예외적 경우이다.

1.3 회사 구조 결정(주주 혹은 파트너 및 이사)

연락 사무소나 지사 설립에는 현지 대표 1인의 선정으로 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에는 이와 달리 2인 이상 주주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사 또한 2인 이상이 요구된다.

직접 진출 전략을 선택한 기업은 그때부터 인도 법인의 주주 구성과 이사 구성 그리고 이사 중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결정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 본사의 100% 단독 투자 인도 법인 설립인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 법인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상징적 의미의 1주 주식을 대표이사 개인이나 기타 임직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주주 1인이 인도 현지에 있어야 한다거나 인도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⁷⁰ 주주가 인도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그 소재지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⁷¹

이전 회사법에는 설립 직전 연도에 인도에 최소 182일 이상 거주 한 이(인도인 또는 거주 등록한 외국인)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 신설 법인으로서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 불만이 크자 인도정부는 회사법(Company Act 2013)을 개정하여 회계연도에⁷² 180일 이상 거주하는 이사가 1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완화시켰다.⁷³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제 설립 시기를 잘 선택하면 이제부터 인도에 주재하는 이를 인도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로 지명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굳이 회사에 관계 없었던 이를 차명하여 이사로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아래의 표는 진출 설립 형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의 인적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⁷⁴

70) 본사에서 법인장(法人長)이 아닌 주재원으로 나갈 직원을 등기이사 및 주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인도취업비자(Employ VISA)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71) 한국 법인이 인도 설립 법인의 주주로 최상위 대주주인 경우는 인도 법인의 회계는 한국법인 회계에 연결(연결 재무제표 작성)되어야 한다.

72) 회계 연도: Financial Year로 인도 회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인데 이를 회계연도라고 부른다.

73) As per the provisions of Sub Section (3) of Section 149 of the Companies Act, 2013, Every company shall have at least One Director who stays in India for a total period of not less than one hundred and eighty-two (182) days during the financial year.

74) 법인 설립에서 친분이 있는 인도인을 거주 이사로 등재하고 나중에 이를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지만 현실에선 이 인도인 이사를 사임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품 요구로 곤란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 비공개회사의 최소 인적 구조 |

구분	최소 인원	최대 인원	특이사항
이사(Director)	2인	15인	주주 총회를 통해 이사 최대 정원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주주(Share Holder)	2인	200인	주주의 국적 제한은 없다. 즉 주주 중 인도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1.4 자본금 결정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2015년 회사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2루피(약 30원)의 자본금으로 인도에서 주식회사 법인을 세울 수 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과 실제로 납부된 자본금을 말하는 납입자본금(Paid Capital)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주식회사 자본금과 다르다. 수권자본금이란 납입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 최대 한도를 표시한 것으로 이 한도 내에서 수시로 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 수권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증액 변경이 가능하다.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에서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 열람을 하면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알 수 있다.

설립 초기에 수권 자본금을 향후를 위해 최대로 늘려 놓고 필요한 만큼 납부하여 납입자본금을 만들 수는 있으나 수권자본금 금액에 대해 적지 않은 인지세가 부과됨으로 이에는 신중한 결정이 따른다. 법인 등록 과정에서의 인지세는 수권자본금 금액 구간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본금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선 이익실현 이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지 아니면 자본금은 명목상으로 하고 필요 비용은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법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설립 대행사 선정

법인 설립은 한국에서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법률회사(Law Firm), 회계사(CA),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서도 설립된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자격과 경험을 갖춘 대행회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순하게 설립대행비용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설립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진출 회사의 성격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택하여야 설립 이후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에 임박하여 진출이 결정되어 빨리빨리 진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20일 이내 완료한다는 대행사의 복선 있는 약속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된다. 이런 약속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청부터 허가까지 소요되는 날수를 계산한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실제로는 한국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작성과 번역,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 등으로 2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서류는 실제로 한국에서 발급받고 작성하여야 하며 인도에서 추가되는 서류는 대부분 e-Filing으로 이루어지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굳이 담당자가 인도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법인 설립 이후 은행 계좌개설 등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할 경우에 맞추어 입국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이다. 대행 수수료 견적에는 인지세, 서류 번역과 공증 수수료, 해외특송비용 등 절차상 지출되는 제 비용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할 점이다.

2. 회사 유형별 이해

2.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와의 연락 업무를 위해 거점으로 세우는 형태이다. 연락사무소 지위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시장조사 그리고 본사와 거래처 간의 기술 지원 등 소통 역할이다. 이 외에 인도로의 수출 또는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다.⁷⁵ 이런 일반적인 범주 외에 한국계 은행이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인도 내 지점 개설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즉 한국 본사의 인도 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연락 거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연락사무소는 3년 한시적이란 점이 스스로 폐업하거나 청산하기 전까지 존속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오피스와 비교된다. 물론 3년이 지나서 인도 중앙은행 승인을 전제로 연장할 수 있다.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연락사무소는 직간접적으로 인도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조건이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 판매는 물론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재고관리 등도 금지되어 있다.⁷⁶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국 본사가 전년도 기준 순자산이 미화 5만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과 흑자 재정을

75) 수출입 홍보 고취 활동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가격 제시나 흥정(Negotiation)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76) 이를 어기고 암암리에 본사와 영업과 매출에 관해 업무를 하였을 경우 그 흔적을 찾아 소급하여 막대한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실제로 한국기업의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세금 추징을 위해 관련 인원에게 출국금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진다. 이는 법원판례로도 입증된 사례이므로 피할 방법이 없기에 애초부터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흑시나 어짜더라는 안일함이 큰 곤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여주는 직전 3개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⁷⁷⁾

아래에 붙이는 표에서는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항목을 예시한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이드 작성 시점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양식 준비 (양식 제공은 인도, 작성은 한국)
2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4	현지 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Liaison Office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8	이후 은행계좌개설과 PAN발급 등 후속 조치

이 외 필요 서류로는 연락사무소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연락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연락사무소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장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3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된다.

2.2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는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인프라 건설 공사 등 특정 목적을 일정기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사업체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오피스의 사업활동 범위는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77) 3개년도 연속으로 재무제표에 흑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즉 어느 한 해라도 적자였으면 본사 외 다른 관계 회사의 자금 보증(Letter of Comfort)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지만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

프로젝트 오피스의 설치 운영 기간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이다. 당초 신청된 기간 중 종료되지 않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하여서 프로젝트오피스는 인도 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는 없으나 외국 기관이나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수출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등 행위를 할 수는 있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일반 법인보다 매우 높아서 거의 40%에 달한다. 이를 납부한 후 나머지 이익금은 당연 한국 본사로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서는 인도 현지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 소득세율을 감안해야 하나 납부 후 한국으로 송금된 실제 이익금에 대해선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또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조치이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지사와 연락사무소와 함께 인도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인도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roject Office 설립 절차 |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준비
2	준비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발급 ⁷⁸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4	현지 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Project Office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 외 필요 서류로는 Project Office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연락사무소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사무소장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3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비 서류 목록은 앞서 연락 사무소 설립과 같다.

78) 국내에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발급대행기관을 주로 사용한다. 아포스티유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 영사 확인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여전히 요구하기도 한다.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Registrar of companies, Delhi
4th Floor, IFCI Tower 61, New Delhi, Delhi, India, 110019

**Certificate for Establishment of Place
of Business in India**

Foreign Company Registration Number: F06 Year : 2018

I hereby certify that Form No. FC-1 dated 13-06-2018 (DD-MM-YYYY) filed under section 380 of the Companies Act, 2013 notifying establishment of place of business in India with effect from 25-05-2018 by M/s " _____ CORPORATION a Company originally incorporated in South Korea has been registered.

Given under my hand at New Delhi this Eighteenth day of June Two thousand eighteen.


KAMAL HARJANI
Registrar of Companies
RoC - Delhi

Mailing Address as per record available in Registrar of Companies office:

CORPORATION

Shri _____, Thaneerkulam Villag, Sideco Industrial Estate,
Kakalur, Tiruvallur, Tamil Nadu, India, 602003





2.3 지사(Branch Office)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한 해외 사무소를 지사로 부른다. 이 사무소는 상품의 수출입⁷⁹⁾, 관련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시장조사, 본사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의 수행, 본사를 대표하여 인도 내 기업과의 기술과 금융 협력 업무, 본사를 대리하여 판매 및 매입 대리점 역할, 본사 수출제품에 대한 유무상 After Service를 할 수 있다. 열거된 내용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Branch Office 설립 절차 |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양식 준비 (양식 제공은 인도, 작성은 한국)
2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⁸⁰⁾
4	현지 은행의 1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로 서류 송부
5	RBI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이 발급됨 ⁸¹⁾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Branch Office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8	이후 은행계좌개설과 PAN발급 등 후속 조치

지사는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이렇게 취득된 부동산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지사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허용돼 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역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지사는 운영경비를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인도 내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사로도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가능하다.

79)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IEC(Import & Export Code)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80)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이 있으면 대부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이 설치된 도시는 New Delhi, Gurgaon, Mumbai, Pune, Chennai, Hyderabad, Ahmedabad 등인데 Gurgaon에 가장 많이 있다.

81) 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 Branch Office 설립 자격조건 |

1	직전 5개년도 재무제표에서 5개 년도 연속으로 흑자(surplus)
2	재무제표 상 전년도 순자산이 최소 미화 10만 달러 이상
3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설립이 허가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신청한 회사의 상위 지주회사나 특수 관계 자회사의 지급 책임 확인서(Letter of Comport)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위 1,2항의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 외 필요 서류로는 지사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지사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지사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지사 대표의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5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비 서류 목록은 앞서 연락사무소 설립과 같다. 현재 인도 내에 설립된 한국기업의 지사(支社)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중은행 지점이다.

2.4 현지법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장을 전제로 한 공개회사(Public Company)을 택하는 경우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를 90% 택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유한책임파트너십(LLP)를 선택하는 추세다. 여기서는 비공개회사를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비공개 법인을 설립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설립 조건을 검토하여 사전 결정을 해두어야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다.

법인 설립을 하는 데에는 미리 결정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법인 설립 신고 주소, 이사진 구성, 주주 구성, 회사 이름 결정, 자본금 규모 결정을 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름 주소, 이사 그리고 주주의 구성에 대해서는 2장 1절 3항(회사의 구조 결정)과 2장 1절 4항(자본금)에서 설명한 바를 참고할 수 있다. 회사의 이름은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 'Check Company Name'⁸²⁾ 통해서 직접 중복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법인

82) www.mca.gov.in 중(中) <http://www.mca.gov.in/mcafoportal/showCheckCompanyName.do>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반려되고 유사한 발음이 될 경우에도 반려 가능성이 크다. 같은 본사 소속 일 경우에 유사한 이름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먼저 등록된 회사의 동의서(NOC)⁸³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 비공개법인을 설립하면 이름 끝에 Private Limited 혹은 PVT LTD라는 약어가 붙게 된다.

| 법인 회사 설립 절차 |

순서	내용
1	전자서명인증서(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등록
3	법인 이름 사전 등록(RIN, Reserve Unique Name)
4	SRN(Service Request Number) 발행
5	법인 설립 신청 서류 제출
6	해외직접투자신고(국내 주거래 은행)
7	자본금 인지세 납입
8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이사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서(DSC)는 한국 공동인증서와 유사한 것으로 인도 정보통신부 산하 CCA(Controller of Certifying Authorities)에서 인정한 6개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www.safescrypt.com, www.nic.in, www.idrbtca.org.in, www.tcs-ca.tcs.co.in, www.ncodesolutions.com, www.e-Mudhra.com 등이 선정기관이다. 발급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하는데 특정 문장을 낭독하게 하고 비디오 녹화를 하여 인증하게 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DSC 신청서, 이사의 거주지 증명(영문주민등록등본), 이사의 여권 사본, 이사의 여권용 사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정상적이라면 4~7일 정도 필요하다.

DSC는 등록이 완료되면 USB에 저장되어 발급되는데 이는 법인설립 서류를 제출할 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인 설립 이후 받아야 할 제반 인허가 및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이사의 서명이나 확인이 필요한 때마다 사용되는 것으로 잘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USB를 누가 보관할 것이냐를 두고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각각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이사 중 누가 인도 법인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기에 보안이 확실할 수 있는 보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이름 사전 등록은 인도정부가 법인 설립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RUN: Reserve Unique Name'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과거처럼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법인 이름을

83) NOC: Non-Obligation Certificate

사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번 신청에서 2개의 법인 이름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법인 이름이 승인되면 SRN⁸⁴ 주어지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20일 이내에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면 법인 이름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법인 이름을 임의로 지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반려된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Samsung Wedding Service는 불가능하다. 인도에 진출한 삼성 기업이 '삼성'을 브랜드로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욕설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Board, Commission, Authority, Undertaking, National, Union, Central, Federal, Republic, President, Nation, Governor, State, India, Bharat, Minister, Financial, Forest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⁸⁵

법인설립 신청서 제출을 간소화하려는 인도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 이 가이드 이후에도 지금의 설명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한 노력으로 법인 이름 신청서, 법인 주소 신고서, 이사(Director) 등록번호(DIN)신청서, 법인 등록 신청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한 시스템이 SPICe이다.⁸⁶ 뿐만 아니라 PAN(소득세 번호)과 TAN(원천공제세번호)를 법인 설립 이후 별도로 해야했지만 이제 SPICe 제출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시간 소요가 대폭 축소되었다. SPICe 제출시 다음 <표 2-7>에서 열거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SPICe 제출 서류 |

1	이사 및 주주 ⁸⁷ 의 거주지 증명서와 신분증
2	DIR-2 (이사 등기 동의서)
3	이사 및 주주의 확약서 (Affidavit & Declaration)
4	MOA와 AOA (인도 법인 정관)
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존을 증명할 전기세 또는 관리비 납부 영수증 ⁸⁸
6	기타

MOA(Memorandum of Association)는 법인의 사업목적, 활동 범주, 구조 등 법인의 성격을

84) SRN: Service Request Number

85) ABC India, ABC Delhi Company와 같이 국가나 도시명만 추가된 이름은 사용 불가이다.

86) SPICe: Simplified Proforma for Incorporating Company Electronically

87) 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결의서, 사업자 등록증, 정관 그리고 법인 대리인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88) 설립단계에서 아직 입주하지 않아 미비할 경우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보완하여도 된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문서이고 AOA(Articles of Association)은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인 내부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문건이다. 이들 서류 각각 마지막 페이지에는 Subscriber Sheet라고 주주 정보와 지분 관계를 기재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이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서에 작성된 수권자본금 (Authorized Capital)에 따라 인지세가 계산되는데 이를 납부하여야 SPICe신청서가 제출된다. 자본금에 따른 인지세는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하여 준비할 수 있다. SPICe제출 후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과 DIN, PAN그리고 TAN이 발급된다. 인도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법인명과 주소, CIN(사업자등록번호), PAN 그리고 TAN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만 본다면, 모든 서류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20일 전후이다. 그러나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총 60-90일 정도 걸리는 것을 전제로 진출 준비를 함이 옳다.

| 사업자 등록증 사례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Central Registration Centr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Pursuant to sub-section (2) of section 7 of the Companies Act, 2013 (18 of 2013) and rule 18 of the Companies (Incorporation) Rules, 2014]


I hereby certify that **PRIVATE LIMITED** is incorporated on this Thirteenth day of February Two thousand nineteen under the Companies Act, 2013 (18 of 2013) and that the company is limited by shares.

The Corporate Identity Number of the company is **U2029**

The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of the company is **AAE IP***

The 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 (TAN) of the company is **CB IA***


Given under my hand at Manesar this Thirteenth day of February Two thousand nineteen .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ALOK TANDON
Deputy Registrar Of Companies
For and on behalf of the Jurisdictional Registrar of Companies
Registrar of Companies
Central Registration Centre

Disclaimer: This certificate only evidences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on the basis of documents and declarations of the applicant(s). This certificate is neither a license nor permission to conduct business or solicit deposits or funds from public. Permission of sector regulator is necessary wherever required. Registration status and other details of the company can be verified on www.mca.gov.in

Mailing Address as per record available in Registrar of Companies office:
..... **PRIVATE LIMITED**
LEVEL 2, AGNITIO TECH PARK II, HANDEGONHATTABEENAR
..... **L CHENNAI, Chennai, Tamil Nadu, India, 600096**



* as issued by the Income Tax Department

3. 회사 설립 이후 필수적 절차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회사를 운영함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와 인허가 및 등록을 마쳐야 사후 문제가 없다. 공통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는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 공문 양식(Letterhead Form)을 마련한다. 법인 사인 스탬프도 필요하다. 회사 현판을 설치하여야 이후 증빙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를 회사 규모에 적합하게 임명하고 자본금이 5천만 루피 이상일 경우는 회사 총무비서(Company Secretary)를 관련 협회에 등록된 인원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주요 절차를 본 2장3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1 1회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확인을 하고 법인계좌 개설도 승인하도록 한다. 법인 감사도 임명하여야 하는데 외부회계사무인(CA)이 감사를 겸한다. 물론 이사회를 물리적으로 개최한다기보다는 서류상 갖춘다는 의미가 크다.

3.2 법인 계좌 개설

인도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한국에서 하듯이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적지 않은 서류와 불친절을 생각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엄청난 특권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이젠 이런 고민은 많이 해결되었다. 인도에 한국계 은행이 상당수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갓 진출한 한국기업의 처지를 나름 이해해주는 한국계 은행에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법인 계좌 개설에서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 한국계 은행이라도 법인 사무실의 존재여부를 실사로 확인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출 초기에 법인 사무실을 실제로 개설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타인의 사무실이나 설립 대행사의 주소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엔 사무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자금세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취하는 은행의 자구수단이다. 은행의 사무실 실사에 대한 이해가 공유될 수 있는 것은 한국 본사의 평판이 중요하기에 가급적이면 본사 주거래 은행의 인도 지점을 계좌 개설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곤 한다. 서류 준비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니 개설 은행을 정하고 해당 창구에 이를 문의하도록 한다.

3.3 자본금 송금 및 해외투자 신고

은행 계좌가 준비되면 주주들은 정해진 자본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한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설정된 수권자본금 모두를 송금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해외로 자본금을 송금할 때부터 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비로소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후에는 1장 1절 4항에서 언급한 대로 사후신고까지 차질 없이 마쳐야 한다. 자본금 송금에서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승인이 나지만 세금을 체납한 이나 신용관리 대상자는 부적격 투자자로 분류되어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3.4. 자본금 신고

법인 계좌로 자본금이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신고를 하게 된다. 자본금 1차 신고 기한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0일이다. 기한은 넘기면 비록 소액이지만 과태료가 발생한다. 1차 신고는 자본금 수취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2차 신고는 자본금 도착 후 정관 내용대로 주식을 발행한 후 2차 신고를 하는데 주식 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 한다. 2차 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FC-GPR이라는 온라인 신청서로 RBI에 제출하게 된다.

3.5. GST 등록(통합상품서비스세)

모든 거래에 필수적인 GST(Goods & Service Tax) 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인도 은행 계좌가 필수적이다. 신청은 GST웹사이트(www.gst.gov.in)에서 가능하다. 실제로는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GST 등록은 사업장이 소재한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가 뉴델리에 있고 지사가 첸나이에 있다면 뉴델리와 첸나이에서 각각 GST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같은 주소의 사업장일지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하고 있다면 각각 나누어서 GST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로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마이크로 기업은 GST등록 의무가 없다.

3.6 사업개시 신고

법인 설립 이후 180일 이내에 자본금이 도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도 기업부에 사업 개시가 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INC-20A라 불리는 사업개시 신고서와 자본금 도착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내역서이다. 이 신고에는 자본금 액수에 따라 소액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비록 몇 천 원에 불과한 소액인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엄청나다. 법인에게는 50,000루피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등기 이사 각각에는 하루 지연에 무려 10,000루피라는 날벼락이 떨어진다.⁸⁹ 이 외에 법인이 납부해야 될 인지세도 벌금 성격으로 지연 일수에 따라 2배에서 12배까지 증액된다.

3.7 수출입 코드(IEC) 발급

무역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한국에서나 베트남 등지에서 원부자재 공급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사용의 물품 수입을 위해서 수출입 코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이는 DGFT라는 중앙정부 관서에서 발급하는데 신청 또한 웹 페이지에서 가능하다.⁹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IEC신청서, 법인 PAN 카드 그리고 법인 계좌 정보와 Cancelled 표시한 수표사본이다.

3.8 기타

이 외에도 근로자 연금(EPF)과 근로자 주정부 보험(ESI) 등 회사에 고용인이 발생하면서 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인도에 이러한 필수 행정 사무가 유별나게 많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행정 신고 요구는 대동소이하다.



89) 이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00 루피이다. 10일 이상 지연되어도 과태료 최고액은 100,000만 루피이다.

90)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www.dgft.gov.in

4. 회사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앞서 각 장과 절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내용으로 인도 진출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앞서서 진출 회사 내부에서 검토 및 논의하여 기본 방향을 정하여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다.

| 회사설립 사전 체크리스트 |

항목	Check Point
인도시장 경쟁력	자사의 제품(서비스)의 인도 시장 조건 하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여부를 분석하여 진출의 타당성 검토한 후 진출 여부와 진출 형태(단독, 합작, 기술이전 등)를 결정하여야 시행착오 많은 비용과 시간 손실을 피할 수 있음.
입지 (Location)	진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진출 목적지를 확인하여 입지여건 분석(산업 허가, 인력 상황, 임금수준, Incentive여부, 주변지원산업, 물류, 성장성 등)
회사 구조	회사 이름 (무조건적으로 본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 외 법인의 경우 주주 등 지배관계를 고려하여 이전가격 등 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사와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와 납부 계획
	회사 내부 여건(재무제표 현황 등)
	주재 인원 선정과 사전 교육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의 향후 관계 설정 (지분관계 이외 독립성 지향 여부)

IV. 회사운영

- 
1. 세무
 2. 회계
 3. 노무
 4. 인도 내 CSR 및 ESG 관련 가이드

1. 세무

1.1 조세체계

▶ 세목의 구성

인도의 조세는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에 따라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체가 부과하는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다.

| 인도의 주요 세목 구성 |

연방정부세	직접세	소득세 (Income Tax)
	간접세	관세 (Customs duty)
		연방 상품·서비스세 (Central Good & Service tax, 'CGST')
		통합 상품·서비스세 (Integrated Good & Service tax, 'IGST')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
주정부세	직접세	인지세 (Stamp duty)
	재산세 (Property Tax)	
	간접세	지출세 (Expenditure Tax)
		주 상품·서비스세 (State Good & Service Tax)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인도는 2017년 여러 간접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한 GST제도를 도입하였다. GST제도 도입 이전 인도의 간접세는 주 정부 별로 각각 다른 세목과 세율의 제정으로 인해 주 간 재화 이동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되는 등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GST제도의 도입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과하던 간접세는 GST로 통합되어 단일의 세율로 부과하게 되었으며 적용된 GST세율은 50:50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세수에 귀속되고 주간 거래에는 중앙정부가 IGST를 부과한 후 각 주에 배분한다.

다만, 일부 재화와 상품은 아직까지 GST제도로 통합되지 않고 기존의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 (Alcohol for human consumption)와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이 이에 해당하는데 동 재화의 생산시설 반출에는 기존의 간접세인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를 부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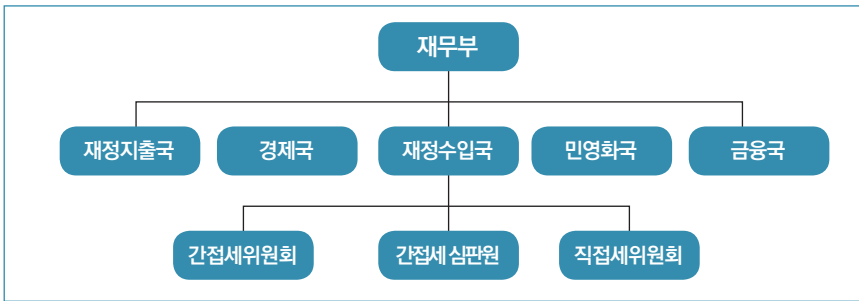
상속세는 과거 상속재산의 7.5% ~ 40%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1985년 폐지되었으며 현재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법은 1998년 폐지되었으나 자산의 무상이전은 수증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 간의 증여와 가족 이외의 자로부터 5만루피 이하의 증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인도 과세당국의 구조⁹¹⁾

인도의 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정지출국 (Department of Expenditure), 경제국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민영화국 (Department of disinvestment), 금융국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 5개의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Department의 장은 차관이다. 재무부의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직접세위원회 (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가, 간접세 분야는 간접세위원회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으로 위원들은 ‘Member’라고 한다.

| 재무부와 과세당국(간접세위원회, 직접세위원회)의 관계 |



인도의 직접세심판원 (ITAT, 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은 법무부 (Ministry of Law and Justice)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세심판원 (CESTAT, Custom, Excise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은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에 소속되어 있다.

91) 주인도대사관, 2016, 인도 세법 이해

1.2. 소득세

▶ 인도의 소득세 특징

한국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인도의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모두 다루면서 개인과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는 차이가 있는데 매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연방예산과 함께 매년 제출되는 Finance Bill에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에는 부가금 (surcharge)과 목적세인 건강·교육세 (Health and Education Cess)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 (Person)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다음의 7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개인 (individual), 힌두 비 분리 가족 (Hindu undivided family)⁹², 기업 (company), 유사파트너십 (firm), 조합 (association of persons or a body of individuals), 지방당국 (local authority), 기타 법률상의 납세자 (Every artificial juridical person)

(2) 거주자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

조세의 부담범위는 거주자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크게 거주자 (Resident in India)와 비거주자 (Non-resident in India)로 구분된다. 이에 더하여 거주자인 개인과 힌두 비 분리 가족은 정규거주자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In India)와 비정규거주자 (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in India)로 세분화된다.

거주자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92) 힌두사회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상 파트너십은 제3자간에 계약관계로 존재하는 것임에 비하여 이는 혈통상으로 묶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증과 유사한 개념이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주요국의 조세제도 인도편

| 거주자 별 납세의무 범위 |

구분	정규거주자	비정규거주자	비거주자
인도국내소득 (Indian Income)	과세	과세	과세
해외소득 (Foreign Income)	과세	1) 인도에서 설립되었거나 2) 인도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과세	과세제외

(3) 개인 (Individual)의 거주자 판정

개인이 1) 과세연도 (Previous year)동안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182일 이상이거나 2) 과세연도 중 인도에 60일 이상을 체류하고 그 직전 4개년 동안 인도에 365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된다.

상기 2가지 요건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자로 판정된 개인이 아래의 추가 요건 두가지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거주자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in India)로 판정한다.

- ① 과거 10년 중 2년 이상을 인도에 체류한 경우
- ② 과거 7년 중 730일 이상을 인도에 체류한 경우

(4) 기업의 거주자 판정

인도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도기업은 항상 거주자로 판정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1) 총 매출액 50 Crore 루피를 초과하고 2)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장소 전체 또는 일부를 인도에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한다.

(5) 조합 및 기타 법률상 납세의무자의 거주자 판정

조합 등의 경우 사업의 통제와 경영(Control and Management)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된다. 통제와 경영은 단순히 통제와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상태가 아닌 실제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 진출형태에 따른 과세 상 취급

인도 진출형태는 크게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지점 (Branch Office), 프로젝트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현지 시장조사, 홍보활동 및 업무 상 의사소통 등의 제한적 활동만이 허용된다. 연락사무소가 허용된 활동범위 내에서만 운영된다면 인도세법에 따른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점과 프로젝트사무소는 주로 수출입, 연구활동 및 건설 등 특정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는데 두 형태 모두 인도 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발생된 수익은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인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은 인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에게 요구되는 세법상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의 과세기간

인도의 과세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년을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회계기간의 시작일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인도의 회계기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데, 동 12개월의 기간을 회계연도 (Financial year)라고 한다.

(1) 사업연도 (Previous year)와 과세연도 (Assessment Year)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대상기간을 인도세법 목적 상 사업연도 (Previous year)라고 한다. 12개월의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익년의 12개월의 기간을 과세연도 (Assessment year)라고 한다

(2) Financial year와 다른 기간을 사업연도로 적용하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

인도소득세법 목적 상, 모든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회계연도 (Financial year, 4월 1일 ~ 익년 3월 31일)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회계연도에 맞춰 회계장부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2021.04.01 ~ 2022.03.31의 사업연도 (Previous year 2021-22) 동안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소득은 2022.04.01 ~ 2023.03.31의 과세연도 (Assessment year 2022-23)에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여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인도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Financial year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 |

회계기간	회계이익		
	합계	1월 ~ 3월	4월 ~ 12월
2020.01.01~2020.12.31	80,000	20,000	60,000
2021.01.01~2021.12.31	110,000	54,000	56,000
2022.01.01~2022.12.31	70,000	38,000	32,000

| 기간 별 과세대상 소득 |

과세연도	사업연도	과세대상 소득
2021-22	2020-21	114,000 (60,000 + 54,000)
2022-23	2021-22	94,000 (56,000 + 38,000)

(3)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

신설법인 또는 신규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첫 번째 사업연도는 사업개시일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에 시작하여 바로 직후에 도래하는 3월 31일로 종료되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법인과 신규사업자의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는 4월 1일 시작하여 3월 31일로 종료되며 항상 12개월의 기간으로 구성된다.

▶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PAN은 인도과세당국이 납세자별로 발급하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10자리 고유 번호를 말한다. PAN은 세무신고뿐 아니라 은행계좌의 개설, 부동산 거래 등 인도 내 경제활동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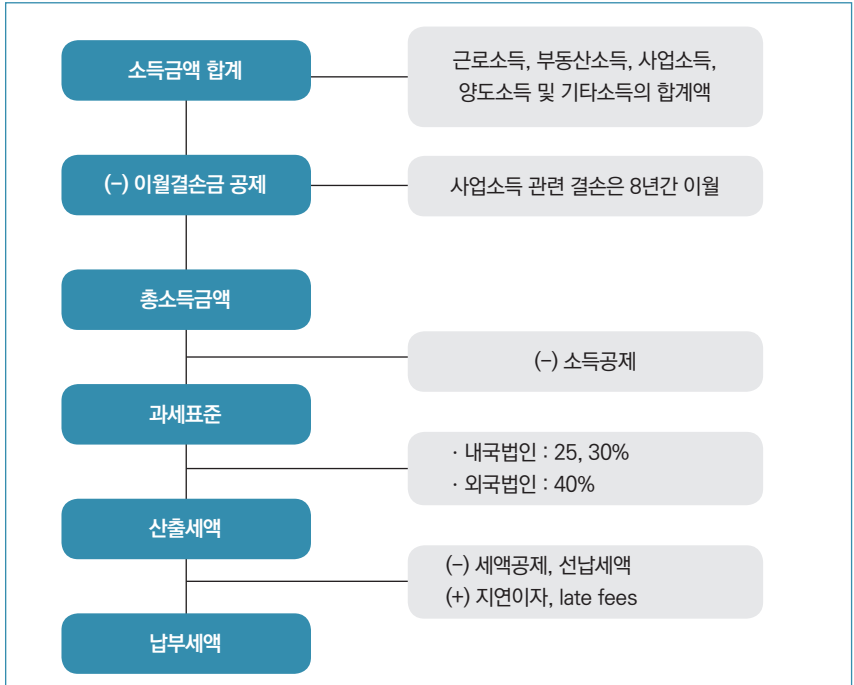
PAN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율의 TDS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이후에도 연차 소득세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PAN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PAN의 발급을 위해서는 인도국민의 경우 서식 49A와 (외국인의 경우 49AA) 신분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한다.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주소증명의 영문번역, 공증본 아니라 대리인 선임에 위한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의 영문공증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세는 각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에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소득세에는 부가금인 Surcharge와 목적세 Cess가 추가로 부과된다.

| 소득세의 계산 흐름 |



▶ 과세대상 소득

(1)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아래의 5가지로 분류한다.

- ① 근로소득 (Salaries)
- ② 부동산소득 (Income from house property)
- ③ 사업소득 (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 ④ 양도소득 (Capital gains)
- ⑤ 기타소득 (Income from other source)

상기 5가지 분류에 따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총 소득금액 (GROSS TOTAL INCOME)이라고 한다. 5가지 소득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2) 배당에 대한 과세

2003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사이에 선언된 배당에 대해서는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 배당분배세 (Dividend Distribution Tax)를 과세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 선언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분배세를 과세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의 기타소득 (income from other sources)의 일부로서 과세한다.

(3) 과세제외 소득

소득세법 제10조, 10A, 10AA, 10B, 10BA, 11, 12, 13 및 13A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다루고 있다. 소득세법 제10조는 농업소득, Hindu 비 분리 가족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등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10A, 10AA, 10B, 10BA, 11, 12, 13 및 13A는 자유무역지역 내 신규투자 및 자선재단 및 정치자금 등 특정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혜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사업소득금액 계산

제조, 판매 등의 사업활동 및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소득금액은 통상 회계장부 상 순이익에 사업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XXX
가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수익	XXX
차감: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수익,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비용	(XXX)
사업소득금액	XXX

(1)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자본적 지출,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외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원천징수 하지 않은 지출

이자비용, 로열티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 TDS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 TDS대상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TDS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지출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받은 상대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TDS를 이행하지 않은 지출액 100%를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대가를 지급받은 상대방이 거주자인 경우 지출액의 30%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TDS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연도 경과 후 원천징수를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연도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은 지출

균등부과금(Equalisation Levy)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정서비스의 대가임에도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이후 연도에 균등부과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

③ 종업원 소득세의 대납

종업원에게 비화폐성 급여(주택제공 등)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소득세 대납액은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초과지불한 대가

친인척, 임원, 조합의 파트너 및 주요 이해관계자(출자지분 또는 이익의 20%이상을 배분 받을 권리를 보유한 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상 필요, 공정가치 또는 지출에 따른 효익을 초과하여 지불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는다.

⑤ 특정지불수단에 의한 지급

Account payee cheque/draft 또는 Rule 6ABBA에서 정한 전자결제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동일인에게 1일 1만루피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비용으로 공제(1만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지급액 전액 불공제)하지 않는다. 만약 과거 소득세 계산 시 아직 결제하지 않은 부채를 비용으로 공제받은 후, 차후 연도에 동 부채를 1만 루피를 초과하는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를 수익으로 과세한다.

⑥ 법률이 정하지 않은 연금기여금 등

법률이 정하지 않은 단체, 연금 등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종업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총당금 설정액은 Fourth Schedule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가 허용되는 지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지출한 비용은 원칙 상 공제를 허용한다. 비용으로 공제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에 대한 임차료, 수선비 등

건물에 대한 임차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지방세 및 보험료는 비용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전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익연동 등 변동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임차료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공제가 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②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 관련 수선비, 보험료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에 대한 수익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와 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감가상각비

사업연도 동안 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한다. 당초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의 자산과 시운전 중인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이 아닌 자산 군 별로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후잔액법 (Written down value method)과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를 인정하고 있다. 발전 및 송전설비를 제외한 자산은 상각후잔액법을 적용한다. 반면, 발전 및 송전설비의 경우 상각후잔액법과 정액법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상각후잔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자산 군 별 상각후잔액 (기초 장부가액 + 신규자산 취득금액 - 처분대가 등에 법률이 정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산군의 상각후잔액이 '0'인 경우, 실제 자산이 존재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자산군의 상각후잔액이 '0'이상이라도 자산의 처분 등으로 실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처분으로 수령한 대가와 남아 있는 상각후잔액의 차이를 단기자산 양도차익 또는 손실로 과세한다.

- 신설합병, 분할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승계한 경우 합병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합병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승계 이전과 승계 이후의 일수로 안분하여 이를 각각 승계 받은 자와 승계한 자의 감가상각비로 배분한다.
- 신규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용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의 50%만을 비용으로 공제한다. 이러한 50% 공제 제한 규정은 신규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에만 적용한다. 만약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해에 사용을 시작하여 180일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전액을 공제한다.
-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상각율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미 공제된 감가상각비는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차기로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기한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하며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기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이월결손금공제 후에도 잔여 소득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공제 가능하다.

④ 과학연구지출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은 공제를 허용한다. 사업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지출한 과학연구지출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익적 지출뿐 아니라 자본적 지출 성격의 과학연구지출도(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제외한다) 공제대상에 포함하며 연구 목적에 아직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한 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한다(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과학연구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공제를 적용 받았으나 과학연구목적 사용 전 자산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과 처분금액 중 낮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처분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과학연구지출을 공제가능한 사업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한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지출액을 공제기한 제한 없이 이월하여 공제한다.

생명공학기업(bio-technology) 또는 주류, 담배 및 화장품 등 Eleventh schedule에 열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 기업이 정부승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과학연구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지출 제외)의 150%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한편, 정부승인 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연구 또는 연구비용을 기부한 경우에는 사업 연관성과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100% 또는 150%를 공제한다.

⑤ 창업비

인도내국법인 또는 인도거주자가 사업개시 및 확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정한도내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공제가능한 창업비는 사업타당성,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시장조사 등 사업개시를 위한 분석보고서 작성, 계약서 작성 지원 등 법률서비스, 기업법에 따른 등록비 및 지분발행과 차입 등 자금조달비용을 포함한다.

창업비는 프로젝트 비용(고정자산 등의 투자금액)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된 자본(지분투자액과 무담보 사채 및 장기차입금 포함)의 5%와 프로젝트 비용의 5%를 창업비 공제 한도로 선택할 수 있다. 창업비는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정액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⑥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자금은 실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 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첫 번째 비용공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는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에 따른다.

⑦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인 관계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비거주자인 관계기업이 보증을 제공한 차입금 포함) 이자비용은 EBITDA의 30%를 한도로 비용 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자비용은 8년간 이월하여 공제한다. 한편, 자산취득 목적 차입금 이자의 경우, 차입시점부터 자산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게 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므로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⑧ 대손금

영업과 관련된 회수불가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실제 장부에서 제거한 채권금액의 공제만을 허용하므로, 회수불가능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으로 기 과세된 일반적인 영업채권의 대손금이 공제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설비, 기계장치 등의 양도로 발생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⑨ 대손충당금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 대손충당금 비용공제 한도 |

구분	비용공제 한도
해외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Non-banking finance companies)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
공공금융기관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
인도은행 (Indian banks)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와 도시 외 지역 지점의 단기대여금의 10% 합계

▶ 결손금 통산

총 소득금액은 5가지 분류 (Head of Income)에 따른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일부 소득분류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은 이를 당해연도의 동일한 소득분류내에서 통산하거나 다른 소득과 통산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결손금통산의 적용방법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본다.

(1) 결손금 통산 순서

- ① 동일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 - 한 소득원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소득분류내의 다른 원천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 ②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 - 동일 소득분류내 결손통산 후에도 잔여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 ③ 소득구분 간 통산 후 남은 손실은 향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2) 동일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

동일한 소득분류 내 한 소득원천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다른 소득원천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우선 서로 상계하기 전에는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 투자사업 (Speculation business) 손실은 오직 다른 투자사업 원천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 소득세법 35AD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는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 다른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해서 상계할 수 있다.
- 장기자산 양도손실은 오직 다른 장기자산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다. 단기자산 양도손실은 장기자산과 단기자산 양도차익 모두와 상계할 수 있다.

-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오직 동일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상계할 수 있다.
- 복권 등의 당첨소득은 다른 원천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에 활용될 수 없다.

(3)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

동일한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 후에도 남아있는 결손금 잔액은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다른 소득구분 내 상계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결손금의 일부만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계가능한 결손금 잔액을 모두 상계하여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투자사업손실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소득세법 35AD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는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양도소득 결손금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타 소득분류 간의 통산은 최대 2 lakh 루피를 한도로 허용된다.

각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 시 어느 소득분류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선 상계할 것인지에 대한 통산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결손금을 우선 상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결손금 이월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소득내 통산과 다른 소득구분 간 통산을 통하여 결손금을 전액 상계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을 이월하여 차기 이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손금 이월 공제가 허용되는 결손금은 아래와 같다.

- ①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8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4년간 오직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 가능하다. 소득세법 35AD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 규정에 따른 특정 사업소득과 공제기한 제한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 ②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8년간 이월하여 부동산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 ③ 양도소득: 장기자산 양도손실은 8년간 이월하여 오직 장기자산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단기자산 양도손실은 단기자산과 장기자산 구분없이 8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기타소득: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4년간 이월하여 동일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합병 시 결손금 승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 전 발생한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 합병 또는 은행, 공공기관의 합병
- ② 합병당사회사들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을 3년이상 영위한 경우
- ③ 합병당사회사들이 합병일 2년전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합병일 현재 계속하여 보유
- ④ 합병신설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합병 후 5년간 유지
- ⑤ 합병신설법인이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5년간 계속하여 운영
- ⑥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간 합병의 경우 생산능력의 50% 이상의 조업도를 합병일 4년전부터 합병 후 5년간 유지 - 승계한 사업의 조업도 등 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Certificate를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의 세율

인도 소득세법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정하고 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납세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인의 세율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는 부가금(Surcharge)과 건강·교육세 (Health and Education Cess)가 추가로 과세된다. 2021-22 과세연도(Assessment Year)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소득세 세율

| 법인의 소득세율 |

구분	매출액 범위	세율
내국법인	400 Crore 이하	25%
	400 Crore 초과	30%
외국법인	단일세율	40%
유사파트너십	단일세율	30%

| Surcharge |

구분	소득범위		
	1 Crore 이하	1 Crore - 10 Crore	10 Crore 초과
내국법인	0%	7%	12%
외국법인	0%	2%	5%
유사파트너십	0%	12%	12%

③ 건강·교육세

건강·교육세는 법인의 분류, 매출 및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4% 단일세율을 부과한다.

(2) 개인소득세 세율

| 60세 이상 80세 미만 거주자의 세율 |

소득범위	소득세율	Surcharge		Cess
		양도소득	이외소득	
Rs. 3,00,000 이하	0%	0%	0%	0%
Rs. 3,00,000 - Rs. 5,00,000	5%	0%	0%	4%
Rs. 5,00,000 - Rs. 10,00,000	20%	0%	0%	4%
Rs. 10,00,000 - Rs. 50,00,000	30%	0%	0%	4%
Rs. 50,00,000 - Rs. 1,00,00,000	30%	10%	10%	4%
Rs. 1,00,00,000 - Rs. 2,00,00,000	30%	15%	15%	4%
Rs. 2,00,00,000 - Rs. 5,00,00,000	30%	15%	25%	4%
Rs. 5,00,00,000 초과	30%	15%	37%	4%

| 80세 이상 거주자의 세율 |

소득범위	소득세율	Surcharge		Cess
		양도소득	이외소득	
Rs. 5,00,000 이하	0%	0%	0%	0%
Rs. 5,00,000 - Rs. 10,00,000	20%	0%	0%	4%
Rs. 10,00,000 - Rs. 50,00,000	30%	0%	0%	4%
Rs. 50,00,000 - Rs. 1,00,00,000	30%	10%	10%	4%
Rs. 1,00,00,000 - Rs. 2,00,00,000	30%	15%	15%	4%
Rs. 2,00,00,000 - Rs. 5,00,00,000	30%	15%	25%	4%
Rs. 5,00,00,000 초과	30%	15%	37%	4%

| 60세 미만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소득범위	소득세율	Surcharge		Cess
		양도소득	이외소득	
Rs. 2,50,000 이하	0%	0%	0%	0%
Rs. 2,50,000 – Rs. 5,00,000	5%	0%	0%	4%
Rs. 5,00,000 – Rs. 10,00,000	20%	0%	0%	4%
Rs. 10,00,000 – Rs. 50,00,000	30%	0%	0%	4%
Rs. 50,00,000 – Rs. 1,00,00,000	30%	10%	10%	4%
Rs. 1,00,00,000 – Rs. 2,00,00,000	30%	15%	15%	4%
Rs. 2,00,00,000 – Rs. 5,00,00,000	30%	15%	25%	4%
Rs. 5,00,00,000 초과	30%	15%	37%	4%

➤ 최저한세

소득세법은 사회, 경제 및 조세정책 목적 상 납세자에게 여러 인센티브, 공제, 감면 등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혜택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을 창출한 다른 납세자에 비해 낮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많은 조세혜택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한세 (Minimum Alternate Tax, MAT)는 이러한 세제상 우대조치로 과세형평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상 다양한 조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 최저한세의 적용

최저한세는 회계이익 (Book profit)에 15%를 곱하여 계산된다. 소득세법 상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는 적용가능한 조세혜택에 불구하고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최저한세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세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일반적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최저한세 적용 예시 |

일반적인 납부세액과 최저한세 중 높은 최저한세를 적용	구분	일반적인 납부세액	최저한세
	당기순이익	100	100
납부세액: $\text{Max}[A, B] = 21$	세무조정사항	(50)	-

일반적인 납부세액과 최저한세 중 높은 최저한세를 적용	구분	일반적인 납부세액	최저한세
A. 일반적인 납부세액: 15	MAT목적 조정사항	-	40
B. 최저한세: 21	과세표준	50	140
	세율	30%	15%
	소득세	15	21

(2) 회계이익의 계산

최저한세 계산 목적 상 회계이익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세법이 정한 조정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주요 조정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산조정⁹³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 준비금 (Reserve), 확정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비해 마련한 준비금, 자회사의 손실에 대비한 총당부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배당금, 소득세법상 면세소득과 관련된 비용, 자산의 가치 감소에 대비한 총당금

② 차감조정⁹⁵

준비금의 인출, 유보금, 소득세법 상 면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감가상각 마상각 잔액, 발전·송전 회사의 인수에 따른 이익, 인프라 Facility를 개발·유지·운영하는 기업의 인수에 따른 이익, 부실기업의 이익, 소득세법 제80HHC조, 소득세법 제80조에 규정된 공제

▶ 신설 제조법인 등의 특례세율 적용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설 제조업법인 및 모든 내국법인은 기본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한번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일부 소득공제 등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특례세율

① 적용요건

상장여부, 주주의 구성 및 연 매출액 규모 등에 제한 없이 모든 내국법인은 동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서식(Form No. 10-IC)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3) 주인도 대사관, 2016, 인도 세법 이해

② 적용세율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한 법인의 소득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부가금 10%와 건강·교육세 4% 고려 시 유효세율 25.17%).

③ 고려사항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법인은 신규 취득 설비 등의 추가 감가상각비 공제(제32(1)조), 신규투자지출 비용 공제(제32AD조) 및 기타 소득세법 상 일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특례세율 선택 시 적용이 배제되는 상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이월된 결손금과 미상각잔액은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이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법인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신설 제조법인

①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설립 후 첫 번째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15%의 특례세율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컴퓨터소프트웨어, 대리석 불려의 제작 등 일부 품목의 제조는 제외한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되어 2023년 3월 31일 이전 생산을 개시하여야 함
- 과거 호텔 및 컨벤션 센터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이용하지 않아야 함
- 중고 설비 및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② 적용세율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한 신설 제조법인의 소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부가금 10%와 건강·교육세 4% 고려 시 유효세율 17.16%).

③ 고려사항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신설 제조법인은 신규 취득 설비 등 추가 감가상각비 공제(제32(1)조), 신규투자지출 비용 공제(제32AD조) 및 기타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특례세율 선택 시 적용이 배제되는 상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이월된 결손금과 미상각잔액은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이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신설 제조법인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신설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유사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초과이윤을 신설 제조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해당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 할 수 있다.

▶ 소득세의 신고

(1) 소득세 신고 대상자

개인, 조합 및 기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기업과 유사파트너십의 경우 소득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2) 소득세 신고서식

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원천구분 등에 따른 다음의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 신고서식 |

신고서식	납세자 유형
ITR-1	근로소득, 연금 및 이외 기타의 소득이 있는 개인
ITR-2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 및 HUF
ITR-3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및 HUF
ITR-4	소득세법 44AD조 등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납세자
ITR-5	ITR-7 제출대상을 제외한 유사파트너십, 조합 및 이외 기타납세의무자
ITR-6	자선 또는 종교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을 적용하는 납세자
ITR-7	소득세법 139(4A)조 등에 따른 재단 등
ITR-V	전자서명 없이 ITR-1 내지 ITR-5서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3) 신고기한

| 소득세 신고기한 |

구분	신고기한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받는 기업 (Form No. 3CEB 제출대상)	11월 30일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기업	10월 31일 ⁹⁴⁾
기업을 제외한 개인 등: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0월 31일 ⁹⁴⁾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Firm의 파트너	10월 31일
이외의 경우	7월 31일

94) AY2020-21의 신고기한은 11월 30일로 연장되었다.

(4)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기한내 소득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신고불성실 시 가산세 등

- 연차신고서를 지연제출 한 경우 5천 루피의 late fee가 부과된다. 다만, 과세소득금액이 5 lakh 루피 이하인 경우 late fee는 1천 루피를 초과할 수 없다⁹⁵.
- 지연납부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월 1%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 과소신고의 경우 세액의 50%(세금회피 목적의 과소신고의 경우 2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6) 수정신고

제출된 신고서에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과세연도 (Assessment year)종료일 또는 부과절차가 완성된 날 중 이른 날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AY 2020-21의 경우 수정신고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부과절차가 2021년 1월 15일에 완성된 경우 수정신고는 2021년 1월 15일까지 제출을 허용한다.

▶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의무자

연 소득에 대해 1만 루피 이상의 소득세 납부(TDS 및 TCS공제 후 세액)를 예상하는 납세의무자는 분기별로 중간예납을 할 의무가 있다(60세 이상인 개인은 제외).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중간예납 기한

중간예납의무자는 매 분기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각 분기말 현재 예상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추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분기별로 추정납부세액 중 각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각 분기별 중간예납 기한과 납부세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중간예납 기한 및 중간예납 비율 |

분기	중간예납 기한	일반납세자	간이과세자
1분기	6월 15일	15%	0%
2분기	9월 15일	45%	0%

95) 과세연도 12월말 이후 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추가 late fee를 부과하던 규정은 Finance Act 2021 공표 시 삭제되었다.

분기	중간예납 기한	일반납세자	간이과세자
3분기	12월 15일	75%	0%
4분기	3월 15일	100%	100%

(3) 과소납부 시 지연이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최종 결정된 소득세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득세 확정일까지 월 1%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 세무감사 (Tax Audit)

연 매출액이 1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세무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0 lakh 루피). 연간 거래액 중 현금거래의 비중이 5%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무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세무감사보고서는 과세연도 10월말까지 제출되어야 한다(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9월말까지 제출). 세무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액의 0.5%와 1.5 lakh 루피 중 낮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TDS

(1) TDS제도 개요

원천공제 제도(Tax Deduction at Source)는 소득세법이 정한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공제의무자가 TDS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TDS뿐 아니라 관련 가산세를 원천공제의무자가 부담한다. 또한, 관련 지급액은 원천공제의무자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TDS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원천공제 된 세금을 제외한 순액만을 지급받게 되지만(1 Crore 루피 초과 예금인출액의 TDS 등 제외) 징수된 세금은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동 세액은 이후 지급받은 자의 사업연도 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2) TDS대상 지급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증권 등의 이자, 임차료, 수수료 및 중개료, 복권 등의 당첨소득, 계약에 따른 대가, 전문·기술용역에 대한 대가 및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지불 등이 TDS 적용을 받는다. TDS를 적용 받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TDS 대상 지급 |

구분	적용대상 및 세율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을 지급하는 경우 세율 -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율 - 7.5%
증권 이외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에게 유가증권 이외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단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의 경우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의무를 부담 세율 - 7.5%
계약에 따른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에게 광고/방송/상품 또는 여객운송, 케이터링, 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 당 지급액이 3만 루피 이하 또는 회계연도 중 지급액의 합계가 10만 루피 이하인 경우 TDS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 개인, HUF에게 지급 시 3.75%, 이외의 경우 1.5%
수수료 및 중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거래의 중개 또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대가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단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인 경우에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의무를 부담 세율 - 3.75%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단, 임대료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의 경우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의무를 부담 세율 - 공장 및 기계의 임대 1.5%, 토지 및 건물의 경우 7.5%
전문적·기술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에게 로열티 및 전문적·기술적서비스(법률, 의료, 엔지니어링, 회계, 경영 및 기술자문) 및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임원에게 회의비, 기타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경우 제외) 세율 - 기술적서비스의 경우 2%, 이외의 경우 10%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 및 인도내에서 과세대상인 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율 - 소득의 구분 및 금액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가능)
50 lakh 루피 초과 재화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자가 5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율 - 0.1% (PAN정보가 없는 경우 5%)

지급을 받는 자는 원천공제 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PAN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PAN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TDS일반세율과 20%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장기 Bond이자 등 일부 제외).

(3) TDS Certificate

원천공제 의무자는 TDS신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을 받는 자에게 TDS Certificate (원천징수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기한 내 Certificate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1일 당 100루피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4) TDS 신고 및 납부기한

원천공제의무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다.

| TDS 신고 및 납부기한 |

구분	신고 및 납부 기한	미이행 가산세 등
월별 TDS납부	지급을 한 달의 익월 7일 (3월 지급분의 경우 익월 30일)	1) 징수 및 납부불성실 이자: 미이행기간 매월 1%(1.5%)의 이자부과 2) 불공제 비용: 지급을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지급액의 30%를 공제대상 비용에서 제외(비거주자의 경우 100%) 3) 가산세: 징수하지 않은 TDS와 동액의 가산세 부과 가능
분기별 TDS신고	분기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	1) 지연신고: 일당 200루피의 late fee부과(TDS세액 한도) 2) 가산세: 1만루피 가산세 부과 가능(최대 10만 루피)

▶ TCS

TCS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가 판매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TCS는 구매자의 소득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 TCS 적용대상

① 주류, 목재, 광물 및 폐기물 등

주류, 목재, 광물 및 폐기물 등은 품목별로 판매액의 1% ~ 5% TCS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정부기관 또는 연간 매출액이 1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사업자(법인이 아닌 경우 50 lakhs)는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시기에 TCS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구매자가 해당 품목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해당 재화를 제조, 가공 및

전력생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TCS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차장, 도로 및 채굴권 등 대여

주차장, 도로 및 채굴권 등을 임대하는 경우 2% TCS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임차인이 공공기관 (Public sector)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자동차 판매

대당 가격이 1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금액의 1%의 TCS를 구매자(구매자가 정부기관인 경우 제외)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TCS를 적용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딜러 및 유통업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TCS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LRS제도를 통한 해외송금 및 해외여행 패키지

LRS (Liberalised Remittance Scheme, LRS)제도를 통해 연간 7 lakh 루피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7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의 5%(Non PAN/Aadhaar의 경우 10%, 교육비 목적 금융기관 대출관련 송금의 경우 0.5%)의 TCS를 징수한다.

⑤ 50 lakh 루피 초과 상품 판매

2020년 10월 1일부터 직전 과세연도(Previous Year 2019-2020)의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납세자가 동일인에게 연간 5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서비스 매출은 제외한다) 판매액의 0.075%(2021년 4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는 0.1%)의 TCS를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

TCS징수기준인 50 lakh 루피는 GST요소까지 포함한 판매대가를 말하며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 자산 판매금액을 포함한다. 한편 상품의 수출과 다른 규정에 따라 TDS와 TCS가 적용된 거래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TCS납부 기한

판매자는 TCS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한 TCS를 납부해야 한다. TCS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TCS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 1%의 지연이자 부과된다.

(3) TCS Certificate 및 신고기한

TCS를 징수한 자는 매 분기 TCS신고와 Certificate을 발행하여야 한다. 분기별 TCS신고와 Certificate 발행기한은 다음과 같다.

| TCS 신고 및 Certificate발행 기한 |

분기	신고기한	Certificate 발행기한
1분기 - 6월 30일	7월 15일	7월 30일
2분기 - 9월 30일	10월 15일	10월 30일
3분기 - 12월 31일	1월 15일	1월 30일
4분기 - 3월 31일	5월 15일	5월 30일

1.3 GST

▶ GST개요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한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GST는 인도의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GST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 거래 징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GST는 주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간접세를 하나로 단일화한 간접세 제도로써 2017년 7월 도입되었다. GST도입 이전 인도의 간접세 체계하에서는 재화의 공급거래에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서비스의 공급에는 중앙정부가 주로 간접세를 부과하여 왔다. 주 별로 상이한 간접세 제도는 불공제되는 다수의 간접세 발생과 판매 이외 거래단계에 거래세 부과 등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야기하여 인도 내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주 별로 상이하던 여러 간접세 항목이 하나의 GST제도로 수렴됨에 따라 인도가 진정한 단일 경제시장으로 변모하여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GST로 흡수된 간접세 항목 |

중앙정부 부과 세목	주 정부 부과 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ntral excise duty (*) • Duties of excise • Additional duties of excise • Additional duties of customs • Additional duties of customs • 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 • Service tax • Central surcharges and c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e VAT/Sales tax (*) • Luxury tax • Octroi and entry tax • Entertainment and amusement tax • Taxes on advertisement • Purchase tax • Taxes on lotteries, betting and gambling • State surcharges

(*) 주류, 석유제품 등은 아직 GST제도로 수렴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간접세인 Excise duty 및 VAT의 적용을 받는다.

▶ GST 과세대상

GST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Supply of goods and services)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공급은 판매, 교환, 사용권리의 대여 등 사업상 대가의 수령을 수반하는 모든 형태의 공급을 포함한다. 무상공급과 공급자의 사업과 무관한 공급은 원칙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이 없더라도 과세대상 공급으로 간주한다.

-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사업용 자산의 처분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직원에게 제공한 연간 5만 루피 이하의 무상공급은 제외)
- 복수의 GSTIN을 보유한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GSTIN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 위탁판매, 구매대행 거래에서 본인과 대리인간 재화의 공급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서비스의 수입
- 사업을 폐지한 경우 보유중인 사업용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 GST 등록

GST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식별과 GST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첫 단계이다. GST등록을 통해 납세의무자는 고유식별번호(GSTIN)를 발급받고 중앙정부와 주 정부를 대신하여 GST의 거래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이전 단계에서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GST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며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자는 GST의 납세의무자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GST등록은 공급활동을 수행하는 각 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실체가 여러 주에 걸쳐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점이 소재한 주별로 GST등록이 요구된다.

(1) GST등록의무 기준 금액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GST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2백만 루피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인도 북동부의 특정 주(Special category states)의 경우 GST등록 기준점으로 2백만 루피보다 낮은 1백만 루피를 적용한다. 헌법 279A조는 이러한 특정 주를 정하고 있는데 Arunachal Pradesh, Assam, Jammu and Kashmir,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Sikkim, Tripura, Himachal Pradesh and Uttarakhand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상기 특정 주 중 일부가 연간 2백만 루피의 등록기준점 적용을 선택하면서 관련 GST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아래의 주가 연간 매출액이 1백만 루피에 미달하는 경우 GST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GST의무등록 기준 |

연간 매출액	구분
1백만 루피 미만 (약 16백만원)	Manipur, Mizoram, Nagaland and Tripura
2백만 루피 미만 (약 32백만원)	상기 이외 모든 주

연간 매출액이 2백만 루피(또는 1백만 루피)에 미달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등록신청으로 인정된다. 한번 GST등록을 한 이후에는 연 매출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GST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재화만을 공급하는 자의 GST 등록

재화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4백만 루피에 미달하는 경우, GST법 상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의 주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 대리납부의무자 등 Section 24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하는 자.
- 아이스크림, Pan masala 및 담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 특정 주내(Arunachal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Puducherry, Sikkim, Telangana, Tripura, Uttarakhand)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자발적으로 GST등록을 한 자

(3) GST의무등록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연 매출액이 GST등록의무 기준(20 lakh 루피/10 lakh 루피)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요구된다.

- 재화의 주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서비스, Job work 및 수공예품의 주간공급 제외)
- 임시과세사업자 (Casual taxable person)
- 대리납부의무자

- 전자상거래 운영자(Electronic commerce operators)
- 비거주과세자(Non-resident taxable persons)
- GST 51조에 따른 TSD의무자
- 과세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공급하는 사업자
- Input service distributor
- 전자상거래 운영자를 통해 공급하는 사업자
- GST 52조에 따라 TCS의무를 부담하는 전자상거래 운영자
- 인도 국외에서 온라인정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GST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GST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GST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와 서비스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 자신 또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을 받는 자가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화 및 서비스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 GST등록 신청기한 및 필요정보

(1) 일반적인 경우

GST등록신청서 (Form GST REG-01)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여러 주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주마다 별도의 등록신청이 필요하다. GST등록에는 아래의 정보와 문서가 필요하다.

- PAN,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승인권자의 Aadhaar number, 서명권자의 사진, 법인등록증, 사업장 주소지 증명 - 임대차계약서, 각종 고지서 등, 통장사본, 취소 수표 등 은행계좌 증명서류, 이사회의사록(서명권자 지정)

(2) 비거주과세자의 경우

비거주과세자(NRTP, Non-resident taxable person)란 인도내 고정된 사업장 없이 비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비거주과세자의 GST등록신청서는 인도 내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비거주과세자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Form GST REG-09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 등이 필요하다.

① 서명권자 지정

비거주과세자의 등록신청서는 유효한 PAN을 보유한 인도거주자의 서명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전 인도 휴대전화번호와 PAN을 보유한 인도거주자 한 명을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로 지정해야 한다.

② GST등록 유효기간

비거주과세자의 GST등록은 90일간 유효하다. 비거주과세자는 신청을 통해 GST유효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내 사업활동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NRPT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③ 선납세액 납부

비거주과세자는 등록신청서 제출 전 선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납세금은 등록유효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납부한 선납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초과할 경우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매입세액 공제

GST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닌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포함된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이후 단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면 세금 위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누적과세효과가 나타난다. 각 공급단계의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ITC)를 통해 이전 거래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GST를 납부하게 된다.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GST법 상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 ① 세금계산서 수취 - 세금계산서 (Tax Invoice), Debit note, 계산서 (Bill of entry) 등 적격 증빙을 갖춘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수령 - 매입세액은 매입한 재화의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수취한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선금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및 서비스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다.
- ③ 신고서 제출 -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서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기재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매입대금 지급 - 공급받은 자는 매입대금과 GST를 인보이스 발행일자로부터 180일 이내 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동 기한내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이자는 공급받은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된다.
- ⑤ 거래상대방의 매출액 신고 - 공급받은 자가 공제를 신청한 매입세액 중 공급자가 신고한 invoice 내역과 일치하는 항목만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는 공급받은 자의 GSTR-2A서식으로 자동적으로 복사된다. 공급자의 신고내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공급받은 자는 본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신고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한다.

(2) 불공제매입세액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13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및 여객의 운송 등 과세목적 차량 등의 경우 제외)
- 식품, 음료, 미용목적의 치료, 헬스케어 서비스, 차량 등의 리스(사업자가 동일한 품목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제 허용)
- 클럽, 피트니스센터 등의 회원권
-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가 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리노베이션, 개량, 수선을 위한 건설도급계약과 관련된 매입세액. 단, 건설도급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의 경우 공제를 허용한다.
-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제외한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 비거주과세자의 매입세액. 단, 비거주과세자가 수입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한다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 개인목적 사용, 고객에 대한 선물, 무상샘플

(3) 매입세액공제 적용 순서

인도의 GST는 하나의 거래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절반씩 세금을 징수하는 Dual GST제도로 운영된다. 주 내 공급에는 CGST와 SGST가 각각 세율의 50%씩 징수되며, 주 간 공급에는 IGST와 부과된다. 연방정부와 개별 주 정부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CGST와 SGST 간 공제 및 각 주의 SGST 상호 간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IGST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CGT 및 SGST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매입세액의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공제 적용 순서 |⁹⁶

매입세액	공제순서	비고
IGST	IGST → CGST 또는 SGST (납세자 선택 가능)	납세자는 매입IGST를 매출CGST와 SGST 각각에 일부 금액을 나누어 공제가능
CGST	CGST → IGST	매입 CGST와 SGST는 매입IGST를 전액 활용 후에만 공제가능
SGST	SGST → IGST	

(4) 매입세액공제 적용 기한

다음의 두 날 중 이른 날이 지난 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해당 인보이스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후 도래하는 9월의 GST신고기한
- 해당 매입세액이 귀속되어야 하는 연차 GST신고기한

▶ GST 세율

소금, 우유, 가공하지 않은 곡물 및 채소 등은 GST가 면세된다. 수출 또는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과세한다. GST면세항목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영세율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기 GST면세와 영세율 적용대상 이외에는 품목별로 다양한 세율이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 5%, 12%, 18%, 28% 세율을 적용 받으며 설탕, 오일, 대중교통서비스 등 생필품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에어컨, 담배 등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 다이어 몬드, 귀금속 등 특수품목은 0.25% 또는 3%의 세율이 지정되어 있다.

▶ GST 신고

GST신고는 전자신고로 이루어진다. 공급자가 업로드한 인보이스 정보는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로 연계되어 상호대사를 통해 불일치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GST법상 납세의무자는 월별, 분기 및 연단위로 아래의 서식을 사용하여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V.S. Datey, 2021, TAXMANN's GST Ready Reckoner

(1) 신고서식 및 신고기한

주요 GST신고서식 및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 주요 GST신고서식 |

신고서식	신고주기	신고사항	신고대상자	신고기한
GSTR-1	매월/ 분기(*1)	매출내역 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익월 11일(분기별 신고자: 분기종료 후 13일 이내)
GSTR-3B	매월/ 분기(*1)	종합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익월 20일(분기별 신고자: 분기종료 후 22일 이내(*2))
GSTR-4	매년(*3)	연차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4월말
GST CMP-08	매 분기	분기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분기종료 후 18일 이내
GSTR-5	과세기간 종료 시	비거주과세자 종합신고	비거주과세자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등록 유효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중 이른 날
GSTR-6	매월	ISD 월별 신고	ISD	익월 13일
GSTR-7	매월	TDS신고	TDS의무자	익월 10일
GSTR-8	매월	전자상거래 운영자 월 단위 신고	전자상거래 운영자	익월 10일
GSTR-9	매년	연차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12월 말일까지(*4)
GSTR-9A	매년	연차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4월 말일

(*1) 직전 연도 매출액 5천만 루피 이하인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2) Himachal Pradesh, Punjab, Uttarakhand, Haryana, Rajasthan, Uttar Pradesh, Bihar, Sikkim, Arunachal Pradesh, Nagaland, Manipur, Mizoram, Tripura, Meghalaya, Assam, West Bengal, Jharkhand, Odisha, the Union Territories of Jammu and Kashmir, Ladakh, Chandigarh, Delhi의 경우 분기 종료 후 24일⁹⁷

(*3) 분기단위로 신고하던 GSTR-04은 2019년 이후 연 단위 신고로 변경되었다. 기존 간이과세자의 연차신고서 GSTR-9A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연 매출 2천만 루피 초과 시 요구되던 Chartered Accountant의 GST 감사는 2020-21세법개정 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GSTR-9서식과 신고기한이 변경 공지될 예정이다.

97) Notification No.82/2020-Central Tax

▶ 지연신고 시 가산금 등

(1) 지연신고가산금 (Late fee)

① 연차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연차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 매출액의 0.25%를 한도로 지연제출일 당 200루피의 지연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연차신고 이외 신고서의 지연제출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연차신고서 이외의 신고서(GSTR-1, GSTR-3B, GSTR-4, GSTR-5 및 GSTR-6)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만 루피를 한도로 지연신고일 당 50루피의 지연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실적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신고일 당 20루피의 지연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⁹⁸.

(2) 납부지연이자(Interest)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GST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미달납부세액 등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일수와 이자율 18%를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25% 이자율을 적용한다.

▶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 (Composition Scheme)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가 간소화된 납세의무 이행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간이과세 적용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GST로 납부하게 된다.

98) Notification No. 4 to 7/2018 – Central Tax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직전 회계연도의 연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

기준금액	구분
연 매출 75 lakh 루피	Arunachal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Sikkim, Tripura, Uttarakhand
연 매출 150 lakh 루피	상기 특정 주를 제외한 모든 주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아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팬 맛살라, 탄산수 및 담배제조업자
- 음식점을 제외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 중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5 lakh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임시과세자 및 비거주과세자
- 주간 공급(inter-state outward supply)을 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3) 간이과세자의 GST납부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는 메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매출액에 다음의 업종별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업종별 간이과세 세율 |

구분	적용세율
제조업 (아이스크림, 담배 등 간이과세 적용 배제품목 제외)	1% (CGST 0.5%+SGST 0.5%)
음식점업	5% (CGST 2.5%+SGST 2.5%)
이외 (서비스매출이 총 매출액의 10% 또는 5 lakh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포함)	1% (CGST 0.5%+SGST 0.5%)

(4) Alternative 간이과세

일반적인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소규모 서비스공급업자(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 포함)가 적용할 수 있는 Alternative 간이과세제도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50 lakh 루피 이하인 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 GST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 주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팬 맛살라, 탄산수 및 담배제조업자
- 임시과세자 및 비거주과세자

Alternative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매출액에 6%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을 납부한다. 다만, 50 lakh 루피까지의 매출액에는 6%세율이 적용되지 만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품목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대리납부제도

일반적으로 GST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GST법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GST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대리납부 (Reverse Charge)라고 한다.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연 매출액 규모(20 lakh 루피)와 관계없이 등록이 요구된다.

① 대리납부 의무 대상 재화의 공급

| 대리납부 적용 대상 재화의 공급 |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캐슈넛 -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것	농부	등록납세자
담배 잎, 면화	농부	등록납세자
실크원사	실크원사를 제작하는 자	등록납세자
복권판매	주정부, 연방직할지 또는 지방정부	복권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인
중고차, 압류한 물품 및 폐품	중앙정부, 주정부, 연방직할지 및 지방정부	등록납세자
우선부문 대출 증명 (Priority sector lending certificates)	등록납세자	등록납세자

② 대리납부 대상 서비스

| 대리납부 적용 대상 서비스의 공급 |

대상상품	공급자	공급받는 자
운송업자가 (Goods Transport agency) 제공하는 서비스	Goods Transport Agency	Factories act에 등록된 공장, 모든 등록납세자 및 임시과세자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개업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록납세자
중재재판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재재판소	등록납세자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게 제공하는 스폰서십 서비스 (스포츠클럽, 문화행사 등에 후원회사 로고 등의 노출)	스폰서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	회사 및 파트너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단, 다음은 제외한다 1) 부동산 대여 2) 우편, 택배, 보험서비스 3) 항공기, 선박, 공항, 항만서비스 및 여객운송서비스	중앙정부, 주정부, 연방직할지 및 지방정부	등록납세자
부동산 개발 권리, 30년 이상 장기리스	모든 사람	부동산업자 (Promoter)
회사의 이사가 회사 및 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의 이사 등	과세지역에 소재한 회사
보험판매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판매인	과세지역에 소재한 보험회사
채권추심대리인의 서비스	추심대리인(Recovery agent)	은행, 금융기관 및 NBFC 등
작곡가, 사진가, 작가 및 예술가 등이 저작권 제공	작곡가, 사진가 예술가 등	출판사, 음원회사 등
은행감독기구 (Overseeing Committee)가 RBI에 제공한 서비스	The member of overseeing committee	Reserve Bank of India
금융상품 판매대리인이 제공한 서비스	개인사업자인 금융상품 판매대리인	과세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NBFC
Business facilitator가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	Business facilitator	과세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보안서비스	법인을 제외한 보안서비스제공자	등록납세자

대상상품	공급자	공급받는 자
여객운송용 차량 렌트 서비스	법인을 제외한 렌트 사업자	과세지역내 법인
유가증권 대차거래	대여자	차입자
과세지역 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과세지역 외 사업자	과세지역 내 사업자

▶ Input Service Distributor

Input Service Distributor (ISD)는 동일한 PAN을 보유한 납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매입세액을 이전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여러 주에 걸쳐 GSTIN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특정 지점이 여러 사업장을 대신하여 통합구매를 하는 경우 ISD를 이용하여 해당 매입재화 등이 실제 소비되는 다른 사업장으로 매입세액을 이전할 수 있다.

ISD로 사용하려는 사업장이 이미 GSTIN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GSTIN과 별도로 ISD등록이 필요하다.

(1) 매입세액 이전 방법

ISD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이전한다. 매입세액의 이전은 해당 매입이 귀속되는 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되는 매입세액이 여러 지점에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2) ISD신고

ISD는 매월 ISD의 매입세액공제액과 이전한 매입세액을 GSTR-6에 기재하여 익월 1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지연신고의 경우 일당 50루피의 late fee가 부과된다.



2. 회계

2.1 회계법령

▶ 재무제표 작성 의무

모든 회사는 매 회계년도 말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회사법 Schedule III가 요구하는 양식과 공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 등을 포함한다.

▶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

회사는 회계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을 등록된 회사의 공식 주소지에 최소 8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 이사회의 결정으로 등록 주소지 이외 다른 장소를 회계장부 등의 보관장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기업등록국(ROC)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지점의 거래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해당 지점에 보관할 수 있으나 각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계기록의 요약정보를 정기적(3개월 이내 주기)으로 등록 주소지에 전송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Financial year)

재무보고 목적의 회계연도는 4월 1일 시작하여 3월 31일로 종료하는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회사의 첫 번째 회계연도는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3월 31일에 종료되므로 신설법인의 첫 번째 회계연도는 12개월 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자회사로서 연결 목적 상 모회사의 보고기간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Financial year)와 다른 결산기간의 적용을 허용한다. 다만, 재무보고 목적 상 Financial year와 다른 결산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 목적의 소득금액은 4월 1일 ~ 3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지정한 대표서명권자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2인이 이사회를 대신하여 재무제표에 서명을 한다. 승인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21일 이전 모든 주주(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 포함)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기업등록국 재무제표 신고

주주총회 후 30일 이내 재무제표를 기업등록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법정 기한내(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회사 설립 후 첫 주주총회의 경우 9개월 이내)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재무제표를 신고한다.

▶ 증권거래위원회 재무제표 제출

상장사는 매 분기 및 연차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⁹⁹⁾, 분기 보고의 경우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 공시 의무

상장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에게는 재무제표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 외부감사 대상

회사법 (Companies Act, 2013)은 회사의 규모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별도의 유한책임파트너십법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을 적용받는 유한책임파트너십은 연 매출액이 40 lakh 루피를 초과하거나 납입자본이 25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5년 임기의 감사인을 선임한다. 한번 선임된 감사인의 임기는 5년이지만 매년 감사인 유지에 대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유임이 부결된 경우 이사회가 다른 감사인을 선임한다.

신규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 30일 이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첫 번째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30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90일 이내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은 회계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지명된 파트너의 의결로 감사인을 선임한다.

99) 2020-21 회계연도의 경우 Covid 19 Pandemic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 Circular No. SEBI/HO/DDHS/DDHS_Div1/P/CIR/2021/557

▶ 감사인 의무교체 규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10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계속하여 선임한 경우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인인 감사인의 경우 5년).

- 상장회사
- 자본금이 10 Crore 루피 이상인 비상장 공개주식회사
- 자본금이 20 Crore 루피 이상인 비공개주식회사
- 50 Crore 루피 이상의 차입금을 보유한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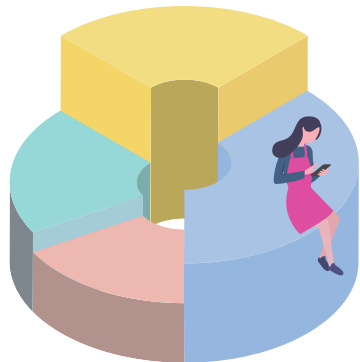
상기 의무교체 기간 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5년간 감사인으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회사법은 감사인에게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여부뿐 아니라 회사가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또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인기업
- 소기업
- 최근 감사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50 Crore 루피 미만인 비공개주식회사
- 차입금이 25 Crore 루피 이하인 비공개주식회사



2.2 회계기준

▶ 인도 회계기준의 구성

인도회계사회 (ICAI)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기준 수립을 위한 기구인 회계기준위원회 (Accounting Standard Board)를 설치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인도에는 현재 다음의 두 개의 회계기준이 존재한다.

- Accounting Standards (iGAAP): Companies (Accounting Standards) Rules, 2006에 의해 공표되었으며 Ind A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동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India Accounting Standards (Ind AS): IFRS와 합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회계기준으로 현재까지 41개의 기준서가 공표되어 있다. 도입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 회계기준 준수 의무

회사법은 모든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회계기준의 준수 의무를 129(1)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에는 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이사회 책임임을 인정하는 서한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회계기준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준거기준이 된다. 감사결과 회계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가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인도의 IFRS적용

인도는 당초 G20에서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관련 법률과 기준서 제정 지연 등으로 2016년부터 IFRS에 근거하여 제정된 Ind AS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IFRS의 도입 형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를 그대로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하는 전면도입(Full adoption)과 자국의 회계기준을 IFRS와 합치되도록 재·개정하는 방법(Converg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의 상장법인 등이 적용하고 있는 Ind AS는 IFRS를 기초로 ICAI가 제정한 기준서이므로 인도의 IFRS도입 방법은 Convergence에 해당한다.

India		
Extent of IFRS application	Status	Additional Information
IFRS Standards are required for domestic public companies		Indian Accounting Standards (Ind AS) are based on and substantially converged with IFRS Standards as issued by the Board. India has not adopted IFRS Standards for reporting by domestic companies and has not yet formally committed to adopting IFRS Standards.
IFRS Standards are permitted but not required for domestic public companies		
IFRS Standards are required or permitted for listings by foreign companies		No.
The IFRS for SMEs Standard is required or permitted		No.
The IFRS for SMEs Standard is under consideration		No.

| Ind AS 도입 로드맵 |

적용시기	적용대상
2015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적용을 선택한 기업
2016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인 기업 • 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
2017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 및 인도 국내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예정된 회사(SME상장회사 제외) • 순자산 25억 루피 이상인 비상장 회사 • 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
2018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인 비은행금융기관(NBFCs) - 상장 및 비상장 NBFC포함 • NBFCs 이외의 금융기관¹⁰¹⁾ • 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

100) IFRS Home, Who uses IFRS Standards? - ifrs.org

101) RBI와 IRDAI는 은행과 보험기관의 Ind AS 의무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notice를 공지하였다. 이로 인해 동 기관의 Ind AS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3. 노무

3.1 인도 노동법제 개편

▶ 노동법¹⁰²

인도의 노동입법은 사회경제적 정의를 지향하며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관계는 노동과 경영진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높은 실업률과 싸우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법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관련 법률의 단순화, 강화 및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여, 근무 시간, 징계 규정 및 고충처리 해소 절차, 해고 통지 기간, 휴가, 보험 제공, 연금 및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법 위반은 엄격히 관리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노동법에 따른 형사소송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직원들은 관련 노동법하에서 최소한의 통지기간과 근무 조건을 가질 권리가 있고, 법률은 직원의 부당한 해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데, 산업분쟁법은 정리해고의 경우 특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용주의 해고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필요를 규정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로 대규모 산업 및 노동 관련 법률은 이러한 지침의 이행을 지향해 왔다.

공장법, 근로자 국가보험법, 산업분쟁법 등은 공정하고 인간적인 근무 조건, 건강 보호 및 업무 중 지속되는 상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저임금법 및 임금체불법은 임금체불을 규제한다. 보너스법은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인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점은 해당 직원이 근로자(workmen)인지 아닌지(non-workman) 여부이다. 인도 산업분쟁법 제2(s)조는 근로자를 “육체, 비숙련, 숙련, 기술, 운영, 사무 또는 감독사무”를 위해 고용된 자로서, (1) 경영, 관리직; (2) 월급여 10,000

102)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루피 이상의 감독직; (3) 경영자 또는 위임자로서의 경영행위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³ 다만, 법률 규정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고용계약서 및 인사매뉴얼에 기재된 상세 업무범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원이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인도 산업분쟁법 등 법률이 업무변경, 해고 절차, 노동분쟁 진정 및 제소절차 등 사안에서 근로자의 보호범위를 따로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직원(non-workman)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각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이 적용되며, 고용계약서 및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인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해야 할 요소로서, 해당 사업장이 공장, 농장, 광산 인지, 일반 상점 및 상업시설인지 여부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근로자 해고절차 등 적용규정이 달라지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021년 인도 노동법제 개편

인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오던 노동법제 개편과 관련하여 신법이 모두 2020년 하반기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일개 법률 조항이 개정된 수준이 아니라, 현행 29개의 연방 노동관련 법률이 4개로 통합되어 체계 자체가 크게 변화하였다.

인도 법률체계를 보면 연방법으로 이해되는 중앙법률과 각 주의 주법이 있다. 헌법에 따라, 중앙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주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중앙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노동분야가 바로 중앙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무사건 가지고도 검토해야 할 법률 수가 매우 많고 복잡했다.

103) Industrial Dispute Act, 1947. Section 2 [(s) "workman" means any person (including an apprentice) employed in any industry to do any manual, unskilled, skilled, technical, operational, clerical or supervisory work for hire or reward, whether the terms of employment be express or implied, and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n industrial dispute, includes any such person who has been dismissed, discharged or retrenched in connection with, or as a consequence of, that dispute, or whose dismissal, discharge or retrenchment has led to that dispute, but does not include any such person—

(i) who is subject to the Air Force Act, 1950 (45 of 1950), or the Army Act, 1950 (46 of 1950), or the Navy Act, 1957 (62 of 1957); or (ii) who is employed in the police service or as an officer or other employee of a prison; or

(iii) who is employed mainly in a managerial or administrative capacity; or (iv) who, being employed in a supervisory capacity, draws wages exceeding 59[ten thousand rupees] per mensem or exercises, either by the nature of the duties attached to the office or by reason of the powers vested in him, functions mainly of a managerial nature.]

이 중에, 이번에 중앙노동법 29개가 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 등 4개의 법률로 통합된 것이다.

그간 인도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이러한 노동법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노사간 이해가 얽혀 있어서 시간이 걸리다가, 2020년 - 2021년에 걸쳐 모두 의회를 통과하였고,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발효일이 곧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본 책자에는 신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발효 후에는 인도 중앙 노동법은 4개 법률만 참고하면 되며, 각 주법들은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노동 관련 주법은 각 주별로 상점 및 상업시설법(Shops and Establishment Act) 등이 있으며, 중앙법과 함께 적용되는 법으로서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임금 관련 4개의 법률이 하나의 임금법으로, 연금, 보험, 복리후생 관련 9개 법률이 하나의 사회보장법으로, 공장법 등 각종 산업 안전 관련 13개 법률이 하나의 산업안전보건규로환경법으로, 산업분쟁법 및 노동조합법 등 3개의 법률이 하나의 노사관계법으로 총 29개의 법률이 4개의 법률로 통합, 개정되었다.

| 노동법제 개편 |

임금법 (The Code on Wages, 2019)

1. 동일임금법 (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2. 최저임금법 (The Minimum Wages Act, 1948)
3. 임금지급법 (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4. 상여금지급법 (The Payment of Bonus Act, 1965)

사회보장법 (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

1. 근로자연금기금법 (The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
2. 근로자국가보험법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3. 퇴직금지급법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4. 출산지원법 (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5. 근로자보상법 (The 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
6. 고용관리(의무공석통지)법 (The Employment Exchanges (Compulsory Notification of Vacancies) Act, 1959)
7. 영화산업근로자복지기금법 (The Cine-Workers Welfare Fund Act, 1981)
8. 건설근로자복지조세법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Welfare Cess Act, 1996)
9. 비조직근로자사회보장법 (The Unorganised Workers' Social Security Act, 2008)

산업안전보건법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1.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
2. 계약노동(규제 및 폐지)법 (The Contract Labour (Regulation and Abolition) Act, 1970)
3. 주간이주노동자(고용규제 및 근로환경)법(The Inter-State Migrant Workmen (Regulation of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Service) Act, 1979)
4. 농장근로법 (The Plantations Labour Act, 1951)
5. 광산법 (The Mines Act, 1952)
6. 저널리스트 및 신문기자(근로환경)법 (The Working Journalists and other Newspaper Employees (Conditions of Service) & Misc. Provisions Act, 1955)
7. 저널리스트(임금율고정)법 (The Working Journalists (Fixation of Rates of Wages) Act, 1958)
8. 운수근로자법 (The Motor Transport Workers Act, 1961)
9. 담배산업근로자법 (The Beedi and Cigar Workers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1966)
10. 판매촉진근로자법 (The Sales Promotion Employees (Conditions of Service) Act, 1976)
11. 영화산업근로자법 (The Cine-Workers and Cinema Theatre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Act, 1981)
12. 항만근로자(안전, 보건, 복지)법 (The Dock Workers (Safety, Health and Welfare) Act, 1986)
13. 건설근로자(고용규제 및 근로환경)법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 Conditions of Service) Act, 1996)

노사관계법 (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1. 산업분쟁법 (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2. 산업고용(복무규정)법 (The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3. 노동조합법 (The Trade Unions Act, 1926)

법률이 29개에서 4개로 통합되어, 기존 각각의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 정의규정도 통합되었고, 법률마다 확인해야했던 각종 등록, 신고사항이 간소화된 장점이 있다. 기존에 배제되었던,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도 사회보장 보호 법익에 들어오면서 형평성도 제고되었고, 노동청 조사관 및 조정인의 역할이 규정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노사분쟁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률적용 요건인 직원수 규정도 각 사안별로 완화되었으며, 각종 전자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신고절차가 도입되면서 기술활용도도 향상된 장점도 있다.

새로운 노동법제가 발효하면, 임금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직원의 임금체계가 변경되어야 한다. 근무일, 휴일 등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내 인사규정 등을 개정해 놓아야 하며, 새롭게 작성될 사내 인사규정에 개정된 임금, 공제, 보상금 등 모든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있는 경우, 신법 규정에 따라 원청사로서의 의무가 새롭게 발생된 부분이 있는지 참고하여, 계약서를 검토하고 파견 고용 계약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게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 적용되는 사항을 적절히 관리하여, 법률준수 (compliance)를 위한 사내 정책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회사 재정적으로도 이번 개정법상 임금 등 노무비가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노무비 변경에 따른 손익계정을 정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3.2 채용계약¹⁰⁴

인도는 단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로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 온전히 당사자들 간의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 관계의 성격 등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원과 계약을 맺기 전 우리 기업에 맞는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따라야 할 채용, 면접, 심사 및 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임명 절차에 관한 자체적인 정책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채용 정책은 개인 사생활, 평등권 등 지원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많은 기업들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등을 진행하여, 이력서, 경력, 학력 등의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진행하기 전 신원조회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원의 고용은 신원확인 및 학력, 경력사항의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조사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문서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인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2000) 및 정보기술 (개인정보절차) 규정(Information Technology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and sensitive personal data and information) Rules, 2011)은 취업 지원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공개를 위해서는 해당 지원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상 권리로서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원조사 및 채용면접시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위 정보기술규정은 채용지원절차시 고용주가 (1)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2)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3) 개인정보 수집인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4)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따라서, 채용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 일자리에 대한 지원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 전 질의와 배경 조사를 할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보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후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 계약은 기업과 직원 사이에 자유롭게 그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 정해진 법률 규제는 없다. 인도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을 관리하는 일반 규정은 고용 계약에도 적용된다. 구두상 계약도 유효하지만, 실무상 고용 관계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계약의 조건이 법 조항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법률에 정의된 최소 작업 조건을 준수하고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고용법(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등 특정 법률은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주에게 고용의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해당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 기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일시적일 수도 있고, 정규직과 같이 영구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업무 범위 및 근무 장소, 수습 기간, 확인 절차, 근무 시간, 휴직 자격, 급여 및 기타 법적 혜택 자격, 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 계약의 조항의 복잡성과 확장성은 직원 수준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공통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인사, 노무 정책 또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근로 계약의 조건과 병행하여 적용한다. 또한 제조업, 금융업, 의약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정형화된 근로계약서 형태로 대규모 고용이 진행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고용계약은 먼저 수습기간을 가지고, 동 기간 동안 직원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식 채용 절차를 밟게 된다. 인도내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회사의 정직원인지 여부, 산업분쟁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주법상의 노동법적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근로 또는 고용 계약의 실질은 계약의 조건과 실제 업무 범위 및 직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 이러한 고용 관계의 실질을 특정하여 이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근로계약의 종료

고용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건의 발생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 합의된 기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 상호 계약을 해지하여 상호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 계약서에 합의된 대로 일방 당사자가 해지하는 경우.

산업분쟁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1-3개월의 통지기간 또는 해고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고용 관계 해지에 대해서는 주법 규정과 고용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이러한 직원의 해지의 경우, 최소 1개월의 서면 통지 또는 1개월치 임금지불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해고는 조사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업은 해고 원인에 대한 통지, 직원의 항변 절차 기회 제공,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기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해고는 불법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각 근무연도에 대한 15일치의 급여인 해고보상금과 1-3개월의 통지(기업 직원 수에 따라 다름) 또는 그 대신 급여에 해당하는 법정 중복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직원의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할 의무가 없다. 고용주의 재산에 어떠한 손해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직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의 범위까지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다. 직원의 고용이 심각한 위법행위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해고된 직원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 기업은 해고된 직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행하고, 기업과 직원 간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상호 정산하여 문서로서 합의하여 직원이 기업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남은 비용이 없으며 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임금 및 보험¹⁰⁵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1948)에서는 특정고용에서 최저 임금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임금은 특정 주의 최소임금규칙에 따라 주정부 고시를 통해 국가가 규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정확하게 모두가 평등한 통일된 하나의 숫자로 나오지는 않는다. 산업분야별, 직업별, 비숙련, 반숙련, 숙련 근로자인지 여부, 각 주별로 최저임금 수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델리 보통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하여 비숙련 월 15,492루피, 숙련 감독직 월 20,430 루피 등 15,000루피에서 20,000루피 사이로 이해하면 되지만, 정확한 액수는 최근 업데이트된 정부 고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숙련되거나 비숙련된 일, 육체 또는 사무직의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해당 정부가 정하거나 개정하는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해당 정부가 정하는 기본급과 특별 수당;
- 기본급, 그리고 양도의 현금 가치가 인정된 경우;
- 기본급을 포함한 일체의 포괄적인 임금.

고용주는 그 고용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그 고용에 종사하는 직원의 최소 임금을 이상의 비율로 어떠한 공제도 없이 지불해야 한다. 동법 상 근로시간, 최저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조건의 모든 위반이 있는 경우 10,000루피의 벌금 또는 5년의 구금형이 가능하다.

▶ 임금 지급

통합 노동법제에서의 가장 큰 변경사항 중의 하나는 '임금(wages)'의 정의가 바뀐 점이다.

임금은 기본급, 보상수당, 유지수당 등 따로 제외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택수당 및 교통수당 등이 임금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개의 통합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이 정의 규정에 적용받는다.

현행법 상에서 퇴직금, 상여금 등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칭할 때 기본급+수당을 적용하는 법률도 있었고,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해서 임금이라고 적용하는 법률도 있어 계산금액이 모두 달랐으나, 앞으로는 계산방식에서의 임금이라 함은 새로운 정의에 따른 임금이라고 통일화되었다고

105)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이해하면 된다.

임금의 정의 규정에는 총 임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물보수(remuneration in kind)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지만, 임금법에서 보수지급 방법으로 현금, 은행송금, 수표 등 현금보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입법적 불비가 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향후 새롭게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으로 특정되는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상여금, 감축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15일치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등으로 금액이 계산되는 기준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산정 금액이 높아지면, 결국 각종 지급액 산정 결과가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

현행 인도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 1936)은 임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무단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도 임금지급법상 임금은 현금으로 표시되거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고용 조건이 충족되었든, 고용 또는 그러한 고용에서 수행된 일과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모든 보수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당사자 또는 법원 명령 간의 보상 또는 합의 하에 지불해야 하는 보상;
- 시간외 근무, 휴일 또는 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보수;
- 고용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추가 보수(보너스 등).
- 고용인의 고용 종료의 사유에 의해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 계약 또는 금융상품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해야 할 기간에 제공하지 않는 금액;
- 법률 등에 따라 권리를 갖게 되는 금액.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용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상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당사자들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보너스;
- 추정부의 일반 또는 특별 명령에 의한 임금 계산에서 제외된 모든 편의 제공 또는 서비스의 가치;
- 고용주가 연금에 지급한 분담금과 그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기여금;
- 여행수당 또는 여행할당권의 가치;
- 고용인의 고용 성격상 수반되는 특수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고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 고용의 해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지급액.

▶ 보너스

보너스(법정상여금)는 흔히 얘기하는 보너스인 “performance”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져야하는 법정보너스를 의미한다.

보너스는 회사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다. 보너스를 주는 기본 목표는 조직이 벌어들인 이익을 직원과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현행 보너스 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은 인도 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 이익 또는 생산 또는 생산성에 근거하여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명 이상의 고용인이 고용된 모든 사업장과 21,000루피 미만의 보수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30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보너스법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보너스법은 8.33%(최소)에서 20%(최대) 사이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8.33%의 보너스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업종 및 단체에서 지급한다. 어느 회계연도에도 지급할 수 있는 생산성 연계 보너스를 포함한 최대 보너스는 법 제31A조에 따라 직원의 급여/임금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근로자 국가보험

인도 근로자국가보험법(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은 지역별로 10인 이상 고용된 공장 및 제조 단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장 또는 시설은 관련 법률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금 분담 체계는 주로 인도 전역의 시행 지역에서 피보험자와 그 고용주로부터 적은 임금이지만 특정 비율의 급여로 인상된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일일 40루피 이하의 하루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기여금의 지급을 면제받지만, 이 제도 하에서 모든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분담율은 다음과 같다.

- 직원 분담율: 임금의 1.75%
- 고용주 분담율: 임금의 4.75%

직원과 고용주가 기여한 기금은 근로자보험 펀드로 알려진 공통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 제도 하에서 수혜자에게 의료 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 그 가족 구성원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당 기업의 행정비용과 기타 비용도 이 펀드에서 충당된다.

▶ 연금

인도법상 연금은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으로서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될 수 있다. 2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연금 가입도 가능하다.

임금의 12%(특정 경우에는 10%)의 균등분담금(기본임금, 수당, 유지수당 있는 경우)은 고용주와 직원(직접 또는 도급업자를 통해 고용한 경우)이 지불해야 한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자발적 제공 기금(VPF) 옵션(고용인이 동일한 금액을 기부할 의무는 없음)도 가능하다.

고용주는 법정금을 매월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직원들은 고용주가 고용 기간 내내 균등하게 분담하는 금융 지원제도(주택 구입, 결혼/교육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은 제외)의 형태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린다. 이 금액은 보통 퇴직하거나 사망 시 지불된다. 그 밖의 혜택으로는 직원연금 제도 및 직원 예금연계 보험제도 등이 있다.

앞으로 발효될 사회보장법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국가보험은 10인 이상의 사업장, 연금기금은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임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연금분담의무자나 분담액이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사회보장법 상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금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용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직원 수 요건에 부합하여 보장범위가 적용된 경우 적용면제를 신청할 수 없고, 자발적인 보장 적용 이후 5년 내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 한-인도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인도에서는 면제될 수 있다.

▶ 퇴직금

퇴직금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 직원 및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정산되며, 예를 들어 4년 근무 후 퇴직 시는 퇴직금이 없고, 6년 근무 후 퇴직 시는 15일 치 임금 곱하기 근무연수인 6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공장 (공장법에 따라 등록)
- 회사 (회사법에 따라 등록)
- 상점 (상점 및 상업시설법에 따라 등록)
- 교육기관 (직원 10명 이상 고용)
- 기타 등록된 사업체

퇴직금 산정은 근속 연도의 지급(완료된 근무 연도의 15일치 급여)을 기준으로 한다.

▶ 휴가수당

휴가수당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임금 정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진다. 신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퇴직시 지급되던 휴가수당을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매20일 업무일 당 하루의 휴가일은 신법도 동일하지만, 240일 이상 근무 규정이 180일 이상의 근무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적용대상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사항으로는 일시해고, 출산휴가, 연차 기간도 위 180일 근무일수 산정에 인정되지만, 유급휴가수당 일수 계산 산입에는 제외된다. 유급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업무기간이 해당연도 1월1일에 시작된 것으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연도 총 잔여일수의 1/4이상 근무했을 경우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인 공장법이 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이 공장법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통합되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기존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 규정이 적용된다. 각 주법에서도 통상적으로 매20일 업무일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신입이나 수습직원들도 모두 적용된다.

잔여연차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공장법은 기본금+수당을 한달 업무일인 26으로 나눈 1일 임금 곱하기 잔여휴가일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기본금+수당이 아닌, 임금의 정의에 따른 임금을 26으로 나눈 1일 임금 곱하기 잔여휴가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3.4 근무시간/휴식/휴가¹⁰⁶

근로 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인도 노동법은 매우 다양하다. 공장법 등의 중앙법과 동시에 기업 소재지 주의 개별 주법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산업고용법(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 Act, 1946)의 목적은 산업시설의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동법은 최근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모든 산업 사업장에 적용하며, 주에 따라 그 인원이 다를 수 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기준이 50인이다). 동법은 모든 부문에 대한 고정기간 고용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여러 근로 조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각 기업에 적용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106)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산업분쟁법(Industrial Dispute Act, 1947) 또한 근로 조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분쟁은 직원과 고용주, 고용주와 노동자, 또는 노동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정의되며, 고용, 비 고용, 고용 조건 또는 노동 조건과 관련이 있다.

산업분쟁은 고용조건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이나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대표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서, 대개 노동조합, 초과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이며, 산업 활동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당사자들, 즉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서로 압박하게 된다.

공장법(Factories Act, 1948)은 공장의 노동 조건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동법 또한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장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동법의 주요 목적은 공장의 근로 조건을 규제하고 고용주가 공장 노동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의 기본적인 최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휴가, 휴일, 초과근무, 여성 및 아동 취업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일, 주 근무시간
- 주간휴일
- 여성 근무시간, 식사시간 등
- 최소 휴직일수, 유급휴직
- 초과근무수당

아울러, 각 주는 상점 및 상업시설법(Shops and Establishment Act)을 제정하여 주요 근로 조건에 관한 법제의 틀을 만들고 있다. 동법의 목적은 고용의 허가 부문(예: 상점 및 시설)에서 직원 및 고용주에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 법률은 고용주 가족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급여가 있든 없든 사업장에서 고용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일 및 1주 근무 시간
- 휴식 간격, 개폐 시간, 휴무일, 국경일 및 종교일, 초과근무에 대한 지침
- 아동, 청년, 여성의 고용
- 연차휴가, 출산휴가, 병가, 유급휴가 등에 대한 규정
- 고용 및 서비스 종료에 대한 규칙

일반적으로, 동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30일 이내에 상점 및 상업시설 설립 등록을 해야 하지만

멜리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등록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상점 등록과 설립에 관한 규칙은 주마다 다르다. 15일 내의 통지가 필요하며, 주정부는 영구적으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동법의 특정 조항 또는 모든 조항에서 면제할 수 있다.

▶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각 개별 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공장법 등 중앙법 또한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소재지 주의 노동법 기타 관련 노동법을 확인하여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기업 내 업무 시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확정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8시간, 휴식시간 1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 휴무일이 있고, 초과근무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8시간, 주6일 초과근무 금지, 정상임금 2배의 초과근무 수당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따로 유사하게 근무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행 공장법 등은 일일 9시간, 주당 48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점심 시간 불포함 매 5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 임금법 시행령안 제6조에 일일 8시간 근무 및 1시간의 중간 휴식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도 일일 8시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제28조는 근로자의 5시간을 초과하는 연속 근무시간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 30분간의 중간 휴식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금법에는 초과근무 시간 포함하여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각 주법을 통해 직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법에서도 최대 초과근무 포함 총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공장법 및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은 명시적으로 휴식시간을 나누지 않고, 9시간으로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면 일일 최대 9.5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나, 통합 노동법제에서는 명확하게 임금법 기준 휴식 1시간 포함 9시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휴식 30분 포함 최대 8.5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 초과근무 및 수당

대부분의 주법은 초과근무 및 수당에 관하여 특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초과근무 및 수당 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기도 하고, 관리감독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직원에게만 적용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해당 소재지의 주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회

사 전체의 초과근무 및 수당 정책, 특정 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 **휴가**

휴가에 대한 노동법 또한 기본적으로 개별 주법을 따르고 있어, 소재지의 적용 법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연차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는 최소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병가, 기타 휴가도 법정 최소일수가 있으며 이러한 최소 휴가일수는 직원의 연속 근무일수와도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법 조항을 검토하여 전체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도입하고 개별적으로는 직원의 근속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휴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추후 그 일수만큼 급여를 계산하여 현금으로써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개별 주법에 따라 이러한 의무의 정도와 이행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기업은 이에 대한 관리 장부를 항상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산휴가는 총 26주간 주어지며, 출산전 8주 전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셋째아이 출산부터는 출산휴가 기간이 출산 전 6주부터 해서 총 12주로 줄어든다. 참고로, 육아휴직 관련 현행 법률 규정은 없고, 인도 중앙정부 공무원에게만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따라서 일반 기업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은 아직 없으며,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임금은 100% 지급해야 한다.

3.5 취업규칙/징계/배상¹⁰⁷

▶ **내부 규정 작성 및 채택**

회사 내 인사, 노무규정은 회사 내의 인사 및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와의 고용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회사가 상시 그 규정을 수정하여 근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사, 노무 규정은 회사 내부의 규정으로서 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등 그 효력의 우선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로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7)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주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채용 (수습기간, 채용 조건 등)
- 근무 조건 (업무 시간, 정보 사용 등)
- 휴무
- 보수 및 기타 복리후생 (월급 및 초과 수당 등 기타 혜택)
- 휴가 (연차 등)
- 징계 정책
- 퇴직 (해고 등)
- 행동 강령 등

인도에서 근로, 고용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으로서 다양한 중앙법 및 주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초과근무 수당이나 법정 휴가일수 등 특정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주법에 따라 인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규정의 효력 및 수정

인사, 노무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고용 계약서 등이 이 규정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고용 계약보다 인사, 노무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고용 계약 시 정할 수 있다. 이는 내부 규정이 상시 수정되더라도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통합적인 인사, 노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정으로서 최고경영자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달 및 공개되어야 한다.

채용 및 해고 등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주법과 중앙법이 모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해당 법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기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맞춤형 인사 규정을 작성하고 상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이러한 인사, 노무 규정은 변호사/로펌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6 노동조합

인도 노동조합법(Trade Unions Act, 1926)은 노동조합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고용주간, 근로자와 근로자간, 고용주와 고용주간 관계를 규정하거나 기업활동

을 규제할 목적으로 구성된 모든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⁸ 동법 제4조는 조합원 7인이상이 조합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최소 조합원 수로 사업장의 총 근로자의 최소 10% 또는 100인 중 적은 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⁹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등록은 노동조합의 '인정(recognition)' 절차와 구별된다. 인정절차는 사측이 근로환경, 임금 등 사안에 관하여 근로자측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동 인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각 주마다 관련 규정을 담고 있으나, 중앙법인 노동조합법 자체에는 인정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정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집단교섭 거부는 인도 산업분쟁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다.

인도 산업분쟁법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위원회(works committee)'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위원회는 노사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공통 관심 사항에 의견을 개진하여 이견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2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산업분쟁법상 노동쟁의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근로자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측은 1개월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에게 결정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업분쟁법에 기초한 각 주법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자라

108) The Trade Unions Act, 1926, Section 2. (h) "Trade Union" means any combination, whether temporary or permanent, form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relations between workmen and employers or between workmen and workmen, or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rs, or for imposing restrictive conditions on the conduct of any trade or business, and includes any federation of two or more Trade Unions: Provided that this Act shall not affect-- (i) any agreement between partners as to their own business; (ii) any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those employed by him as to such employment; or (iii) any agre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ale of the goodwill of a business or of instruction in any profession, trade or handicraft.

109) The Trade Unions Act, 1926, Section 4. [(1)] Any seven or more members of a Trade Union may, by subscribing their names to the rules of the Trade Union and by otherwise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with respect to registration, apply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Union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no Trade Union of workmen shall be registered unless at least ten per cent. or one hundred of the workmen, whichever is less, engaged or employed in the establishment or industry with which it is connected are the members of such Trade Union on the date of making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rovided further that no Trade Union of workmen shall be registered unless it has on the date of making application not less than seven persons as its members, who are workmen engaged or employed in the establishment or industry with which it is connected.] [(2)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under sub-section (1)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Union, such appli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come invalid merely by reason of the fact that, at any time after the date of the application,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 Union, some of the applicants, but not exceeding half of the total number of persons who made the application, have ceased to be members of the Trade Union or have given notice in writing to the Registrar dissociating themselves from the applications.]

트주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동경영협의회(joint management council)'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헌법은 모든 국민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등 조합 및 협회를 결성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 노동조합의 주요 권리는 아래와 같다 :

-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여한 경우, 노조위원과 조합원은 범죄음모 관련 형사 절차에 면책을 부여한다;
- 노동조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유지할 수 있고, 조합원의 시민적, 정치적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규정된 방식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될 수 있다;
- 등록 노동조합의 조합원간 합의를 해당 목적이 근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조합원이 당사자로 있는 노동쟁의를 위해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고용계약 파기를 야기하거나, 타인의 고용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등록 노조, 노조위원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민사상 제소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은 산업체의 복지와 사회전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더 나은 근로조건 협상, 산업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인력채용과 선발을 지원하여 기업구조 및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7 채용계약 해지 및 해고

▶ 해고 절차

현행 산업분쟁법에 따르면, 모든 산업부문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감축시, 고용자는 법률 적용규정에 따라 1개월 - 3개월 전 감축통보, 감축보상금 지급, 관계 정부부처 및 관청 신고 또는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요건은 노사관계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승인필요 요건이 100인 이상 근로자에서 300인 이상 근로 산업체로 완화된 점이 주목된다.

법률이 따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workmen 또는 worker)의 범주가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 '상점 및 상업시설법' 등 각 주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해고(Ordinary dismissal)'와 '사유있는 해고(Dismisssal for cause)' 등 두 가지 형태의 해고가 있다. 통상적으로 해고통지 기간은 고용계약서에서 따로 통지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1개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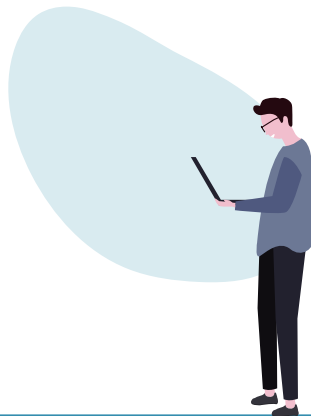
사유있는 해고는 징계 등의 경우 이루어지는 해고방법이며,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행위가 입증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주는 통지기간 없이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산업분쟁법에서 고용주는 근로자 해고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해고행위는 무효이며, 해당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각 주법에도 합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해고 후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인도 산업분쟁법상 근로자(workmen)를 징계, 퇴직, 계약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로 해고할 경우, (1)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입선출(last in, first out)” 원칙 적용; (2) 240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1개월전 통지 의무; (3) 관계 노동청에 신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직전 12개월간 100인 이상의 특정 근로사업장(공장 등)의 경우 3개월 전 통지 및 관계 노동청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해고 보상금**

고용주는 일반 직원 해고시 잔여 휴가보상금, 퇴직금, 기타 계약에 따른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에 의한 해고 시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인도 산업분쟁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지급금 외에도, 근속연수마다 15일치의 평균임금을 해고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4. 인도 내 CSR 및 ESG 관련 가이드

4.1 CSR 관련 준수사항

▶ 인도의 CSR이란?

인도는 특이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CSR)을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나 노무 관련 이슈들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있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규정상 차이점만 알아 두면 쉽게 적응할 수 있으나, CSR제도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각종 미등록 단체·종교시설 등이 법적인 CSR규정을 빌미로 기부금 지출을 요구하고, CSR규정에 어두운 한국 기업들은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해당 기부금이 세무상, 회사법 상 적법한 CSR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중으로 지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업의 실무자는 CSR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인도 CSR규정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

CSR의무의 법적 근거는 2013년 신 회사법이 도입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법적인 의무로서 회사법(Companies Act, 2013) 135조에 규정되었다. 해당 법조문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Compan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Rules, 2014에 각종 운영관련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회사법 별표 7(Schedule 7)에는 CSR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이 정의되어 있다. 다만, 처음 법이 도입될 때에는 CSR지출의무액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소명할 경우 현금지출을 피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였다. 2019년 회사법 개정안에서 지출을 강제화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021년 1월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의 고시에 따라 20-21회계연도부터 2019년 개정안의 지출의무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의 기부금 관련 규정이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된 대로 회사법 상 CSR규정과 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CSR활동에 지출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CSR관련 담당자는 CSR지출액의 세부담 최적화를 위해 세법규정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회사법상 CSR 적용요건

회사법에서는 크게 다음의 2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CSR위원회 설치요건
- CSR지출의무요건

먼저 CSR 위원회 설치요건이 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만 CSR의무를 부여한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직전회계연도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CSR 위원회 설치요건이 있는 회사이다.

1.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
2. 매출 1백억 루피 이상
3. 순이익 5천만 루피 이상

CSR위원회 구성은 1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등기이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등기이사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하기 CSR 지출의무액이 500만 루피에 미달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의 CSR위원회 구성 없이 이사회로 대체 가능하다. 즉, CSR 지출의무액이 500만 루피 이상인 기업만 CSR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 CSR지출의무요건

상기 CSR위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중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수일 경우, 그 3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2%를 지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예) FY20-21기준 연도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지출의무액 |

연도별 세전이익	A사	B사	C사
FY18-19	-10	40	-10
FY19-20	-20	30	-20
FY20-21	30	-100	60
3년 평균	0	-10	10
지출의무액 (2%)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0.2

상기 표와 같은 상황일 경우, 최근 3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수인 C사만이 CSR지출의무가 존재한다. 반면 큰 폭으로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경우 3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수와 음수를 넘나들 수 있다.

| (예) 한 기업의 FY20-21부터 22-23까지 3년치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1) |

시점	2021	2022	2023
3년평균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	-20	30
지출의무액 (2%)	0.2	0	0.6

| (예) 한 기업의 FY20-21부터 22-23까지 3년치 평균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2) |

회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FY18-19	-10
FY19-20	-20
FY20-21	60
FY21-22	-100
FY22-23	130

상기 예시와 같이, 3년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수와 음수를 넘나드는 경우, 전년도 금액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3년 평균치에 손익증감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사용한 CSR의무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정 은행의 미사용CSR계좌(Unsp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count)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후 3년 이내에 그 계좌에 있는 금액을 CSR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지정된 기금에 귀속된다. 만일 회사가 해당 계좌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책임자¹¹⁰⁾(every officer of the company who is in default)에게도 그 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규정도 존재하였으나 2020년 회사법 개정 시 삭제되었다.

▶ CSR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회사법 별표 7(Schedule 7)에는 CSR로 인정되는 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빈곤구호
- 2) 교육활동
- 3) 성평등 및 계층격차 해소

110) 회사의 책임자란 담당 등기이사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 4) 환경보호
- 5) 문화재보호
- 6) 전역군인 및 전쟁유가족 구호활동
- 7)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
- 8) 시골 및 슬럼지역 개발
- 9) 재해구호
- 10) 법률 상 지정된 펀드 및 기관

비지정 항목에 지출하여 CSR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이다. 따라서, 지출 전 반드시 CSR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외에 법령에 명시된 CSR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2) 인도 밖의 CSR활동
- 3) 정치기부금
- 4)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
- 5) 기업홍보 목적의 스폰서십 활동
- 6) 기타 법적 의무 수행

단, 인도 국가대표 또는 주·연방행정구역 대표 스포츠 선수의 국외 훈련을 후원하는 행위는 인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도 CSR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CSR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은 20-21회계연도부터 22-23회계연도에 한정해서 CSR비용으로 인정한다. 만일 관련 활동에 지출하였을 경우 반드시 회사의 CSR보고서에 지출 및 활동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규제당국이 CSR활동 인정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문과 문서화를 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 CSR대상 항목으로 법률상 지정된 펀드 및 기관

앞서 살펴본 CSR대상 활동 중 10번 ‘법률 상 지정된 펀드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고유명사이므로 별도의 번역이 무의미해서 번역하지 않음)

CSR로 인정되는 펀드

- Swach Bharat Kosh
- Clean Ganga Fund
- PM National relief fund
- PM CARES Fund

그 외 회사법 별표 7 (Schedule 7)에 명시된 대상기관들

- Contribution to incubators 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edicine, fun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 or Public Sector Undertaking or any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 and
- Contributions to public funded Universities;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s); National Laboratories and autonomous bodies established under 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 Department of Biotechnology (DB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ST); Department of Pharmaceuticals; Ministry of Ayurveda, Yoga and Naturopathy, Unani, Siddha and Homoeopathy (AYUSH);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other bodies, namely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 (DRDO); Indian Council of Agricultural Research (ICA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ICMR) and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 engaged in conducting research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edicine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4.2 CSR운영관리

▶ CSR운영관련 제반규정

CSR운영을 위해 법령상 규정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용어의 정의

- 행정 간접비(Administrative overheads): 기업의 CSR기능과 관련한 행정비용이나 CSR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감독, 평가에 투입되지는 않는 비용을 의미하며, 행정 간접비는 회계연도의 전체 CSR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익법인이나 펀드에 지출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펀드의 행정 간접비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제단체(International Organization): UN법(United Na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Act, 1947 (46 of 1947)) 제 3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고시한 리스트 상의 국제단체. 국제단체(International Organization) 및 그 구성원도 CSR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설계, 감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진행중인 프로젝트(Ongoing Project): 기업이 CSR의무를 위해 실행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 다만, 프로젝트의 기간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회계연도 포함 4개년 회계연도를 초과하면 안된다.
- CSR 정책(CSR Policy): 회사법 별표 7(Schedule 7)에 따라 수행하는 CSR활동을 의미한다. 회사의 CSR정책에는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CSR프로젝트의 리스트와 해당 프로젝트들의 관리감독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수행하는 CSR활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CSR활동인지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CSR활동을 위한 재단의 설립과 신고의무

기업이 CSR활동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회사법 상 공익법인인 ‘Section 8 company’를 설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보통 설립에는 모든 서류 및 절차가 잘 준비되어 있을 경우 약 1.5~2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재단을 통한 CSR활동의 경우 장기간의 CSR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회사법 상 지출기한인 3년의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CSR 프로젝트 수행이 더 유연해진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CSR활동을 위한 외부 에이전시를 고용하지 않고 재단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재단 인력 최소화를 위해 외주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음) 반면, 해당 재단의 관리를 위한 각종 법규준수 및 행정비용 발생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컨소시엄형태의 재단의 경우 참여하는 각 기업이 각각 신고서와 행정절차를 챙겨야 할 수도 있다. 재단의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단의 형태도 가능하나, 계열사·동종업종·한국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1년 CSR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CSR 수행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치할 경우, CSR-1이라는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CSR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적법한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CSR-1은 2021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므로 기존에 설립된 공익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현재 회사법 시행령에는 공익법인의 CSR-1 신고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기업의 CSR활동을 돕는 에이전트의 경우 CSR-1 신고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나중에 법규준수여부에 관하여 관계당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에이전트 고용시 에이전트와 확인하여 CSR-1을 신고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3) CSR활동에 대한 감독의무

회사의 이사회는 CSR 위원회가 CSR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승인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CFO 혹은 회사의 재무부문 책임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사회는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승인된 일정과 비용집행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계획도 이사회가 승인하여야 한다.

4) CSR 보고서 작성의무 및 공시의무

매년 이사회의 결산보고시에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CSR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의 결산보고서(The Board's Report of a company)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CSR위원회의 구성, 회사의 CSR정책, 그리고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CSR프로젝트를 회사의 웹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5) 대규모 프로젝트의 영향분석 의무

최근 3년간 CSR의무액이 연 1억루피 이상인 기업은 1천만 루피 이상인 CSR프로젝트에 대해서 독립적인 제 3자를 통해 프로젝트 완료 후 1년 이내에 영향분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영향분석 결과는 매년 발행되는 CSR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회계연도의 CSR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은 5백만 루피 혹은 전체 CSR지출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CSR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흑자(surplus) 및 적자(excess amount)의 처리

CSR 활동으로부터 흑자(은행이자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흑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해당 흑자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지출되거나, 장부상 미사용 CSR비용계정에 별도 관리하여 회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CSR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CSR활동으로부터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로 사용된 비용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미래의 CSR비용 사용 의무와 상계처리 가능하다. 다만, 다른 CSR활동에서 발생한 흑자와 상계될 수 없다.

7) 자본재(Capital Assets)의 취득

CSR지출을 통해 건물 등 자본재의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자산은 기업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CSR재단, 공익법인 혹은 CSR활동의 수혜를 받는 외부 단체나 공공기관이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CSR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세)

원칙적으로 기부금 및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세무상 손금처리가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 CSR 방식에 따른 손금인정율 | ¹¹¹

방식	성격	사용처	손금인정율
기부금 방식	지정펀드	- Prime Ministers Relief Fund - Prime Ministers Drought Relief - Jawaharlal Nehru memorial Fund - 그 외 소득세법 (Income tax act) Section 80G에 열거된 펀드 및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한 CSR재단 포함)	펀드 종류에 따라 50% 혹은 100% ¹¹¹
	과학 및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교, 연구소 사회 및 통계 리서치를 수행하는 대학교, 연구소	지출 총액의 100% 지출 총액의 100%
프로젝트 지출 방식	사회복지 프로그램	PSU(public sector undertaking), 지방정부 혹은 사회복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romotion of Social And Economic Welfare)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 총액의 100%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국세청(CBDT)가 발표한 숙련향상프로젝트 (skill development project)	지출 총액의 100%

자료원: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세무상 인정되는 기부금이라도 하더라도 회사법 상 CSR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부처 간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도 정부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CSR활동을 정의하는 법규는 회사법으로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의 소관이다. 반면 세법은 재무부가 담당부처이다. 따라서, 양자간 일관성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Chief Minister’s Relief Fund, State Relief Fund for COVID-19의 경우 세무상으로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이나, 기업부에서는 ‘회사법상 CSR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회사법 및 세법 양쪽을 모두 검토하고 양쪽에서 모두 인정되는 펀드/CSR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111) 펀드 종류가 수십가지에 이르므로 손금 인정율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음. 상세한 내용은 Income Tax Act Section 80G를 참고할 것.

| CSR 활동 인정 여부 담당 기관 |



▶ CSR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GST)

GST법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ST법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선물로 재화를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된다. 뭄바이 CESTAT 판결에 따르면, GST도입 전 구 간접세 체계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법 상 CSR 의무에 따른 재화의 소비는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다. 또한, 최근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GST 사전해석기구(Authority for Advance Ruling)에서는 회사법상 CSR 준수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CSR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는 자발적 기부가 아닌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다.

따라서, ‘회사법상 CSR의무’(최근 3년 평균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재화의 소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사법상 의무액을 초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로 보수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 유형별 CSR형태 비교

각 유형별 CSR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별 CSR형태 비교 |

구분	지정펀드 납입	CSR활동 직접수행	공익법인 설립
방식	법적으로 CSR로 인정되는 지정펀드나 기관에 납입하는 방법	CSR활동을 회사의 내부 CSR담당팀을 통해서, 혹은 외부의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에이전트를 통해 CSR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	회사가 산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는 CSR의무액은 해당 법인에 납입하고, 공익법인이 CSR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단독법인 및 컨소시엄 형태 가능)
장점	회사 입장에서 별도의 관리 노력이 가장 적게 소요됨.	직접적인 CSR활동 수행을 통한 회사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CSR지출 사용기한(3년)에 구애받지 않고 공익법인에 한번 납입하면 해당 재정을 유연하게 사용 가능. CSR-1 신고서가 도입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의 경우 CSR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부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음.
단점	CSR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등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기 어려움.	CSR프로젝트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며, 납입 후 3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제약사항 때문에 지출관리가 엄격한 편	공익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 필요성 및 매년 회사법상 요구사항에 따른 공익법인 관련 신고의무 존재
비고	납입 시 해당 펀드가 CSR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세무상 손금인정이 되는 펀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CSR 수행을 위한 별도의 관리인력 고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외부 방식으로 CSR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음.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공익법인 운용의 방향성에 따른 의사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3 인도 ESG경영

▶ ESG 경영이란?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가치와 경영평가를 재무적인 평가에서 사회에 미치는 가치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2015년 글로벌 기후변동협약 파리협정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발표된 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힘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기업 역시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영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맞고 있다.

▶ 인도 회사법 상 ESG관련 규정

인도 회사법 상에서는 다음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

- 이사회 보고서 관련(Board's report): 이사회 보고서 발행 시 에너지 절감, 대체에너지의 활용, 에너지절감 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공시할 의무가 있다.
- 등기이사의 의무: 등기이사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CSR활동 관련: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을 CSR활동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CSR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ESG와 관련하여,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상기 수준의 원칙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상장사 관련 규정

인도 법규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ESG와 관련하여 큰 규제는 없으나, 상장사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과 당장은 큰 상관이 없으나 향후 비상장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 이를 소개하자면, SEBI(인도 증권거래위원회)규정에 따르면, ESG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사업책임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근본이 되는 철학은 기업과 주주의 경영방향은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존 가이드라인들을 통합하여 2019년 3월 제정한 '책임있는 사업의 원칙에 관한 국가 가이드라인'(NGRBCs: National Guidelin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9가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정직하게 경영한다.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 가치사슬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한다.
-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 공공·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책임감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포괄적 성장과 공정한 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
-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비자와 협력하고 가치를 제공한다.

SEBI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말(3월말) 시가총액 기준 인도 내 상위 1,000개 상장사의 사업책임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의 발행이 의무화되었다. 해당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섹션 A - 회사의 일반적인 정보

섹션 B - 회사의 재무정보

섹션 C - 그 외 정보(보통 자회사 관련 사항들)

섹션 D - 사업책임성(Business responsibility)관련 사항

- 사업책임성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한 정보
- ‘책임있는 사업의 원칙에 관한 국가 가이드라인’의 9가지 원칙에 대한 회사의 정책과 그에 따른 경영사항.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sebi.gov.in/sebi_data/attachdocs/1446638214636.pdf

SEBI는 2021년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사업책임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를 사업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Report)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직전회계연도말(3월말) 시가총액 기준 인도 내 상위 1,000개 상장사에게 적용되며, 2021-22 회계연도에는 자발적 적용, 2022-23 회계연도에는 적용이 의무화된다.

사업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SEBI | Consultation Paper on the format for Business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V. 부록

1. 인도 주재 주요 한국기관
2. 정부 기관
3. 인도 주요 협회
4. 현지 법률·회계 서비스 제공 회사

1. 인도 주재 주요 한국기관

외교공관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주인도 한국대사관	뉴델리	주소: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ension, New Delhi-110021, INDIA 연락처: +91(0)11 4200 7000, (긴급연락처): 91-99535-96008
मुंबай 총영사관	मुंबай	주소: 12th Floor, Lodha Supremus, Dr. E Moses Road, Worli Naka, Mumbai 400018, INDIA 연락처: +91-22-6147-7000, (긴급연락처): +91-96193-22425
첸나이 총영사관	첸나이	주소: 5th Floor, Bannari Amman Towers, No.29, Dr Radha Krishnan Road, Mylapore, Chennai 600 004, India 연락처: +91-44-4061-5500, (긴급연락처): +91 97898-23270

KOTRA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뉴델리무역관/ 서남아시아 지역본부	뉴델리	주소: 3rd Floor, Asset 307, Worldmark 3, Aerocity, New Delhi-110037, India 연락처:(91-11) 4230-6300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newdelhi
मुंबай무역관	मुंबай	주소: 1001A, Tower 1, Indiabulls Finance Centre, Senapati Bapat Marg, Elphinstone-(W) Mumbai 400 013, India 연락처:(91-22) 4925-5400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mumnbai
첸나이무역관	첸나이	주소: New no.12/1, Bashyam Basheer Ahmed Street, Alwarpet, Chennai 연락처:(91-44) 2499-7283/7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chennai
벵갈루루무역관	벵갈루루	주소: Unit no. 2201, 22nd Floor, World Trade Center, 26/1, Dr. Rajkumar Road, Malleshwaram(W), Bengaluru-560055, India 연락처:(91-80) 6793-5436 홈페이지: www.kotra.or.kr/KBC/bengaluru
콜카타무역관	콜카타	주소: Smart Works Victoria Park, 8th Floor, Block GN37/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 700091, West Bengal, India 연락처:(91-33) 4055-8150 홈페이지: www.KOTRA.or.kr/kolkata

KOTRA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암다바드무역관	암다바드	주소: 805&806 Shivalik Shilp BD, Iscon Circle, SG Road, Ahmedabad 380015, Gujarat, India 연락처: +91-79-49130-111/130
뉴델리 비센터	뉴델리	연락처: +91-11-4051-2483 이메일: korea.delhi@gmail.com

한인회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재인도 한인회	뉴델리	주소: Plot No. 90, Urban Estate, Sector-28, Gurgaon-122001, Haryana(India) 연락처: +911246514443
콜카타 한인회	콜카타	연락처: 90078-91154(긴급) http://cafe.daum.net/kolkatahanin
뭄바이 한인회	뭄바이	연락처:(22) 218-0062
재인도 푸네 한인회	푸네	연락처: punekoreanz@gmail.com 홈페이지: http://www.punekorean.net
Kocham India/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주소: Unit 608&609, 6th fl. Suncity Business Tower, Sector 54, Golf Course Road, Gurgaon, Haryana 122002, India 연락처: +91-0124-423 9623-7

공공기관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한국문화원	뉴델리	주소: 25 A, Lajpat Nagar IV New Delhi 110024(Moolchand 지하철 역에서 도보 5분) 연락처: 91-11-4334-5000, 5050
한국수출입은행	뉴델리	주소: 901, 9th floor, eros corporate tower, nehru place, new delhi-110019, india 연락처: 91-11-1468-8720
한국무역보험공사	뉴델리	주소: 605, global foyer, golf course road, sector 43, gurgaon-122002, india 연락처: 91-12441-06381-3
한국관광공사	뉴델리	주소: 3rd Floor, Pegasus One, Golf Course Road, Sector 53, Gurgaon 122003, INDIA 연락처: 91-12425-70077
중소기업은행(IBK)	뉴델리	주소: office no 403, 4th floor, world mark-2, hospitality district, aerocity, new delhi-110037, india 연락처: 91-11-4076-8001

한국계 은행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신한은행	뉴델리 मुंबай 푸네 등	주소: 2nd and 3rd Floor, D-5, South-Extension, Part-II, New Delhi 110049 연락처: 011-4500-4800
국민은행	구르가온	주소: Unit No.2B/2, 2nd Floor, Two Horizon Center, Phase 5, Sector 43, Golf Course Road, Gurugram, Haryana, India 연락처: 91-124-453-2222
우리은행	구르가온 첸나이 मुंबай	주소: 1st Floor, A Block,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 28, Gurgaon 122001 Haryana, India 연락처: 91-12-4270-6700
하나은행	첸나이 구르가온	주소: 4th Floor, Bannari Amman Towers, No. 29, Dr. Radhakrishnan Road, Mylapore, Chennai 600 004, India 연락처: 91-44-4905-6363

2. 정부 기관

정부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인도 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	www.bjp.org
인도 국민회의파(Indian National Congress)	www.inc.in
인도 외교부(Ministry of External Affairs)	https://www.mea.gov.in/
인도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https://commerce.gov.in/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http://www.mca.gov.in/
인도 재무부(=기획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https://finmin.nic.in/
인도 세무 및 관세부처(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http://www.cbic.gov.in/
인도 행정부(Ministry of Home Affairs)	https://mha.gov.in/
인도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ttp://dbtindia.gov.in/
인도 정부 싱크탱크(Niti Aayog)	https://www.niti.gov.in/
인도 교통부(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Highways)	morth.nic.in/
인도 중공업부처(Ministry of Heavy Industries & Public Enterprises)	https://dhi.nic.in/
인도 방송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https://mib.gov.in/

3. 인도 주요 협회

3.1 주요 협회 개요

연번	산업분야	협회명(국문)	협회명(영문)	설립연도	소재지(본사)	회원사수
1	일반	인도산업연합	CII(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1895	뉴델리	9,000
2		인도상공회의소 연합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1927	뉴델리	7,000
3		인도상공회의소	ICC(Indian Chamber of Commerce)	1925	콜카타	미상
4		인도 상공회의소연합회	ASSOCHAM (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1920	뉴델리	450,000
5		인도 상공인협회	IMC(Indian Merchants' Chamber)	1907	뭄바이	5,000
6		인도 산업 협회	IIA(Indian Industries Association)	1985	력나우	9,000
7		PHD (발전, 조화, 개발) 상공 회의소	PHDCCI(Progress, harmony, development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905	뉴델리	130,000
8	중소기업	인도 중소기업 연합회	FISME(The Federation of Indian Micro and Small & Medium Enterprises)	1967	뉴델리	미상
9	수출기업	인도 수출기업연합회	FIEO(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s)	1965	뉴델리	33,570
10		인도 수입자 상공회의소	IICCI(Indian Importers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ies)	1995	뉴델리	미상

11	인터넷, 모바일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	IAMI(Internet & Mobile Association of India)	2004	뉴델리	294
12	IT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협회	NASSCOM(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	1988	뉴델리	3,000
13	자동차	인도 자동차 제조사 협회	SIAM(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	1998	뉴델리	40
14	자동차부품	인도 자동차부품협회	ACMA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1959	뉴델리	850
15	전기전자	인도 전기전자 제조협회	IEEMA(Indian Electrical and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1948	뉴델리	800
16	기계	인도 공작기계 산업협회	IMTMA(Indian Machine Tool Manufacturers' Association)	1946	구루가온	484
17	의약품	인도 제약 제조 조합	OPPI(Organiz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ers of India)	1965	뭄바이	미상
18	반도체	인도 전자 반도체 협회	IESA(India Electronics & Semiconductor Association)	2004	벵갈루루	300

3.2 협회 세부정보

▶ 인도산업연합 (CII)

- 영문명 :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 설립연도 : 1895년
- 회장 : Mr. T V Narendran
* 타타 스틸 CEO
- 설립목적 : 인도 산업 진흥
- 조직구성 : 인도 내 62개 지사 및 8개 해외 지사
* 호주, 이집트, 독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UAE, 영국, 미국
- 홈페이지 : <https://www.cii.in>
- 연락처 : info@cii.in/+91-124-4592966

▶ 인도상공회의소 연합(FICCI)

- 영문명 :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 설립연도 : 1927년
- 회장 : Mr. Uday Shankar
- 설립목적 : 인도 산업 진흥, 기업 환경 개선 및 회원사와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조직구성 : 본사(뉴델리) 외 인도 내 15개 지사, 3개 위원회 및 7개 해외지사
- 홈페이지 : <https://ficci.in/index.asp>
- 연락처 : ficci@ficci.com/+91-11-23738760-70

▶ 인도상공회의소 (ICC)

- 영문명 : Indian Chamber of Commerce
- 설립연도 : 1925년
- 회장 : Mr. Mayank Jalan
* Keventer Agro(식품기업) CEO
- 설립목적 : 회원사의 수출 및 투자유치 지원
- 조직구성 : 본사(콜카타), 인도내 8개 지사
* 뉴델리, 뭄바이, 구와하티, 부바네스워르, 하이데라바드, 아갈탈라, 실리구리, 란치

- 홈페이지 : <https://www.indianchamber.org>
- 연락처 : ratheesh.nair@indianchamber.net/+91-7304458711

▶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 (ASSOCHAM)

- 영문명 : 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 설립연도 : 1920년
- 회장 : Mr. Vineet Agarwal
* Transport Corporation社 디렉터
- 설립목적 : 무역, 상업, 산업 환경 형성
- 조직구성 : 본사(뉴델리), 인도 내 6개 지사
* 벵갈루루, 아메다바드, 콜카타, 란치, 찬디가르, 잠무-카슈미르
- 홈페이지 : <https://www.assochem.org/index.php>
- 연락처 : assochem@nic.in/+91-011-23347008/9

▶ 인도 상공인협회 (IMC)

- 영문명 : Indian Merchants' Chamber
- 설립연도 : 1907년
- 회장 : Mr. Juzar Khorakiwala
- 설립목적 : 국가 산업과 경제 성장 및 이익 증진
- 조직구성 : 뭄바이(본사) 이외 나비 뭄바이(마하라슈트라州), 뉴델리 지사
- 홈페이지 : <https://www.imcnet.org>
- 연락처 : +91-22-71226633

▶ 인도 산업협회 (IIA)

- 영문명 : Indian Industr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85년
- 회장 : Mr. Ashok Kumar Agarwal
- 설립목적 : 인도 산업 진흥
- 조직구성 : 본사(력나우) 외 뉴델리, 데라둔 지사

- 홈페이지 : <http://www.iaonline.in>
- 연락처 : iaa@iaonline.in/ +91-522-2720090

▶ PHD 상공회의소 (PHDCCI)

- 영문명 : Progress, harmony, development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설립연도 : 1905년
- 회장 : Mr. Shri Sanjay Aggarwal
* Paramount Communications Ltd. CEO
- 설립목적 : 산업, 무역 촉진 등 인도경제 성장 기여
- 조직구성 : 뉴델리 본사
- 홈페이지 : <https://www.phdcci.in>
- 연락처 : +91-11-26863801-04

▶ 인도 중소기업연합회 (FISME)

- 영문명 : The Federation of Indian Micro and Small & Medium Enterprises
- 설립연도 : 1967년
- 회장 : Mr Animesh Saxena
* Neetee Apparel LLP 디렉터
- 설립목적 : 인도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환경 개선
- 조직구성 : 본사(뉴델리) 외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지사
- 홈페이지 : www.fisme.org.in
- 연락처 : info@fisme.org.in/91-11-26187948

▶ 인도수출기업연합회 (FIEO)

- 영문명 : 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s
- 설립연도 : 1965년
- 회장 : Dr. A Sakthivel
- 설립목적 : 인도 상공부가 인도 수출 촉진을 위해 설립
- 조직구성 : 본사(뉴델리) 외 인도 내 16개 지사

* 벵갈루루, 코임바토르,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인도르, 아메다바드, 뭄바이, 코친, 자르칸드, 오디샤, 구와티, 콜카타, 자이푸르, 암리차르, 루디아나, 칸푸르

- 홈페이지 : <https://www.fieo.org>
- 연락처 : fi eo@fi eo.org/+91-11-46042222

▶ 인도 수입기업 상공회의소 (IICCI)

- 영문명 : Indian Importers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ies
- 설립연도 : 1995년
- 회장 : Mr. Atul Kumar Saxena
- * AUM Group 디렉터
- 설립목적 : 인도 진출 외국 기업의 인도 내 파트너 연결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수입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 조직구성 : 뉴델리 본사 운영
- 홈페이지 : <https://www.indianimporterschambers.com>
- 연락처 : iicci@indianimporterschambers.com/+91-11-41655142

▶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 (IAMAI)

- 영문명 : Internet & Mobile Association of India
- 설립연도 : 2004년
- 회장 : Dr. Subho Ray
- 설립목적 : 디지털 산업 진흥 및 인도의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 조직구성 : 본사(뭄바이) 외 뉴델리, 벵갈루루 지사
- 홈페이지 : <https://www.iamai.in>
- 연락처 : gaurav@iamai.in

▶ 인도 소프트웨어기업협회 (NASSCOM)

- 영문명 :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
- 설립연도 : 1988년
- 회장 : UB Pravin Rao
 - * Infosys Ltd. COO(Chief Operating Officer)
- 설립목적 : IT산업 진흥 및 인프라 구축
- 조직구성 : 본사(노이다), 인도 내 8개 지사
 - * 벵갈루루,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코치, 콜카타, 뭄바이, 푸네, 티루반네타푸람
- 홈페이지 : www.nasscom.in
- 연락처 : north@nasscom.in/+91-120-4990111

▶ 인도 자동차 제조사 협회 (SIAM)

- 영문명 :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
- 설립연도 : 1998년
- 회장 : Kenichi Ayukawa
 - * Maruti Suzuki India CEO
- 설립목적 : 인도 자동차 제조업 진흥과 자동차 제조·디자인 기술 개선
- 조직구성 : 인도 내 1개 본사(뉴델리)
- 홈페이지 : <https://www.siam.in>
- 연락처 : siam@siam.in/+91-1147103010



▶ 인도 자동차부품협회 (ACMA)

- 영문명 :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 설립연도 : 1959년
- 회장 : Mr. Sunjay J Kapur
- 설립목적 : 인도 자동차 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
- 조직구성 : 인도 내 1개 본사(뉴델리)
- 홈페이지 : <https://www.acma.in>
- 연락처 : acma@acma.in/ +91-011-26160315

▶ 인도 전기전자제조협회 (IEEMA)

- 영문명 : Indian Electrical and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48년
- 회장 : Mr. Anil Saboo
- 설립목적 : 인도 전기전자산업 진흥 및 산업 성장 환경 조성
- 조직구성 : 뉴델리(본사), 뭄바이(지사) 운영
- 홈페이지 : <https://ieema.org>
- 연락처 : delhi@ieema.org/ +91-011-2336-3013/14

▶ 인도 공작기계산업협회 (IMTMA)

- 영문명 : Indian Machine Tool Manufacturer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46년
- 회장 : Mr. Ravi Raghavan, President
* Bharat Fritz Werner (BFW)의 디렉터
- 설립목적 : 인도 공작기계 및 제조업 지원, 정책홍보 및 교육
- 조직구성 : 벵갈루루(본사) 외 구르가온, 푸네 2개 지사
- 홈페이지 : <https://www.imtma.in>
- 연락처 : imtma@imtma.in/+91-8066246600

▶ 인도 제약 제조 조합 (OPPI)

- 영문명 : Organiz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ers of India
- 설립연도 : 1965년
- 회장 : Mr. S Sridhar
* Pfizer India Ltd 디렉터
- 설립목적 : 인도 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 연구 및 산업혁신 장려
- 조직구성 : 본사(뭄바이) 및 뉴델리 지사
- 홈페이지 : <https://www.indiaoppi.com>
- 연락처 : admin@indiaoppi.com/+91 22 24918123

▶ 인도 전자 반도체 협회 (IESA)

- 영문명 : India Electronics & Semiconductor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4년
- 회장 : Mr. Rajeev Khushu
- 설립목적 : 주정부와 협력하여 ESDM 분야 FDI 촉진 및 ESDM 생태계 강화 및 국제 제휴 및 파트너십 개발
- 조직구성 : 본사(뭄바이) 및 뉴델리 지사
- 홈페이지 : <https://www.iesaonline.org>
- 연락처 : luiza.barros@indianchamber.net/+91-80-45406100



4. 현지 법률·회계 서비스 제공 회사

회사명	서비스 유형	주소
Ernst&Young	법률, 회계, 노무, 마케팅	주소: Golf View Corporate Tower-B, Sector 42, Sector Road, Gurgaon, Haryana 122002, India 전화번호: +91-124-443-4000, 91-88007-93649
KPMG	법률, 세무, 관세, 회계	Building No. 10, Tower B, 8th Floor, DLF Cyber City, Phase-II, Gurgaon, India 전화번호: +91-124-719-1351
PwC	회계, 세무	주소: 17th Floor, Building No.10, Tower-C, DLF Cyber City Gurgaon-122002 전화번호: +91-124-330-6000
Deloitte	회계, 세무	주소: 7th Floor, Building 10, Tower 8, DLF Cyber City Complex, DLF City Phase-II, Gurgaon-122002, Haryana, India 전화번호: +91-124-679-2759

자료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체 조사 및 종합

KOTRA자료 22-027

인도 투자실무 가이드 (2021년 개정판)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2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229-4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인도
투자실무
가이드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SBN 979-11-402-0229-4 (95320)

India